

KAERI/RR-2276/2002

최종보고서

# RCA 지역사무소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수립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ive Operation of RCA Regional Office in Korea

연구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2001. 12 ~ 2002. 12 (13개월)

과학기술부

# 제 출 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RCA 지역사무소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수립 연구” 과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2. 12.

연구기관명 :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책임자 : 한 봉 오

연구 원 : 정 준 극

최 평 훈

심 재 선

양 광 석

이 정 공

김 명 로

서 민 원

민 도 영

# RCA 지역사무소의 효과적 운영방안 수립 연구

## 요 약 문

### 제1장 조사연구의 필요성

국제원자력 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증대하프로서 원자력한국의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던 한국 정부는 IAEA의 아태지역원자력협력협정에 의한 원자력 평화이용 증진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내에서 이 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RCA지역사무소의 한국 유치를 제의하였고 이 제안이 전체 회원국 및 IAEA의 지지를 받아 2002년 3월 한국에 RCA지역사무소를 설치하게 되었다.

지역사무소의 설치를 공인된 조직으로 인정받으며 아울러 이 지역사무소가 명실공히 전체 회원국의 대표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면 전체 회원국의 합일된 견해를 담아 놓은 사업계획서(Working Paper)가 필요하다. 이 사업계획서에는 지역사무소의 임무, 역할, 사무소장의 선출과 임명에 대한 절차, 사무소 운영 경비, 사무소장 인건비 부담, 법적 지위문제등 지역 사무소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전체 회원국의 합의 없이 사무소장을 임명하고 사무소를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사업계획서는 전체 회원국의 요구에 의하여 호주와 한국이 초안을 작성하였으나 많은 회원국으로부터 각기 다른 견해가 표출되는 관계로 실제로는 사무소 오프닝에 이르기까지 최종 사업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하였다.

사업계획서와 이에 따른 각종 기준 등을 최종 확정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 자문위원회는 2002년 9월 RCA 제 31차 정기 총회 까지 사업계획서와 기타 기준을 완성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에 따라 자문위원회가 7월 말 및 9월 총회 직전에 개최되었다. 그리하여 사업계획서를 확정하고 자문위원회 운영기준, 사무소장 선발위원회 운영기준, 사무소장 선발 기준 등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사무소장의 인건비 문제, 법적 지위 문제 등은 최종 타결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9월 총회 직후 IAEA는 RCA Coordinator 와 지역사무소장의 겸직을 제안하였다. 이 같은 제안은 지역사무소 운영에 대단히 중요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지역사무소장과 IAEA RCA Coordinator의 겸직 제안에 따른 사항까지 만을 다루었고 그 이후의 진전사항에 대하여는 다루지 못하였다. IAEA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제2장 조사연구의 내용

본 보고서에서는 RCA 지역사무소의 한국 유치의 제안단계에서부터 오프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파악하므로서 모처럼 우리나라에 생기는 국제기구 형태로서의 RCA 지역사무소가 명실공히 전체 RCA 회원국을 대표하는 사무소로서 위치를 다져가는 경로를 정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업계획서의 검토 변천 과정 및 지역사무소 운영에 따른 각국의 견해를 정리하였다.

또한 2000년 3월 27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소 구내에서의 RCA 지역사무소 오프닝 행사 내용을 점검하여 정리하였으며 아울러 RCA 30주년 기념 행사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였다. 기념행사의 주된 내용은 특별강연회였다. 이 강연회의 내용과 RCA의 발전을 위한 각종 제안사항을 정리하였다.

RCA 지역사무소를 설치하게 되고, RCA 30주년 기념행사를 우리나라 주관으로 개최하므로서 우리나라는 지역내에서 새로운 원자력 협력 파트너로서 당당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발돋움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 해외 진출이라는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제3장 조사연구의 결과

본 보고서는 건의사항으로서 RCA 지역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약속이 병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지역사무소가 국제사회에서 RCA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본 조사연구는 결론으로 다음 몇 가지를 건의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RCA 지역사무소의 법적 위치가 확고히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Legal Provision의 완성에 치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내외의 새로운 파트너 모색에 성공적이어야 한다. 즉, 국내의 원자력 관련 산업계의 재정지원을 비롯한 관심을 유발해야 할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지역 및 국제기구와의 동반자적 관계를 확대 증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지역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도록 해야 하며 넷째 사무소 스태프의 증원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지역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IAEA가 새롭게 제안한 사항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수용할 것은 과감히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를 하였다.

# A Study on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RCA Regional Office

## Summary

### 제1장 Necessity

The Korean government at RCA Mumbai meeting in March 2000 formally proposed establishment of the RCA Regional Office in Korea. The basic idea behind this proposal was to enhance Korea's nuclear status in the international/regional nuclear community. Korea has been trying to demonstrate its strong intention to contribute to the regional and international nuclear communities through highlighting Korea's role to this effect. Ever since Korea became a signatory country of RCA, the country has been a faithful Member State. However, during the past three decades RCA milestone, Korea's role has not been significant. It is explained that Korea's nuclear programs during the past 30 years have been much concentrated to the indigenous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technologies rather than radiation application technologies. It is also noted that the main mission of RCA is to enhance radiation application technologies in the region mainly for health care, food, industry and environment.

In consistence of Korea's recent emphasis on the development of radiation application technologies, the country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regional cooperation in this area and hoped to play a vigorous role in the RCA regime. To have an RCA Regional Office was Member States' long wish. IAEA also welcomed this new development since the Agency encouraged ownership of RCA programs by Member States. But because of financial difficulties, no progress has been made to open an RCA Regional Office in the region. Korea generously offered to host the Regional Office if the Office is located in Korea. This initiative would not only contribute Korea's intention to play a leading role in the region but also to accelerate the country's wish for overseas marketing of the locally developed nuclear technologies.

In order to be recognized as an authoritative organization in the region, the

Regional Office needed a formal agreement by all RCA Member States. This would be the Working Paper. This Working when adopted by the Member States with consensus would enable the Regional Office to function as a body representing all RCA Member States.

## **제2장 Studies Done**

The Working Paper embraced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Regional Office, nomination and selection of a Director, financial responsibility, legal aspect such as privileges and immunities, and interim measurement. Draft of the Paper was prepared by a Task Force Group comprising 7 Member States (Australia, China, India, Bangladesh, Japan, Korea and the Philippines). Australia and Korea were requested to take the lead.

However, whenever the Working Paper was tabled for discussion at RCA meetings (National Representatives Meeting and General Conference), there were a lot of other views from the Member States that it was difficult to reach an agreement. At the 24<sup>th</sup> RCA Meeting of National Representatives held in Korea in March 2002, an Advisory Committee was finally composed to finalize the Working Paper and other necessary guidelines. The Advisory Committee (6 members, i.e. Australia, India, China, Bangladesh and Korea plus RCA Coordinator) was successful to draw a final version of the Working Paper and other Guidelines. It was reported at September 2002 RCA 31<sup>st</sup> General Conference in Vienna and adopted.

Meanwhile, right after the 31<sup>st</sup> RCA GC, the IAEA suggested that the RCA Coordinator should station in the region to help the Member States in formulating as well as implementing RCA programs and at the same time the RCA Coordinator would have dual capacity as the Director of the RCA Regional Office. This flash but floating idea is now under careful consideration by the Korean government. This report, therefore, only covers up to the Agency's suggestion. When realized, this new approach will surely have a great impact to the operation of the RCA Regional Office.

This report covers from the offer to recruit RCA Regional Office in Korea to

the inauguration of the Office in Korea. Since the Regional Office opened from late March, the Office did not compile previous records regarding all consequences but KAERI had through carrying out this project. It will be a good historical record for Korea's RCA participation and progress, particularly with regard to the opening of the RCA Regional Office.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congratulate the 30<sup>th</sup> anniversary of the RCA Agreement, Korea hosted a special event in connection with the 24<sup>th</sup> RCA Meeting of National Representatives in Seoul and Daejeon and also in conjunction with the grand opening of the RCA Regional Office. The event, the RCA-30 Forum, was able to be a success through the support of this study. Through this study the RCA-30 Forum has been programmed and financially supported. With this RCA-30 Forum, Korea now could stand aloft among the countries in the region in contributing RCA activities. Moreover, such event hosting could provide particular meaning to explore nuclear overseas market.

### **제3장 Conclusion**

The report strongly urges Korean government to support both financially and administratively the RCA Regional Office to enter into designated function. It was also recommended the government to take a more active measure to contribute to the benefit of the Member States. The report made several recommendations in order to achieve an effective operation when enter into designated function. The recommendations are 1) to finalize necessary legal provisions as soon as possible so that the Regional Office can have legal entity in the international and regional community 2) to make efforts to seek additional partnerships both from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mmunities with particular emphasis on encouraging local industries to participate in RCA endeavors 3) to compose a Standing Advisory Committee and utilize the committee to the best 4) to secure qualified staff members for the Office such as a computer expert who will be totally responsible for electronic networking work and 5)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the IAEA's new proposal regarding the operation of the Office.

# 여 백



# 목 차

<b>제1장 서 론</b>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
제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	2
<b>제2장 RCA 추진사업 현황</b> .....	5
제1절 RCA 사업 현황 .....	5
제2절 RCA 수행 사업 .....	8
제3절 2001~2002년 수행 추진 .....	10
제4절 Thematic Project 수행 .....	17
제5절 사업주도국 (LC) 운영 .....	18
<b>제3장 지역사무소 설치 추진과 현황</b> .....	19
제1절 지역사무소 필요성의 대두 .....	19
제2절 RCA 지역사무소 설치 추진 .....	19
제3절 RCA 지역사무소 관련 사항 추진 일정 .....	43
제4절 RCA 지역사무소 현안업무 추진계획 .....	45
제5절 RCA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기여 관련 사항 .....	47
제6절 RCA 지역사무소 관련 예상쟁점별 대응입장 .....	48
제7절 IAEA/RCA Coordinator 및 호주등 회원국 대표가 고려한 지역사무소장의 역할 .....	49
제8절 2002년 3월 24차 RCA 국가대표자회의에서 논의 .....	51
제9절 IAEA-TC 와의 사전 업무 협의 사항 .....	51
제10절 2002년 9월 31차 RCA 총회에서의 논의 .....	56
제11절 지역사무소 자문위원회 회의보고 .....	57
제12절 RCA 지역사무소 운영 관련 IAEA측의 새로운 제안 .....	64
제13절 IAEA와의 비공식 협의시 의견 표명 요지 .....	75

<b>제4장 RCA 30주년 기념행사 추진현황</b> .....	79
제1절 RCA 30주년행사 추진개요 .....	79
제2절 RCA 30주년행사 준비내용 .....	80
<b>제5장 RCA 지역사무소 개설 홍보 내용</b> .....	87
제1절 개요 .....	87
제2절 홍보 주요 내용 .....	87
제3절 효율적인 홍보활동체계 구축 .....	88
제4절 추진일정 및 세부 홍보활동 .....	88
제5절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 내용 .....	90
<b>제6장 향후 RCA 지역사무소의 발전을 위한 제언</b> .....	93
제1절 독립된 법인격의 확보 .....	93
제2절 국제기구로서의 위상 정립 .....	94
제3절 사무소 자문기구의 집중화 및 활성화 .....	95
제4절 사무소의 국제화 .....	96
제5절 사무소의 위치에 대한 검토 필요 .....	96
건의 사항 .....	98

## 부 록

#첨부 1. 아·태원자력협력협정사무소 운영지원사업 처리규정 .....	103
#첨부 2. RCA 30주년 기념 과학 포럼 기념강연 내용 .....	107
#첨부 3. 과학기술부/한국원자력연구소 보도자료/언론기관 보도내용 .....	121
#첨부 4. RCA국가대표자회의 및 RCA지역사무소 개소식 사진 .....	127
#첨부 5. 2002년 9월 31차 총회에서 채택된 RCA지역사무소 설치 사업계획서 .....	129
#첨부 6. RCA 지역사무소장에 대한 고용계약서 초안 .....	137
#첨부 7. 2002년 9월 31차 총회에서 최종 채택된 RCA지역사무소 자문위원회 운영기준 .....	147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아·태지역은 경제와 과학기술 활동의 급속한 성장을 이룩한 매우 활동적인 지역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아·태지역내 회원국들의 원자력기술협력기구인 RCA(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의 설립을 주도하여 '72년 원자력분야로서 RCA는 회원국들, 특히 개도국들에 대해 과학시설 건립, 인적자원 개발·지원, 인프라 수립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매우 효과적인 지역협력체제로서 발전해왔다.

2001년말 현재 RCA에는 아·태지역내 17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수행중인 프로젝트도 30개 이상이 되는 활발한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75년 RCA에 협정에 서명한 이래 RCA 사업에 초창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으나 실질적인 공동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주도하지는 못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RCA 사업의 협력을 통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공업적, 의학적, 농업적 이용 등의 분야에서 커다란 기술확보의 발판을 이룩하고 기 개발된 기술을 다른 국가의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기술이전에도 크게 이바지한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기술확보의 근간에는 그간 RCA와의 협력을 통한 선진 원자력기술 습득이 큰 역할을 해 왔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가 아·태지역내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RCA를 통한 지속적인 협력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로와 같은 연구용 원자로를 자체 설계·건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아울러 동위원소의 이용 증진에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되었으므로 RCA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또한 산업계와 학계가 RCA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원자력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RCA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RCA사업의 구심점이 되며 RCA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는 아직 설치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RCA가 IAEA의 지원아래 출범하였으나 IAEA는 RCA협정의 당사국이 아니며 다만 행정적 지원을 담당할 뿐이므로 1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별도의 사무소에 대한 필요성이 1997년 RCA설립 25주년을 계기로 회원국이 마련한 RCA비전이 제시되었고, 회원국을 대표하는 사무소가 지역내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RCA회원국들의 여망인 지역사무소를 한국에 유치하여 운영하게 되면 원자력발전기술의 지역내 진출뿐만 아니라 방사선 이용기술의 지역내 전파업무에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으며 결국 이는 우리나라가 지역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여 RCA지역사무소의 한국 유치를 구체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0년 3월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제22차 RCA 국가대표자 회의에서 만일 회원국들이 RCA지역사무소를 한국에 설치기로 합의한다면 이 사무소의 운영을 위해 재정을 비롯한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제안하였다. 이 같은 제안은 전체 회원국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지역사무소 설치, 운영에는 지역사무소의 역할·임무를 비롯한 여러가지 법적 사항 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1년간의 기간을 두고 검토기로 하였다.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2001년 9월 비엔나에서 열린 제30차 RCA총회에서 채택됨으로서 2002년3월 우리나라에 RCA지역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2002년 3월 우리나라에 설치된 RCA지역사무소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 RCA지역사무소의 법적 기반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과제가 수행되었다. 또한 RCA 설립 30주년을 자축하고 기념하는 각종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방안도 논의하였다.

## 제 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본 과제의 주요목표는 2002년 3월 우리나라에 설치, 운영되는 RCA지역사무소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및 법적 기반 강화 방안을 조사하고, RCA 30주년 기념행사를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자력 위상제고 방안에 역점을 두고 수행하였다.

RCA지역사무소의 법적 지위, 사무소장의 경비부담 등 일부 실무적인 사항은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4개국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토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를 통하여 회원국과의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RCA지역사무소가 본 제도에 오를 수 있는 제반준비를 완성할 예정이다. 또한 법적 준비가 완성될 때까지 최대 2년 동안 잠정운영(Pilot Operation)을 하도록 되어 있는 RCA지역사무소에 대한 향후 효과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2002년은 RCA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이와 관련하여 2001년 9월 RCA총회에서는 30주년 특별기념 강연회, 특별 전시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보다 뜻깊은 기념행사를 갖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RCA설립 30주년 기념 특별강연회에는 인도, 방글라데시, 일본, 호주, 한국의 RCA 관계 전문 5명을 초청하여 RCA활동의 과거와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조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또한 과학포럼과 패널전시회를 개최하여 RCA활동을 가시적으로 홍보하였다. 본 연구과제 수행을 통하여 RCA설립 30주년 각종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RCA사업의 주도적 역할 수행하는 회원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졌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발전된 원자력기술을 바탕으로 RCA회원국과의 기술교류를 통하여 원자력기술 공여국으로 인식을 제고하고 기술수출의 기반을 확대해 나아가는 새로운 발전 방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여 백

## 제2장 RCA 추진사업 현황

### 제1절 RCA 사업 현황

RCA 사업의 범위는 농업, 에너지, 산업·환경, 보건, 방사선 방호 등에 걸쳐 폭 넓게 원자력기술 이용이 포함되고 있다. 또한 이 사업들은 회원국들에 의해 채택된 주제분야(Thematic Areas)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신규사업 입안 활동의 기초가 되고 있다. 회원국들은 RCA 사업의 지역적 오너쉽(ownership)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각 주제분야에 대한 사업주도국(lead countries)을 지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에너지·연구용원자로 분야가 지정되어 동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5년 동안 RCA는 개발도상 회원국들에게 중요한 이익을 창출하였다. 그간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에 대한 내용은 RCA 25주년 기념 책자인 “RCA ; A Window to the Future”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 가. 농업 분야

가장 먼저 시작된 지역사업은 '73년의 농업분야로서 이 사업은 '수산물의 방사선 보존을 위한 아시아 지역사업(the Asian Regional Project on Radiation Preservation of Fish and Fishery Products)'이다. 식품조사 기술은 현재 지역내 몇몇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업적인 조사시설과 향후 2년내 몇몇 국가들이 동 기술을 채택하기 위한 규제조정이 마련됨으로써 농업사업이 발전되었다.

회원국들은 식품 및 원예작물 위생을 위한 조사이용 및 식물성 위생 처리에 중점을 둘 것이며, 식품조사는 검역처리를 위해 일부 국가에서 현재 금지된 화학물질 대신에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인정된 대체 방안이다. 농업의 기타 분야는 유전공학인데 500개 이상의 방사선으로 조사된 재배품종이 개발도상국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 나. 산업 분야

RCA 사업중 규모가 가장 큰 UNDP/RCA/IAEA 지역·산업관련 사업은 산업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기술로서 비파괴검사(NDT : Non-Destructive Test), 방사선응용계측(NCS : Nucleonic Control Systems), 추적자기술(Tracer Technology), 방사선가공기술(Radiation Processing Technology), 핵분석기술(NAT : Nuclear



Analytical Techniques) 등이 있으며, 이 분야에서의 실적은 다음과 같다.

비파괴검사 분야에 있어서 수천명의 NDT 요원들이 지역 및 국내 훈련과정에서 훈련을 이수함으로써 5개 주요 분야(라디오그래피, 초음파 검사, 자석 분자검사, 액체 침투검사, 와류검사)에 대하여 몇몇 국가에서 동 검사 요원의 자격 및 인증을 마련하게 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회원국은 국가별로 국내 요원들을 지속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방사선응용계측 분야에서는 펄프 및 제지, 석탄 및 석유산업과 같은 산업체들이 습기, 두께, 높이, 밀도 결정을 위한 측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또한 석탄 및 광물 공정공장 시험시설도 일부 국가에서 설치되고 훈련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추적자기술 분야에서는 몇몇 국가들이 현재 추적자 그룹의 설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이들 활동을 통해 수요자들이 문제해결, 공정 최적화, 지하 송유관의 막힌 곳과 누수된 곳을 찾아냄으로써 유속측정 및 체재시간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수백만불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방사선가공 분야에서는 의료제품의 멸균을 RCA 국가들이 수용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 기술이 실제로 상업화에 이어지고 있다. 물질 특성을 바꾸기 위해 방사선을 사용함으로써 전형적인 가황(vulcanization)에 대한 대체방법으로서 알레르기 후유증이 거의 없는 천연고무 라텍스의 방사선 가황 및 전선의 천연고무 가교에 대한 기술적인 타당성이 수행되었다.

환경 시료분석을 위한 핵분석기술 분야에 있어서 회원국들은 공기오염원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ISO guide 25에 의거하여 인증을 얻기 위해 연구실 품질관리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 다. 환경 분야

5년간의 UNDP/RCA/IAEA 공동사업이 환경문제 및 비효율적인 에너지 생산 과정을 시정하기 위해 '97년에 승인되었으며 5개의 하부사업은 다음과 같다.

- 먹는물 공급원 고갈, 지하수 오염, 염수 침입 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청정 음용수 개발
- 해양오염, 적조, 침전, 지하수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양연안 환경 및 해양 오염 관리
- 지역에서의 대기 오염물을 측정하기 위한 대기 오염 및 대기오염 동향

-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 과정
- 사업에 대한 주요성과를 실수요자에게 알리기 위한 전산네트워크 구축

#### **라. 보건 분야**

RCA 회원국은 헤파티스B를 위한 RIA(Radioimmunoassay), 테크니슘-99m 이미징, 조직이식 멸균을 위한 방사선 사용과 같은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핵의학 기술을 도입했고, 조직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핵의학 기술자 및 조직 은행 운영요원들을 위한 원격 교육자료를 개발하였다. 신규 활동들은 현재 심장병, 흉부암, 갑상선암, 신장 질병의 진단을 위해 핵기술 사용, 방사선치료에 대한 품질보증, 조직이식의 멸균, 핵의학 및 조직은행에서의 원격 교육 및 자료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모으고 있다.

#### **마. 방사선 방호 분야**

방사선방호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분야이다. 회원국들은 계속적으로 방사선 하부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며, 방호 기준들을 조정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기존의 규제 구조를 강화하고 작업자와 일반 대중에 대한 방사선 방호 문제를 해결하며, 폐기물 안전 및 긴급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지역 차원의 방사능 환경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작업자와 일반 대중을 위한 방사선 방호 원격교육자료가 개발되고 있다.

#### **바. 에너지/연구용원자로/방사성폐기물관리 분야**

지역에서의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에너지 분야의 발전을 가져 왔으며, 개발도상 회원국들은 IAEA가 개발한 전원개발 계획 프로그램을 사용해 훈련을 받고 있다. 이 훈련은 회원국의 연구용원자로 및 발전용 원자로의 운전 관리, 안전 평가, 운전 안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개선을 위해 제공되고 있다.

#### **사. 개도국간의 기술협력(TCDC)**

RCA는 TCDC의 모델이 되고 있는데 기술 선진국은 기술이 비교적 덜 발달된 국가들에 기술, 시설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해 주고 있다. RCA의 많은 사업들은 지역에서의 정부, 준정부기관, 산업체간의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역협력 및 TCDC를 증진시키고 있다.

RCA를 통한 TCDC의 실례로는, 1개 개도국에서 다른 국가로의 전문가 파견, 개도국의 시설을 다른 국가의 전문가를 훈련토록 활용, 개도국에서 개최되는 훈련 과정, 강의 등이 있다. 최근 추세는 지역우수기술지원기구(RRUs, Regional Resources Units)를 도입하는 것인데, 이것은 훈련활동 수행, 지역내 다른 국가에 대하여 기술적인 서비스 제공 및 전문가 활용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RCA 사업은 가능한 한 지역 전문가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지역내에서 입수할 수 없는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다.

기술협력부 사무차장이 3개의 지역협정(RCA, ARCAL, AFRA)간의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창한 제안은, 하나의 지역에서의 성공적인 사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될 때 TCDC를 더욱 증진시키게 되어 기술투자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력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RCA는 이미 설립 25주년이 넘어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또한 여러가지 기술들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므로 다른 지역에 보다 많은 기술들을 제공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RCA는 다른 협정인 ARCAL, AFRA에 대해서 유익한 경험으로 이용될 수 있다.

## 제2절 RCA 수행 사업

RCA 사업은 크게 협력사업(Cooperative Project)와 공동연구사업(Coordinated Research Project)로 구분될 수 있다. 협력사업은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으로 개발하고 실제적으로 이용하고 연구수요에 부합되어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협력사업에는 Executive Management Seminar(EMS), Training Courses(TC), Workshop, Technology Application Demonstration, Expert Mission, Fellowships 등이 포함된다. 공동연구사업은 지역내 문제를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해결하는 국가 연구기관간의 네트워크이라 할 수 있다.

RCA 수행 협력사업은 크게 두가지인 IAEA/RCA 사업과 UNDP/RCA/IAEA 공동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사업은 IAEA 기술협력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단지 기술협력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 측면에서 다를 뿐이다. 즉 사업 중 UNDP가 예산을 지원했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1982년부터 1999년까지 IAEA가 RCA 사업으로 수행한 사업은 36개 사업으로 이중 UNDP/RCA/IAEA 사업은 5개이다. 이들 사업의 구성은 Industry : 12개 사업, Energy and Nuclear Power : 12개 사업, Medicine and Biology : 8개 사업, Agriculture : 3개 사업, Radiation Protection : 1개 사업이다.

## 가. 수행 완료 RCA 사업 (36개 사업)

### (1) IAEA/RCA Projects(31개 사업)

- RAS/8/011 Radioisotope in Industry
- RAS/6/006 TC on Brachytherapy of the Uterus Cancer
- RAS/1/006 Regional Workshop on NAA
- RAS/1/007 TC on Use of Reactor Neutron Beam
- RAS/6/011 Radioimmunoassay of Thyroid Hormones
- RAS/6/012 TC on Radioimmunoassay and its Clinical Applications
- RAS/0/012 Regional WASP Users Workshop
- RAS/6/010 Train-the trainers on Data Processing in Radioimmunoassay
- RAS/8/059 Isotope Hydrology Workshop and Seminar Support
- RAS/8/062 Radioisotopes in Industry
- RAS/8/063 TC on Advanced Methodologies for Isotope Applications
- RAS/9/006 Strengthening of Radiation Protection Infrastructures
- RAS/0/013 Energy and Nuclear Power Planning
- RAS/4/008 Nuclear Instrument Maintenance
- RAS/6/016 Use of Computers in Technetium-99m Imaging
- RAS/7/003 Radiation Sterilization of Tissue Grafts
- RAS/8/064 Radiation and Isotope Application in Industry
- RAS/0/015 Development of TCDC in Asia and Pacific
- RAS/8/065 Marine Contamination and Sediment Transport
- RAS/4/011 Research Reactor Utilization
- RAS/5/022 Control of Tropical Plant Viruses
- RAS/6/018 Radioimmunoassay for Hepatitis B Diagnosis
- RAS/0/019 Nuclear Information System
- RAS/6/022 Strengthening Nuclear Medicine in RCA Member States
- RAS/8/068 Isotopes and Radiation in Industry and the Environment
- RAS/8/069 Isotopes and Radiation in Industry and the Environment
- RAS/8/070 Isotopes and Radiation in Industry and the Environment
- RAS/0/021 Nuclear Power Planning
- RAS/0/022 Public Acceptance and Trade in Irradiated Food
- RAS/0/023 Energy, electricity and Nuclear Power Planning
- RAS/0/073 Measurement of Marine Contamination & Transport Phenomena

## (2) IAEA/RCA/UNDP 사업(5개 사업)

- RAS/8/008 Industrial Application of Isotopes and Radiation Technology
- RAS/8/061 Industrial Application of Isotopes and Radiation Technology
- RAS/5/020 Food Irradiation Process Control and Acceptance
- RAS/5/021 Increasing the Capabilities of Common Grain Legumes
- RAS/8/071 Isotopes and Radiation Technology and Environment Sustainable Development

## 제3절 2001~2002년 수행 추진

가. 2001~2002년 RCA 수행사업은 총 34개이며 농업 5개, 보건 5개, 산업 5개, 에너지/연구용원자로/방사성폐기물관리 3개, 환경(Joint UNDP/RCA/IAEA 사업) 6개, 방사성방호 2개, 일반 1개, 종료사업 7개 등이다. Operational funded projects 21개, non-operational awaiting funds projects 6개, to-be-closed but carried over projects 7개이다.

나. UNDP 지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2000. 12. 11~13,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된 공동사업 3자간 검토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UNDP 재원 사업

- Marine Coastal Environment and its Pollution
  - 필리핀 ADPAMARD DB 구축
  - 중국 : 독성 적조문제에 대한 관심 표명
- Air Pollution and its Trends
  - 중국이 사업주도국을 포기함에 따라 뉴질랜드가 사업주도국이 되고, 중국, 필리핀이 보조국이 됨
  - 중국, 베트남 : 국경을 초월한 대기오염 문제에 관심이 큼
- Electronic Networking and Outreach
  - RCA 지역홈페이지 (2가지 체제 운영(일반인 접근 및 회원국만 접근))
  - RCA 국가홈페이지 (현재 13개국 구축, 연결)
  - 정보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의 중요성 강조 및 웹 및 홈페이지 구축 관련 인력 개발 중요성 강조

### ■ IAEA/RCA 재원 사업

- Clean and Energy Efficient Production Processes
  - Arsenic and Fluoride Pollution에 대한 신규 활동 제안
  - Sustainability of Dams and Reservoirs의 RCA 신규사업 제안

- Water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문제이기 때문에 동 사업의 중요성 강조
- 인도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Arsenic and Fluoride 문제 강조

○ Clean and Energy Efficient Production Processes

- Component 2 " Industrial efficiency in industrial processes and plant (On-line investigations of industrial processes such as waste water 및 maintenance and extension of working life of industrial plant)가 RCA 사업 활동과 혼동이 있었음
-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flue gas 탈황제거를 위한 전자빔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향후 RCA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함

■ 기타 사항

- UNDP는 2000년 이후 사업에 대해 재정지원을 못하지만 동 사업이 지역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간주하였음
- 회의 참가자는 그동안 UNDP 재정지원에 감사를 표하였으며 UNDP도 arsenic 오염 및 아시아 지역의 안개 문제를 앞으로도 다루기를 희망하였음
- UNDP 재원 지원 중단으로 회의 참가자는 IAEA가 동 사업을 계속 지원하도록 요청하였으며 또한 회원국들도 사업활동을 계속 지원하고 사업목표를 달성할 것을 촉구함.
- 참가자들은 지역내 환경문제가 심각성을 공감함

다. 지역간 프로그램

RCA 회원국들은 아래의 기술이전 사업으로 지역간사업(INT/0/060)에 참여하고 있다.

기술이전분야	참 가	비 고
핵의학분야 원격교육(RCA)	RCA는 이전을 시행하였으며 ARCAL과 AFRA는 자료를 스페인어 및 불어로 번역함. RCA는 자료를 중국어, 한국어,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함	RCA에서의 200명 이상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ARCAL, AFRA 회원국 학생들에게도 참여하고 있음. 스페인어로 된 CD-ROM을 원격교육자료로 이용 가능
방사선종양학분야 원격교육 (RCA)	RCA는 자료를 개발하여 시험테스트함	ARCAL 및 AFRA는 시험테스트자료를 검토할 것임
Review of guides in various topics (ARCAL)	RCA와 AFRA는 ARCAL이 준비한 문서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제공	방사선치료분야서의 1개 safety guide가 완료되었으며 다른 1개가 스페인어에서 영어로 번역될 것이며 검토를 위해 AFRA, RCA에 이용 가능
식품조사 (AFRA)	RCA는 harmonized regulation을 AFRA 및 ARCAL에 제공, 또한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규정을 조화시키기 위한 회의에 전문가를 파견	정보교환 및 식품조사 및 phytosanitary treatment에 대한 규정의 harmonization 가능
Geothermics (ARCAL)	RCA와 AFRA가 워크샵에 전문가를 보내고 ARCAL이 주도한 상호비교 활동에 참여함	정보교환 및 상호비교 실습 참여
구제역 (Foot and Mouse Disease) QA/QC (ARCAL)	RCA는 QA/QC of lab diagnosing FMD에 대한 훈련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 전문가 2명을 워크샵에 파견함	훈련매뉴얼이 개발되면 3개 지역에서 선정된 연구실에 사용가능. 연구실은 향후에 증가할 것임
지역의 인터넷 연결 (RCA)	RCA 전문가들이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AFRA, ARCAL을 지원함	인터넷을 통한 홈페이지 접속은 국가간에 의사교환을 증진시키고 정보 교환을 촉진함
Harmonization of Tissue Banking Practices (ARCAL)	RCA 및 AFRA 전문가들이 2000년 10월 아르헨티나 워크샵에 참가함	라틴 아메리카에서 원격교육 커리큘럼 착수

<지역간 프로그램>

라. 2001~2002년 RCA 프로그램

2001~2002년 RCA 수행사업은 총 30개인데 이중 2000년도 이월 및 연장사업 18개, 신규사업 12개이다. 분야별 사업수를 보면 농업 6개, 보건 5개, 산업 4개, 환경(Joint UNDP/RCA/IAEA 사업) 9개, 에너지/연구용원자로/방사성폐기물관리 3개, 방사선방호 2개, 일반 1개이다. 동 사업의 예산은 2001년 5,350,000불, 2002년 4,180,000불이다. 세부적인 사업별 예산은 다음과 같다.

(1). 농업

Project Title	Fund (\$)				Total (\$)
	2001		2002		
	H	a/	H	a/	
1. RAS/5/037 Mutational Enhancement for Genetic Diversity	26,150		35,300		H : 61,450
2. RAS/5/035 Better Management of Feeding and Reproduction of Cattle	221,760		208,800		H : 430,560
3. RAS/5/039 Restoration of Soil Fertility and Sustenance of Agricultural Productivity		100,000	262,820		H : 262,820 a/ : 100,000
4. RAS/5/042 Application of Food Irradiation on Food Security, Safety and Trade	100,740		44,100	25,000	H : 144,840 a/ : 25,000
5. RAS/5/041 Production of FMD Antigen and Antibody ELISA Reagent Kit		236,940		137,360	a/ : 374,300
6. RAS/5/040 Development of Better Genotypes of Food and Oil Crops and Pulses				177,000	a/ : 386,220
Sub total	348,650	546,160	551,020	339,360	H : 899,670 a/ : 885,520
Total	894,810		890,380		1,785,190



(2). 보건

Project Title	Fund (\$)				Total (\$)
	2001		2002		
	H	a/	H	a/	
1. RAS/7/008 Quality Assurance in Radiation Sterilization of Tissue Grafts	139,600	153,400	50,000	60,000	H : 189,600 a/ : 213,400
2. RAS/6/028 Nuclear Medicine Applications	266,620	338,370	268,900	377,980	H : 535,520 a/ : 716,350
3. RAS/6/033 Distance Learning in Radiation Oncology	171,480				171,480
4. RAS/6/029 Improved Training for Nuclear Medicine Technicians		47,400			a/ : 47,400
5. RAS/6/035 LDR and HDR Brachytherapy in Treating Cervical Cancer	100,000	30,000	70,240		H : 170,240 a/ : 30,000
Sub total	677,700	569,170	389,140	437,980	H : 1,066,840 a/ : 1,007,150
Total	1,246,870		827,120		2,073,990

(3). 산업

Project Title	Fund (\$)				Total (\$)
	2001		2002		
	H	a/	H	a/	
1. RAS/4/018 Manufacture and QC of Co-60 Brachytherapy Sources		65,000			a/ : 65,000
2. RAS/8/085 Non-Destructive Testing and Evaluation		186,290		35,000	a/ : 221,290
3. RAS/8/091 Process Diagnostics and Optimization in Petrochemical Industry	193,380	84,200	230,400	18,200	H : 423,780 a/ : 102,400
4. RAS/8/089 Optimization of Mineral Resources Recovery Using Low Radioactivity and Portable Nucleonic Gauges		143,840		141,860	a/ : 285,700
Sub Total	193,380	479,330	230,400	195,060	H : 423,780 a/ : 674,390
Total	672,710		425,460		1,098,170

(4). 환경

Project Title	Fund (\$)				Total (\$)
	2001		2002		
	H	a/	H	a/	
1. RAS/8/076 Better Management of Environment and Industrial Growth	200,000	96,000	92,110	11,480	H : 292,110 a/ : 107,480
2. RAS/8/082 Isotopic and Related Techniques to the Assesment of Air Pollution	252,440	194,250	272,780	49,860	H : 525,220 a/ : 244,110
3. RAS/8/084 Isotope Use in Managing and Protecting Drinking Water	163,880	42,960	97,040	60,000	H : 260,920 a/ : 102,960
4. RAS/8/083 Management of Marine Coastal Environment Pollution		125,000			a/ : 125,000
5. RAS/0/029 Radiation Protection and Networking		78,900		120,700	a/ : 199,600
6. RAS/8/087 Radiation Processing Applications for Agrowastes		75,000		25,000	a/ : 100,000
7. RAS/8/090 Upgrading Natural Polymers and Enhancing Environment Conservation by Using Radiation Processing		103,320		108,780	a/ : 212,100
8. RAS/8/093 Use of Isotopes in Dam Safety and Dam Sustainability	151,000		195,400	49,600	H : 399,600 a/ : 49,600
9. RAS/8/092 Investigating the Environment and Water Resources in Geothermal Areas	146,750		180,500		327,250
Sub Total	914,070	715,430	837,830	425,420	H : 1,751,900 a/ : 1,140,850
Total	1,629,500		1,263,250		2,892,750

(5). 에너지/연구용 원자로/방사성 폐기물관리

Project Title	Fund (\$)				Total (\$)
	2001		2002		
	H	a/	H	a/	
1. RAS/4/016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from Non-power Sources		60,000			60,000
2. RAS/4/020 Improvement of Research Reactor Operation and Utilization	107,800	71,250	184,360	27,300	H : 292,160 a/ : 98,550
3. RAS/0/033 Role of Nuclear Power and Other Energy Options in Mitiga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123,800	24,600	50,000	105,880	H : 173,000 a/ : 130,480
Sub Total	231,600	155,850	234,360	133,180	H : 465,960 a/ : 289,030
Total	387,450		367,540		754,990

(6). 방사선방호

Project Title	Fund (\$)				Total (\$)
	2001		2002		
	H	a/	H	a/	
1. RAS/9/018 Harmonization of Radiation Protection	220,800	133,400	234,000	123,400	H : 454,800 a/ : 256,800
2. RAS/9/024 Environmental Radiation Monitoring and Regional Database		52,870			52,870
Sub Total	220,800		234,000	123,400	H : 454,800 a/ : 309,670
Total	407,070		357,400		764,470

(7). 일반

Project Title	Fund (\$)				Total (\$)
	2001		2002		
	H	a/	H	a/	
1. RAS/0/025 Development of TCDC in Asia and the Pacific	114,530		46,760		161,290
Total	114,530		46,760		161,290

## 제4절 Thematic Project 수행

Thematic Planning 이란 것은 IAEA가 당면한 여러 애로사항들을 타개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구상된 것이다. IAEA는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예산의 영점실질성장(Zero-real Growth)체제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의 여파로 IAEA 예산도 동결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회원국들의 분담금과 기술협력을 위한 자발적 기여금, 또는 특별 기여금의 수준이 종전에 비하여 증가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회원국들로부터의 기술지원 요청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와 함께 안전조치 분야에서의 사업은 확대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기술협력을 위한 부족 예산을 지역내 국가간의 협력 확대, UNDP 등 외부 기관의 재정 지원 확대,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금 및 특별 기여금 규모의 확대 등으로 타개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수행도 중점 주제별로 2년 단위의 계획을 세워 계속성을 갖도록 함으로서 1년 단위의 단기적인 기술요청에 따른 비효율성을 최소한으로 하기로 했던 것이다.

이러한 2년 cycle의 Thematic planning은 89년부터 시도되었으며 RCA는 1999년부터 5개의 중점 주제사업을 2년 단위의 주기로 추진하는 전략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중점 주제사업을 Thematic Project 라고 하며 1999~2000년에는 1) 원자력기술의 농업적 응용 2) 원자력 기술의 의학적 응용 3) 에너지/연구용원자로 운영 및 응용 4) 원자력의 산업 및 환경 응용 5) 방사선 방호의 5개 주제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2001~2002 주기도 가급적 이상 5개 주제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 잠정 결정되어 있는 입장이다.

6개 Thematic Program이지만 IAEA는 편의상 이를 7개 분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1)농업 2)보건(Health) 3) 산업 4) 에너지/연구용원자로/폐기물관리 5) 환경 6) 방사선 방호 7) 일반이다. 일반(General)이라는 것은 이른바 Program Ownership에 관한 사업이다. 즉, Policy Level Meeting을 갖는 일,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RCA 지침을 수립하는 과제, 프로젝트 수립을 위한 각종 회의 또는 연수 세미나 개최, 사업 주도국가의 업무를 지원하는 일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RCA Home Page를 구축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와 인도의 전문가가 IAEA본부에 와서 작업을 하였는데 그 비용도 RCA예산에서 집행되는 일을 말한다. 그리고 RCA 국가대표자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그 해에 국가대표자 회의를 Host하는 국가의 요원(주로 의장 예정자)이 사전에 IAEA에 와서 IAEA/RCA 측과 업무협의 하는 일이 근년에 이르러 관례로 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출장비도 RCA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을 말한다. 사실 그와 같은 일반적인 사업도 RCA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필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 회원국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No.	기간	행사명
1	1.21 - 1.25	IAEA/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Non-Destructive (NDT) In-Service Inspection in Petroleum Industries"
2	3.27 - 3.28	24th RCA National Representatives Meeting
3	4.15 - 4.19	IAEA/RCA Regional Workshop for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n Use of Isotopes in Dam Safety and Sustainability
4	5.13 - 5.24	IAEA/RCA Workshop on Core Management for Improved Utilization of Research Reactors
5	7.2 - 7.11	IAEA/RCA Regional Workshop on Process Optimization Using Tracers in Petrochemical Industries
6	12.9 - 12.13	IAEA/RCA Training Course on Proficiency Test in Radiographic Ultrasonic Testing of Welds

<2002 KAERI 유치 RCA events>

## 제5절 사업주도국 (LC) 운영

RCA 사업추진에 대한 IAEA의 입장변화는 과거 수년간 RCA 관련회의에서 강조되어 왔으며, 제 41차 IAEA 정기총회 기간중 개최된 RCA Meeting에서는 회원국에게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RCA 사업추진 방향 설정에 대한 회원국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국가별 장점분야를 활용하기 위하여 각 사업분야별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focal point 개념이 상기 RCA 회의 기간중 논의되고 회원국들로부터 묵시적 합의를 보게 되었다.

현재 Thematic Programme 및 UNDP/RCA/IAEA 공동사업의 사업주도국(Lead Country)은 아래와 같다.

Thematic Programme	UNDP/RCA/IAEA 공동사업
- 농업 : 중국	- 음용수 개발 : 필리핀
- 보건 : 인도네시아	- 해양환경오염 방지 : 호주/인도
- 산업 : 인도	- 대기오염 : 뉴질랜드 (중국, 필리핀)
- 환경 : 인도 (일본은 2004-2005 사업부터)	- 에너지의 효율적인 생산공정 : 뉴질랜드 (일본, 태국)
- 에너지/연구용원자로 : 한국	- 전산네트워킹 : 말레이시아
- 방사선방호 : 호주	

## 제3장 지역사무소 설치 추진과 현황

### 제1절 지역사무소 필요성의 대두

1972년 RCA가 출범한 이후, 회원국들은 대표자들의 회의를 가져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여 매년 한차례 IAEA 총회와 연계하여 RCA 회원국 회의를 갖기로 했다. 첫 회원국 대표자 회의는 1973년에 열렸다. IAEA 총회장소인 비엔나 소재 호프부르크 회의실에서 열렸다. 첫 회원국 대표자 회의에는 초기 협정 서명국인 인도, 필리핀, 방글라데쉬, 파키스탄, 말레이시아의 5개국 대표가 참석하였다. 이듬해인 1974년부터는 한국, 일본, 호주등 추가 서명국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런 대표자 회의가 몇 년 동안 계속되었다. 1978년의 회원국대표자 회의에서 RCA 지역사무소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회의록에 의하면 '회원국 대표들은 RCA 사업을 전담하여 지원할 지역사무소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IAEA를 비롯한 일부 회원국들은 RCA의 사업 규모가 아직은 지역사무소를 설치할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다'는 견해가 나왔다. 이후 지역사무소 설치 의견은 당분간 대두되지 않았다.

### 제2절 RCA 지역사무소 설치 추진

#### 가. 1997년 양곤 회의에서의 거론

1997년 RCA 협정 25주년을 맞이하는 미얀마 Yangon에서의 제19차 국가대표자 회의에서 RCA의 장래 비전이 제시되었다. RCA의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제안사항이 제시되었다. 그 중 하나가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자는 것이었다. 마침 IAEA는 RCA 사업의 회원국에 의한 주도 (Ownership)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입장이므로 지역사무소의 설치를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회원국들은 지역사무소가 설치될 경우, 그 재원과 법적 문제에 대하여 IAEA가 적극 지원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IAEA는 단순논리로서 지원을 약속할 형편이 아니었다. 지역사무소를 IAEA의 지부로 생각할 경우, 법적 책임과 재정지원을 해야하기 때문이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였다고 해도 과연 그 사무소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확신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Yangon 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다음해 뉴질랜드 회의에서 다시 거론키로 하고 더 이상 논란하지 않았다. 양곤회의에는 우리나라에서 과기부 원자력협력과 양성광 사무관이 대표로 참석하였고 KAERI에서는 국제협력실 홍영돈 행정원이 참석하였다.

## 나. 1998년 타우포 회의에서의 논의

1998년 3월 뉴질랜드 Taupo에서의 20차 국가대표자 회의에서 지역사무소 문제가 다시 거론되었다. 무엇보다도 재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IAEA는 자체 예산 지원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더구나 행정적으로 기술협력 사업을 위하여 본부 이외의 지역에 지역사무소를 둔 예가 없으며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었다. 물론 IAEA 지역사무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안전조치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도쿄와 토론토에 지역 사무소를 두고 있다. 그 지역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사찰관)은 모두 IAEA 정규 직원이며 인건비는 IAEA 정규예산에서 지급되고 있다. 사무실 운영비도 IAEA 정규 예산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기술협력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아태지역 기술협력 만을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둔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더구나 기술협력 지역사무소를 두기 위해서는 현장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IAEA는 예산에 있어서 실질영점성장 (Real Zero Growth)을 유지하고 있다. 전년 대비하여 예산 증액을 하지 않는다는 정책이다. 하지만 예산을 쓰고자 하는 분야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안전조치에 있어서 그러하다. 세계의 원자력 시설이 증가할수록 IAEA의 안전조치 업무는 늘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안전조치 사업을 확대하자면 상대적으로 기술협력 예산을 동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역사무소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IAEA로서는 이 모든 제약을 타결해 나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지역사무소 설치 의견이 나왔을 때 IAEA로서 애매한 입장을 표명하였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뉴질랜드 국가대표자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지역사무소를 설치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환영하지만 과연 그 지역사무소가 원래 기대했던 대로 성과를 거두며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에 시험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떠하냐는 의견을 내세웠다. 과거 자카르타에 UNDP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던 경험이 있으므로 (당시 UNDP 사무소장은 현재 태국 원자력청 부청장인 Manoon이 맡아 한바 있으며 기술담당관으로는 KAERI 진준하 박사가 파견되어 활동한바 있다) RCA 지역사무소도 그 같은 규모에서 시험적으로 운영하여 보고 실효성이 있으면 계속 확대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사무소장의 인건비 및 사무소 운영 경비를 어떻게 조달하느냐는 문제에 부딪혀 지역사무소 문제는 원점에서 맴돌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RCA 사업에 적극적이지 못하였고 더구나 지역사무소 문제에 대하여는 전후사정도 모르거니와 관심도 없었다. Taupo 회의에는 한국을 대표하여 KAERI 정준극 책임기술원과 KINS 조건우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였을 뿐이었다.

과거 UNDP 사무소의 경비, 즉 사무소장 및 기술담당관 인건비는 UNDP 사업비에서 조달하였으며 사무실 운영비는 인도네시아 원자력청 (BATAN)이 제공하였다. BATAN는 자카르타 소재 자체 사무소 건물의 스페이스를 무료 제공하였으며 행정보조 요원 (비서 및 운전기사)을 지원하였다. 물론 사무실 운영에 따른 통신비, 사무용품비등도 BATAN이 지원하였다. 만일 RCA 지역사무소를 지역내 어느 회원국에 설치하게 된다면 사무소장 및 지원인력의 인건비를 RCA 사업예산에서 지출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를 자발적으로 부담할 회원국을 물색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 다. 1999년 싱가포르 회의

1999년 3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21차 국가대표자회의에서는 RCA 지역사무소에 대한 사항이 논의되지 않았다. 당시만 하더라도 회원국들은 RCA 오너쉽 증대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하여 적응하느라고 부단히 힘들어하던 때였다. 오너쉽 증대를 위한 새로운 조치들로서는 RCA 운영규칙 및 가이드라인 제정, 지역자원 유닛 설정, 사업주도국가 설정, 2년 기간의 사업 추진 사이클 제도 채택 등이었다. 여기에 IAEA로서는 Central Criterion을 내걸고 이에 합당한 사업 제안을 요망하던 시점이었다. 싱가포르 회의에는 한국을 대표하여 과기부 원자력협력과 김숙현 사무관, KAERI 정준극 책임기술원, KINS 조건우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였다.

#### 라. 2000년 뭄바이 회의 (지역사무소 설치제안)

2000년 3월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제22차 RCA 국가대표자회의에서 한국은 RCA지역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는 것으로 회원국들이 찬성한다면 한국정부로서는 사무소의 운영경비를 부담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운영경비에는 사무소장을 제외한 직원 모두의 인건비를 포함된다. 한국의 이같은 제안은 이제 한국정부로서는 태지역에서 원자력 평화이용의 주도적 입장을 취하겠다는 의도와 이로 인하여 IAEA에서 상당한 위상을 견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마침 당시에는 IAEA 기술협력부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이 공석이었고 한국에서 몇 명의 유력한 인사가 국장으로 응모한 처지였다. 제22차 국가 대표자회의에는 한국을 대표하여 한국의 RCA 국가대표인 과기부 원자력협력과장 김진경씨가 참석하여 공식 제안을 하였다.

이같은 한국의 제안에 대하여 회원국들은 환영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여서 9월 비엔나에서 열리는 29차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2차 뭄바이 국가대표자 회의록에는 한국의 RCA지역사무소 유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Korea expressed its support for establishing an RCA Office in the region and that Korea will give considerable support if located in that country.”

이것이 우리나라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키로 한 첫 기록이다.

한국이 지역사무소 설치를 공식 제안하였고 회원국들의 환영을 받았지만 실상 한국 정부는 지역사무소 운영에 따른 제반 법적 준비작업, 지역사무소의 업무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못한 입장이었다. 일단 사무소 유치를 제안하고 나서 회원국들이 환영하면 그로부터 준비작업을 추진할 요량이었다. 그러므로 뭄바이 회의에서는 어느 정도의 윤곽도 발표할 입장이 아니었다. 실제로 지역사무소 설치에는 만만치 않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소장의 급여였다. 사무소장의 급여를 어떤 수준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느냐는 것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 사항은 사무소장의 신분과도 직결되는 것이다. 사무소장의 IAEA 직원 신분이라면 외교적 면책 특권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무소가 IAEA의 사무소라는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사무소장을 IAEA 국장급 (D 급)으로 간주할 경우, 이에 상응한 대우가 따라야 한다. IAEA 정규 직원과 마찬가지로의 대우를 해야 한다. 이주 비용, 주택 보조, 정착 지원, 자녀 교육 지원 등 Fringe Benefit를 감당해야 한다. 또한 정기 휴가, 연가 등에 대하여도 IAEA와 같은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빈번한 출장에 대하여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의 RCA Coordinator와의 업무 역할 분담이었다. 상호 중복되는 업무를 추진하여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만일 지역사무소가 IAEA와 어떠한 연계가 된다면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지역사무소장이 어느 범위까지 업무를 수행하느냐는 것은 지역사무소의 위상과도 관련되는 사항이다.

뭄바이 이전까지 지역사무소에 대한 IAEA의 입장은 별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었다. IAEA는 본부 이외의 지역에 사무소를 가질 수 없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방침은 1999년의 21차 싱가포르 국가대표자 회의에서도 확인된 사항이었다. IAEA가 지역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는 안전조치 사찰업무와 관련해서 뿐이다. 그러나 기술협력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무소를, 그것도 RCA만을 위해서

설치한다는 것은 비록 그 사무소의 운영경비를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고 해도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다만, 과거 UNDP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카르타에 IAEA/RCA/UNDP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한바 있다. 인도네시아 원자력청 (현 BATAN)의 자카르타 사무소의 일부를 할애 받아 사용하였으며 보조 직원을 지원 받은바 있다. 그러나 당시의 자카르타 사무소는 UNDP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이 운영 지원을 제안한 RCA지역사무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IAEA가 지원하여서 한국에 지역 사무소를 설치하게 된다면 이는 IAEA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된다.

우리나라가 RCA지역사무소 유치를 제안한 배경에는 이 기구가 RCA 회원국을 대표하는 지역사무소라는 개념보다는 RCA 사무소 (Secretariat)라는 개념에 보다 비중을 두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FNCA만 보더라도 일본 원산 (JAIF)산하에 ACC (아시아협력센터)라는 별도의 사무소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RCA 사무소으로서 RCA 모든 사업에 적극 관여한다는 것이 지역사무소 설치의 의도라고 한다면 IAEA의 견해 차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모든 사안을 검토하여서 2000년 9월 비엔나에서의 29차 총회에서 설명이 되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 마. RCA 29차 총회에서 협의

2000년 9월 17일 비엔나에서 열린 제29차 RCA 총회에서 한국은 지역사무소 유치에 대한 원칙적 설명만을 하였다. 3월의 뭄바이 회의 이후 그동안 두어 차례 IAEA와 기본적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회원국들의 의견을 취합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서 구체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다만 총회에서는 지역사무소 설치를 위한 Working Paper를 작성하여 차기 2001년 3월의 방글라데쉬 다카 회의에서 논의하는 합의를 하였으며 이 작업을 지원하는 소그룹을 결성하는데 그쳤다. 소그룹은 한국, 호주, 파키스탄의 3개국과 IAEA의 4자로 하였다. 한국, 파키스탄은 모두 의장국이기 때문이었고 호주는 RCA 운영규칙 및 지침을 주도하여 작성하는 등 RCA 전반적 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사실상의 RCA 지역사무소 사업계획서를 Project Proposal 이라고 부르지 않고 Working Paper라고 부르기로 한 것은 Project Proposal 이라고 하였을 경우, 계획중인 RCA 사업의 계획서 작성과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통상적으로 협의문, 협정문이 작성되기 이전까지의 사전 준비 계획서를 Working Paper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적합하다는 권고 아래 그렇게 부르기로 한 것이다. 총회에서는 4자 소그룹 회의를 2001년 초 적당한 지역에서 갖기로 하였다.

#### 바. 4자 소그룹회의에서의 협의

호주, 파키스탄, 한국, IAEA의 4자 소그룹회의에 앞서 한국 대사관의 김용환 과학관은 1월 16일과 2월 1일 IAEA를 방문하여 Aleta 조정관과 사전 협의 모임을 가진바 있다. 1월 16일의 협의에서 IAEA는 지역사무소장의 면책특권 부여 문제, 지역사무소장 경비 조달 방안, 지역사무소 설치 근거 마련, 지역사무소와 IAEA간의 기능 및 역할분담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2월 1일의 회의에서도 협의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었다. Aleta 박사는 비공식임을 전제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다.

- RCA 지역사무소를 설치하려는 목적이 회원국들의 수요에 맞는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이므로 지역사무소를 IAEA와 독립하여 설치코자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 IAEA의 법률부서 검토 결과 이를 위해서는 RCA 본 협정을 개정하거나 신규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 한국이 계획하는 대로 2002년 초부터 운영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합의에 의해 경과조치 (Interim Measurement)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함.
- 지역사무소 설치 방안에 대하여 2001년 3월 Dhaka에서의 국가대표자 회의에서 회원국들간의 기본 합의 (consensus)를 이루고 이어 2001년 9월 제30차 RCA 총회에서 결의안 (Resolution) 또는 Terms of Reference 형식으로 의사결정함이 바람직함.
  - 경과조치이므로 협정 개정 또는 신규 협정의 제정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임. 한국은 다카회의에서의 합의록을 근거로 사무소 준비 및 직원 채용할 수 있을 것임.
  - 사무소장 (Director)는 현 IAEA 직원 중에서 선발하여 IAEA부담으로 파견 근무케 하는 방안이 있으며 한국인을 Director로 신규 채용할 경우에는 한국정부가 경비 부담하여 Cost-Free-Expert Type A로 근무토록 함 (CFE A type는 해당정부가 일정 금액, 즉 P-5의 경우 연 15만불 규모를 IAEA에 기탁하면 IAEA가 그 자금으로 급여 및 업무 관련 경비 등을 대신 집행하는 형태임).
  - 이 경우, 지역사무소장은 IAEA 직원 신분이 되므로 특권, 면제 부여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임.
  - IAEA의 RCA Office는 합의 내용에 기술될 지역사무소와의 업무 분담에 따라 업무 협조를 수행함. 즉 IAEA RCA Office는 기획업무, 지역사무소는 집행업무를 분담함.

- 2002년도 중반 (6월)에 현 협정의 효력이 만료되므로 지역 회원국간 합의에 의하여 새로운 협정 문안에 지역사무소 설치 내용을 포함토록 할 수도 있을 것임.
- 결론적으로 새로운 협정 체결 이전까지는 회원국 합의에 의한 경과 조치로서 운영하고 새로운 협정이 체결된 후에는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무소를 운영함.

소그룹 회의는 2001년 2월 5일과 9일 비엔나에서 열릴 수 있었다. 마침 RCA 계획수립 훈련과정이 비엔나에서 열리게 되어 이를 계기로 갖기로 했다. 한국에서는 과기부 원자력협력과 김숙현 사무관이 참석하였고 보조로 한국원자력연구소 당시 국제협력담당 이정공 선임행정원이 참석하였다. 비엔나 주재 공관에서는 김용환 과학관이 참석하였다. 그러나 소그룹 멤버로서는 파키스탄의 RCA 국가대표인 Hasibullah와 비엔나 주재 대사관의 Khan Shoaib가 참석하였고, 호주에서는 비엔나 주재 대사관의 Claudio Tuniz 참사관만이 참석할 수 있었고 중국과 말레이시아가 옵서버로 참석하였다. 회의는 RCA Coordinator인 Aleta 박사가 주재하였다.

2월 5일의 소그룹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논의가 있었다.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대로 회원국간의 의견 차이가 많았고 또한 IAEA로서도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므로 지역사무소 사업계획서 작성은 난항이 예상되었다.

○ 파키스탄의 Hasibullah는 지역사무소의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는 우리나라가 지역사무소 유치를 제안한 뭄바이 회의에 정치적으로 참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뭄바이 회의에 대하여 생소한 입장이었다. 그는 지역사무소장과 RCA Coordinator간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상호 갈등이 불가피하고 그 결과로 RCA 사업집행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우리측은 지난 1996년 이해 지역사무소의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회원국간에 논의가 있었고 합의가 되었음을 상기시켜도 그것은 과거에 회원국들이 그 파급효과를 생각지 못하고 동의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여 지역사무소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우리측은 소그룹회의 지역사무소가 필요치 않다고 권고한다면 한국으로서도 굳이 지역사무소 유치를 주장하지 않겠으며 설치 제안 자체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강조하자 이는 자기 개인의 의견일 뿐이며 회원국들의 의견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이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 같은 견해에 따라 소그룹은 지역사무소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질의서 (Questionnaires)를 만들어 회원국에게 배포하여 의견을 받도록 하였다.

- 지역사무소장 인건비에 대한 우리측 제안, 즉 만일 지역사무소장이 한국 이외의 회원국 출신이면 그 출신국이 부담한다는 제안이 형평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IAEA측은 Cost-Free Expert A Type를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뚜렷한 대안으로 제시되지는 못하였다. 소그룹 국가 및 옵서버 국가들은 모두 만일 자기 나라 인사가 사무소장이 된다고 해도 경비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다른 나라 출신이라고 해도 한국이 부담하여 주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 예산확보 명분 등 국내 여건으로 인하여 한국 이외 국가 출신 사무소장까지 경비 지원할 당위성을 찾기 힘들다고 설명하였다. Hasibullah는 사무소장 경비 문제가 선결과제임을 지적하고 파키스탄도 사무소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이로 미루어보아 지역사무소 설치 타당성 문제는 사무소장 경비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어려울 것이 없다는 인식을 주었다. 그리고 특권 문제는 실질적 이득이 거의 없으므로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아닌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회의 참석자들은 소그룹의 목적이 다카회의에 제출할 사업계획서를 완성하는 것이니 만큼 2월 9일 다시 회합하여 의견을 조율키로 하였다.
- 김용환 과학관이 IAEA TC 부서의 아태지역협력 과장인 Razley와 면담한바 그는 지역사무소에 IAEA직원을 파견한다든지 또는 IAEA사무소를 지역에 만들어 IAEA직원을 파견하는 문제는 이사회 (BOG) 의결사항임을 되풀이 설명하고 이사회에서 지역사무소 설치의 타당성을 설명해야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임시운영기간을 3년으로 잡고 그 기간동안 한국인 사무소장을 임명하고 아울러 재정문제를 해결하자고 말레이시아가 제안하였으나 이 제안도 전체 회원국들의 지지가 필요하므로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견이었다.

#### 사. 2001년 다카 회의에서의 결정

2001년 3월 방글라데쉬의 다카에서 열린 23차 RCA 국가대표자회의에서 지역사무소 설치와 관련한 그 동안의 추진 경위가 보고되었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가 논의되었다. 지난 2월 비엔나에서 열린 4자 소그룹 회의의 결과도 보고되었다. 다카회의에는 한국을 대표하여 과기부 윤동열 원자력협력과장과 기술자문으로서 원자력연구소 정준극 책임기술원이 참석하였다.

다카회의에서는 IAEA가 작성하여 전체 회원국에게 회람한 설문서에 대한 결과

보고도 있었다. 다수 회원국들이 설문서에 회신하지 않았음은 유감이었으나 그래도 의견을 건설적인 의견들이 상당수 제시되었다. 호주는 사무소장에 대한 문호를 회원국 이외의 국제기구 인사에게도 오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은 초대 사무소장은 한국인이 아닌 회원국 인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인도는 사무소장 인건비를 한국이 패키지로 부담하여 줄 것을 요망하였다. 한국의 당초 계획서에 따르면 한국인이 사무소장으로 선출될 경우, 급여는 한국정부가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즉, 한국인이 사무소장이 될 경우에는 IAEA의 D급 또는 P-5급 급여를 부담할 수 없으므로 한국의 실정에 맞게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회원국들은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문의하였다. 한국은 원자력연구소 부소장급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인도의 주장은 그 정도 수준에서 한국 정부가 한국 이외의 회원국 출신 사무소장 급여를 부담한다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예산일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기왕에 한국정부가 지역사무소장 용으로 인건비를 확보해 놓았을 것이므로 한국인이 사무소장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었다. 또 그렇게 한다면 지역사무소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위상도 높아 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었다.

회의에서는 지역사무소의 필요성, 운영에 따른 문제, 사무소장의 역할 등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다시 야기되었다. 한국 대표에게 많은 질문을 하였으나 확실한 세부 방침까지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에 어려움이 있었다. 사무소장의 경비를 출신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항목에서 특별히 논란이 많았다.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지만 특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사무소장 경비를 회원국 공동 부담하자는 견해, UN이 정하는 Rate에 따라 부담토록 함이 어떻겠느냐는 의견, 부담에서 LDC는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 LDC를 제외한다면 LDC 출신은 사무소장에 응모하지 못하지 않겠느냐는 우려 등등 수많은 논란이 있었다. IAEA 는 별로 환영하는 기분이 아니었다. 아무래도 이것저것 신경 쓸 대상이 생기는 것이므로 어정쩡한 입장이었다. 회의에서는 Roll Call 투표로서 지역사무소의 한국 설치 여부를 결정기로 했다. RCA 회의에서 Roll Call이 이루어지는 것도 유례가 없었던 일이었다. Roll Call에 참여한 회원국들 중에서 구체적인 반대 입장을 내세우는 회원국은 없었다. 다만 일부 회원국은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다시 검토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내세웠을 뿐이었다. 결국 한국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한다는 사항은 찬성되었다.

회의에서는 한국이 지금까지 나온 회원국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 오는 9월 비엔나에서의 30차 총회에서 검토하고 채택할 것이 협의되었다.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7명 위원의 Task Group을 구성하였다.

한국, 호주, 일본,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중국이었다. Task Group 업무는 한국과 호주가 주도하도록 하였다. 다카 회의 공식 폐회 직후, 한국의 제안에 따라 첫 Task Group 회의가 같은 장소에서 있었다. 참석자는 호주의 John Rolland, 인도의 Raghuramam, 파키스탄의 Hasim, 중국의 Zheng Kemin, 필리핀의 Alumanda dela Rosa, 한국의 윤동렬 과장이었다. IAEA를 대표하여 Aleta 박사도 참석하였다.

Task Group 회의에서는 Working Paper 작성을 위한 일정이 협의되었다. 한국이 5월 말 까지 금번 다카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제안한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Working Paper를 작성하고 이를 호주와 협의한 후 우선 IAEA에 송부하여 의견을 정리하며 그 후 6월 말 까지 기타 Task Group 회원국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묻도록 하였고 이어 8월 말까지 전체 회원국에게 회람하며 9월 중순 비엔나에서 열리는 30차 총회에서 최종 검토한다는 일정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5월말, 개정된 사업계획서를 IAEA에 송부하였고 IAEA는 자체 의견을 다시 한국에 6월 중순 보내주었다. 한국은 IAEA의 견해를 참작하여 다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호주를 비롯한 Task Group에 송부하였다. 이에 앞서 한국은 RCA에서의 일본의 역할과 위상을 고려하여 6월 중순, 마침 FNCA 업무차 일본을 방문하는 KAERI 정준국이 일본 외무성 Kato Motohiko 군축원자력과장 (RCA 일본 대표) 및 관계관과 회합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구체적이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호주의 관심은 한국이 지역사무소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을 약속하였으나 언제까지라는 약속은 없으므로 만일 사정에 따라 (담당 고위관계관의 직위 변경 등) 지원이 중단되면 문제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 지역사무소가 한국이 존속하는 한 한국 정부가 재정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24차 국가대표자에서 결정되어 회의록에 기록된 지역사무소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로써 2002년 3월 한국에 지역사무소를 개설한다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양해되었다.

1) The Meeting expresses appreciation and thanks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having offered support to establish the RCA Regional Office with a view to further improve the RCA performance and profile in the future.

국가대표자 회의는 한국 정부가 RCA 지역사무소를 RCA의 장래 활동 증대와 인식 제고를 위해 유치한데 대하여 감사를 표명하였으며

2) The Meeting notes the previous consensus decisions by meetings of RCA

National Representatives to support, in principle,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Office.

과거의 국가대표자회의에서도 지역사무소 설치를 원칙적으로 지지하는 결정을 하여 양해되었음을 주목하며

3) The Meeting notes the reservations expressed by some member States, in particular concerning the costs and consequences resulting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Regional Office and its interactions with the RCA office of the IAEA, the RCA Chairperson and with the Lead Countries

그러나 몇몇 회원국들이 지역사무소장에 대한 경비문제, RCA Coordinator와의 역할 분담 문제, RCA 의장 및 사업주도국가 사업책임자와의 업무 범위 문제 등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음을 주목하며

4) The Meeting supports the view that the essential purpose and role of the Regional Office should be to promote the visibility of the RCA in the region and in particular to increase the funding base available to the RCA as outlined in section 3.1 of the Working Paper as circulated by Australia

지역사무소 설치의 주요 목적이 지역에서 RCA의 장래 기여성을 증진하며 아울러 호주가 제시한대로 RCA 사업을 위한 새로운 재정을 증진한다는 관점을 지지하며

5) The Meeting requests that a working paper be prepared for consideration at the 30th General Conference of RCA National Representatives Meeting to be held in September 2001 which sets down the basis of the initial operation of the Regional Office in Korea in 2002 including its financial basis, its role and responsibilities, any institutional or legal issues, and more information of the Regional Office. The paper should be drafted by a task force consisting of Korea, Australia, China, India, Japan, Pakistan, Philippines and the RCA Coordinator; Korea and Australia would take the lead. The Working Paper should be circulated about a month in advance of the RCA GC meeting.

30차 총회에서 사업계획서 등이 채택되어 2002년 3월 한국에서 지역사무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타스크 포스 위원회가 완성할 것을 요망하였다.



## 아. 2001년 8월 미션 브리핑에서의 논의 (비엔나)

- 2001년 8월 22일 비엔나에서 IAEA 주관으로 RCA 회원국 공관 과학참사관을 대상으로한 Mission Briefing이 있었다. 이 모임은 9월 중순 비엔나에서 열리는 RCA 총회의 안건을 사전 설명하므로서 회원국의 RCA 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있다. 이 모임에는 17개 회원국 중 10개국 공관원이 참가하였다. 10개국은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베트남, 파키스탄, 인도였다.
- 이 자리에서 RCA Coordinator인 Aleta 박사는 RCA 지역사무소 설치 관련 현황에 대하여 한국측에게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김용환 과학관이 이미 배포된 Working Paper 초안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김 과학관은 한국이 Working Paper의 초안을 Task Group 7개국과 협의후 전 회원국에게 배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각국의 견해를 이른 시일 안에 제시하여 줄 것을 요망하였다. 이어 김 과학관은 Working Paper가 금년 총회에서 채택되면 내년 3월에 지역사무소가 출범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계속하여 2002년은 RCA 설립 30주년이고 24차 국가조정관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므로 지역사무소 설치로 RCA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게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하였다.
- 이에 대하여 RCA 브리핑 참가자들도 RCA 회원국 전체의 합의로 2002년에 지역사무소가 문을 열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법적 기반을 확보하며 지역사무소장을 선출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 대표들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내놓기도 하였다.
  - 회원국중에는 양국 관계가 비정상적인 국가들도 있으므로 지역사무소장의 면책 특권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말레이시아).
  - 법적 기반을 갖기 위한 보조약정 (Supplementary Agreement) 체결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연구가 필요하다 (필리핀).
  - 내년 3월에 사무소 오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물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파키스탄).
  - RCA 사업 관련, 3명의 Full time 직원을 IAEA부담으로 지역사무소에 파견 근무토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RCA 조정관).
  - 지역 이외에서의 전문가도 지역사무소장 응모가 가능토록 되어 있다. 이 경우, 면책 특권 부여에 대한 방안이 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호주).
  - 지역사무소 운영에 관한 정부 규정과 사무소 내부 규정이 상이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RCA 조정관).

- 현안이 되고 있는 지역사무소장에 대한 경비 추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IAEA P-5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급여 및 Fringe Benefit를 합하여 연봉 20만불에 이른다. 그러므로 일반 회원국으로서 이만한 재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 아닐 수 없다.

1) 직접 경비

- 급여 (연봉 약 6만불)
- 이사지원비
- 의료보험 (월 급여의 3.4%)
- 자녀 학자 보조 (1인 외국인학교 년 약 5천불)
- 연가 보조비
- 퇴직 적립금 (년 1개월 급여)

2) 간접 경비

- 주택 보조
- 국내 소득세 보상금
- Home Leave 경비
- 자동차 보험

자. 2001년 9월 30차 총회에서의 논의

- 2001년 9월 비엔나에서 열린 제30차 RCA 총회에서는 RCA 지역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한다는 안건을 최종 확정하였음. 다만, 법적인 준비사항, 사무소장의 경비 부담 등 몇 가지 쟁점에 대한 해답이 아직 분명하게 제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소 오픈은 한국이 계획하고 있는 대로 2002년 3월에 하되 약 2년간의 잠정 운영기간 (pilot operation)을 두기로 하였음. 그 동안에 현안 사항에 대한 모범 답안이 나오도록 한국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당부되었음. 즉, 다시 한번 회원국들의 견해를 종합하고 현실에 합당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시일 안에 전체 회원국들에게 회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 총회에서 RCA Coordinator인 Aleta 박사는 지난 3월 Dhaka회의에서 합의된 대로 7 개국 Task Force Group 에 의한 Working Paper (사업 계획서) 가 마련되어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설명하고 이어 한국측의 추가 설명이 있었음. 한국측은 미리 준비한 OHP를 통하여 지금까지의 배경, 현재 상황, 앞으로의 계획

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였음. 이 설명이 끝난 후 의장이 회원국들의 코멘트를 요청하니 예상하였던 대로 여러 회원국들이 다시금 각기 나름대로 코멘트를 하였음.

중국은 사무소장 임명이전에 사무소장 경비가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 또한 모든 국가가 사무소장 응모에 똑 같은 자격을 가져야 함을 주장. 사무소장 선출을 위한 위원회를 3개 의장국, 한국, 호주로 구성한다는 설명과 관련하여 이 위원회가 영구적인지 한시적인지를 문의. 사무소 지원요원을 모두 한국인으로 구성한다는 계획과 관련하여 그중 적어도 한 사람은 회원국 사람이 되기를 희망.

인도는 사무소장 응모자격을 회원국 인사에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 사무소장 응모의 문호를 지역내 다른 국제기구 또는 다른 회원국에게까지 넓히는 것은 RCA 위상을 고려하여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 따라서 사무소장 응모자격은 회원국에 한함이 당연함을 강조. 사무소장 경비와 관련, 한국인이 사무소장이 될 경우, 한국 정부가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주장. 누가 사무소장이 되던지 똑 같은 신분과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 다른 나라 사람이 사무소장으로 선출되면 10만불을 받고 한국인이 사무소장으로 선출된다면 5만불을 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공평치 않다는 설명.

인도는 한국이 한국인이 사무소장이 될 경우에 대비하여 급여 등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음. 총회에서 설명에서 한국은 사무소 운영비 및 한국인이 사무소장에 선출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약 25만불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고 하였음. 한국은 사무소장의 경비를 한국 실정에 맞추어 1년에 약 5만불로 계산하고 있다고 답변. 인도는 그렇다면 한국인이 사무소장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예산을 다른 나라 출신의 사무소장에게 지급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세움. 즉, 예산을 Package로 계산하기를 바란다는 주장. 구체적으로 말하여 다른 나라 출신의 경우, UN이 정하는 P-5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지만 (1년에 약 10만불 이상) 실제로 그런 예산을 조달할 수 있는 국가는 극히 한정되어 있어서 현실적이지 못하므로 한국이 기왕 발벗고 지역사무소를 지원할 바에는 이미 확보해 놓은 예산을 다른 나라 출신의 사무소장에게 사용하기를 바란다는 당부. 1년에 5만불 수준이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였음. 그리고 급여는 Local Currency 로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견해였음.

인도네시아는 지역사무소가 RCA Ownership을 증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음. 사무소장 선출과 관련하여 경비 부담문제가 당분간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인이 먼저 사무소장을 하고 그 후 시간을 두고

경비 부담할 수 있는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 다른 재원을 가능한지를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

호주는 오늘날은 RCA 장래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입장임을 강조하였음. 예를 들어 UNDP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바로 RCA가 위기의 입장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는 설명이었음. 사무소장 선출에는 메카니즘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였음. 기본적으로 공개, 투명한 방법으로 선출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음. 사무소 운영에 따른 실무에 아직 많은 난제가 있음을 지적. 예를 들어 법적인 문제라는 설명. 사무소를 설치해 놓은 후 그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고려해야 할 사항임을 지적. 사무소장이 새로운 프로젝트의 수립, 작성에 깊이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 왜냐하면 이미 Lead Country가 있기 때문에 사무소장으로서 Lead Country의 역할을 지원할 일이 있으면 지원해 주면 된다는 설명이었음. 결론적으로 호주는 지역사무소를 모든 법적 문제 등이 가다듬어질 때까지 Interim Base로 운영하는 것을 환영하였음.

태국도 임시 운영을 지지하였음. IAEA와의 법적 유대를 명확히 함이 필요함을 내세웠음. 즉, 후견자로서 IAEA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음. 다른 국제기구 등과 협의할 때 충분한 위상을 지니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였음 (Recognizable Status). RCA가 지역내에서 어떤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곤란하다는 것이었음. 사무소 운영과 사무소장등 직원에 대한 경비 등 재정문제는 매우 중요하므로 확실한 확보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도 당부하였음.

사무소장 응모와 관련하여 호주는 모든 회원국이 똑 같은 자격을 갖도록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하였음. 다만, Best Person 이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가장 유능한 사람이 사무소장으로 선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일 지역 내 회원국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면 다른 국제기구에서 선출해도 좋다는 점은 주장했던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국제기구에 상당 기간 근무한 실적이 있는 인물이라면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므로 그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기구에도 문호를 개방하자는 주장을 한 것이라고 부연하였음. 재정문제와 관련하여 Interim 기간중 사무소가 과연 필요했던 것인지를 평가하고 그 후에 세부적인 것은 결정하자고 주장하였음. 호주는 또한 사무소 재정이 반드시 독립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이는 IAEA 또는 다른 국제기구로부터 재정을 지원 받게 된다면 혹시 RCA Ownership 증대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라고 생각됨.

필리핀은 사무소장에게 외교적인 면책 특권을 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을 당부하였음. 현재 사업계획서에는 사무소장의 면책특권은 없으며 한국 국내법을 따라

야 한다고 지적되어 있음.

일본은 Interim 운영기간을 3년으로 잡았지만 2년이면 충분하며 그 기간동안 사무소장의 경비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강조하였음. 그러나 일본은 사무소장 경비와 관련하여 출신국 부담 원칙이 타당하다고 말하였음.

말레이시아는 사무소장이 한국 국내법만 준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를 방문할때에 그 국가의 국내법도 준수해야 할 것임을 지적. 또한 Liability 및 직무상 취득한 사항의 비밀 준수에 대한 규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한국은 앞으로 사무실 운영에서부터 사무소장 선출 등 일련의 제도적 준비를 담당할 '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의 구성을 새롭게 제안하였음. 지난 Dhaka 회의에서 구성한 Task Force Group (7개국)의 역할은 총회에 상정할 Working Paper의 작성으로 완료되었으므로 금번 총회에서 제기된 여러 사항을 취합하여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기타 사무소장 선출 등에 따른 규정 등을 만들 새로운 위원회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음. 한국은 위원회의 구성을 3개 의장국, Host Country인 한국, 가장 경험이 많고 Task Force 의 Lead를 맡아 하였던 호주, 이렇게 5개국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음. 3개 의장국 중 차기 의장국이 한국이므로 실제로 위원회는 4개국으로 구성되는 것임. 그러나 인도는 3개 의장국과 Host Country 인 한국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이었음. 즉, 3개국 위원회면 충분하다는 견해였음. 이 문제는 IAEA/RCA Office가 7개 Task Force 국가에게 다시 한번 문의하여 의견을 취합한 후 정리토록 하였음. (RCA Coordinator 는 한국의 제안 내용을 10월 초순 Task Force 국가에게 문의하였음. 방글라데쉬, 필리핀이 한국의 제안을 지지하였고 다른 국가는 코멘트가 없었음.)-

- 이렇게 각국의 견해가 분분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자 인도네시아가 발언권을 얻어 결론적인 제안을 하였음. 즉, 첫째 금번 총회에서 지역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최종 결정하며 둘째, 한국에 설치하는 것을 결정하며 셋째, 모든 법적 준비, 사무소장 선출 등이 완료될 때까지 2년 기간동안 잠정 운영하되 내년 3월에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24차 RCA 국가대표자회의 및 RCA 설립 3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일단 사무소를 오픈하는 것을 승인하자고 제안하였음. 이와 함께 한국이 사무소 오픈에 대한 준비를 충실히 하도록 당부하였음. 이 같은 제안에 대하여 회원국들은 만장일치 동의하였음. 이로써 한국에 RCA 지역사무소 설치안은 일단 확정되었음.

※ 앞으로 해야 할 일:

- 1) 한국이 IAEA와 협의하여 '자문위원회' 구성: 2001년 10월중에 인도, 방글라데쉬, 한국, 호주의 4개국으로 구성 (한국은 Host country 이면서 차기 의장국이므로 단일 위원으로 활동)
- 2) 자문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최종 사업계획서(Final Working Paper) 작성: 2001. 12월 말까지. 금번 총회에서 제기된 견해들을 가급적 반영하여 작성. IAEA/RCA Office의 자문 필요. 작성된 최종 사업계획서를 2001년 12월말까지 전체 회원국에 다시 회람하여 수용 토록함.
- 3) 법적 준비: 2001. 12월말까지 각종 법적 준비 조치 추진계획 완성.
  - IAEA-한국정부간의 양해각서(MOU): IAEA DG 또는 DDG 와 MOST 대표 간에 서명. 지역사무소 설치, 운영에 따는 IAEA의 역할, 한국정부의 지원내역을 명시
  - RCA 협정의 부속문서로서 전체 회원국이 동의, 서명하는 이해각서(LOI) 체결
  - 필요시 한국정부와 사무소장 출신국 정부와의 사무소장 활동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
  - 한국정부의 지역사무소 설치를 법적 뒷받침해 주는 문서 (부령 등)
- 4) 사무소장 선출 지침 완성: 2001. 1월말까지 사무소장 선출 지침을 '자문위원회'가 확정된 후 전체 회원국에게 회람하여 수용, 동의토록 함
- 5) 사무소장 공모: 2001. 1월 말까지 IAEA/RCA Home Page, 각국의 RCA 국내 Home Page에 공모 내용을 홍보하며 IAEA 와 한국 정부 공동명의 및 자문위원회 협조 명의로 각국 RCA 국가대표에게 공모 안내 서한, 관련기관에게 공모 안내문을 발송하여 공모 착수
- 6) 2002년 3월, 지역사무소 오픈닝 준비: 사무소 건물 임대, 사무소 지원인력 선발, 사무집기 구매, 통신시설 완비, 소개책자등 자료제작, 개소식 (현판 및 테이프 커팅) 진행 준비 등 (한국이 특별위원회 구성하여 추진 필요)

※ 24차 RCA 국가대표자 회의를 3월 25일 (월)부터 개최기로 잠정합의하였으므로 개소식은 3월 28일 (목) 또는 2월 29일 (금)에 가지는 방안이 있음. IAEA를 대표하여서는 최소한 DDG/TC의 참석을 사전 당부할 필요가 있다.

- RCA Office 는 총회 약 1주일 후인 9월 22일자로 요약 보고서 초안을 전체 회원국에게 회람하고 의견이 있으면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국의 RCA

Representative는 지역사무소 사항과 관련하여 보고서 5페이지 하단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 한국이 총회에서 설명한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10월 5일 자로(추석 연휴 때문에 지연되었음) RCA Office 에 이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요약 보고서에는 “The Meeting agreed in principle on the establishment of the regional office for an interim period of 2 years; required ROK to prepare for its opening in March 2002 during the 24th RCA Meeting of National Representatives which ROK will host; and asked again a revision of the working paper incorporating the several comments made therein.” 이라는 내용과 함께 ‘ROK will revise the paper with assistance from the task force which prepared the earlier version, will revise the paper.’ 라고 부연하였음. 그리고 하단에 7개국 Task Force 국가는 호주, 한국, 인도, 파키스탄, 중국, 필리핀, 일본이라는 주석을 달아 놓았다.

한국은 그 구절이 “The Advisory Committee will prepare a final working paper with assistance from the IAEA/RCA Office and will circulate to all Member States at the earliest convenience for their final review. ROK will take the lead to make a final working paper.” 라고 되어야 당연하며 덧붙여서 The formation of the Advisory Committee shall further developed 라는 설명이 있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 한국이 30차 RCA 총회에서 설명하였던 이 사항과 관련한 내용의 골자는 다음과 같음. 지난 Dhaka 회의에서 구성하였던 Task Force의 역할은 종료되었음. 왜냐하면 Task Force의 역할이 금번 총회에 상정하는 Working Paper의 작성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과 호주가 주도하여 Working Paper를 작성하였음. 이렇게 작성된 Working Paper 는 일본 등 다른 Task Force 에(총회 1개월전) 사전 회람되어 추가적인 의견을 요청하였음. 인도만이 추가 의견을 제시하였다. Task Force 로부터의 어떠한 특별 의견이 없었으므로 이를 총회에 상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Task Force의 임무는 Working Paper의 총회상정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음. 앞으로의 문제는 새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가 맡아 하게 될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금번 총회에서 제기된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는 일, 사무소장 선출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는 일, 법적 준비 사항을 자문하는 일을 맡아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한국의 설명에 대하여 IAEA의 RCA Office 는 한국의 주장을 7개국 Task Force 에게 회람하여 의견을 구하였음. 방글라데쉬와 필리핀이 즉시 회신하였다. 한국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견해였음. 또한 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필리핀은 호주의 Wisdom을 지원 받을 필요가 충분히 있으므로 호주를 포함할 것을 주장하였다.

#### 카. 30차 총회 이후 한국정부의 활동

한국정부는 2002년 3월 한국에서의 RCA 24차 국가대표자 회의 및 30주년 기념 행사와 연계하여 지역사무소 오픈을 갖는다는 계획이며 아울러 2002년 3월부터 2004년 4월까지 2년 동안 임시운영기간을 두어 그 기간 중에 모든 법적 준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작성하였다. 이 계획서는 제30차 RCA 총회이후인 2001년 12월 과기부 원자력협력과가 작성한 것이다.



여 백

## RCA 사무소 설치 추진계획(안)

### < 기본방향 >

- 2001.9 제30차 RCA 정기총회시, 2002 상반기 한국에 사무소를 설치하  
되, 2년간은 한국주도로 시범 운영기로 결정
- 2001.12~2002.4간 사무소 개소 및 시범운영 위한 기반 마련
- 시범운영기간 동안 국제법적 근거를 가진 공식 국제기구화 추진

### 1. 추진경위

- 2000.3 제22차 국가대표자회의 (인도 뭄바이)시, 한국은 RCA<sup>1)</sup> 사무소 유치의  
사 표명
- 2001.3 제23차 RCA 국가대표자회의(방글라데시 다카)시, 한국에 사무소를 설  
치키로 합의
- 2001.9 제30차 RCA 정기총회(오스트리아 비엔나)시, 2002 상반기에 한국에  
사무소를 설치키로 합의 (2년간 시범운영)
- 2002.4 제24차 RCA국가대표자 회의(서울)시 사무소 개소식 개최  
※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참석 추진중

### 2. RCA 사무소 설치 계획

#### 가. 「아태원자력협력협정(RCA)사무소」 설립

- 시범운영기간(2년) 동안 원자력연구소에 설치
  -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직·인사·회계등에서 독립성 부여
- 시범운영기간 이후는 RCA협정의 개정(사무소 설치 근거규정: 약 2년 소요) 등  
을 통해 국제법인격 가진 국제기구화 추진

#### 나. 사무소 직원 선출 및 채용

- 채용대상 직원(4명): 사무소장, 프로젝트담당관, 행정담당관, 비서
- 선발 및 채용절차
  - 공모등 필요 절차를 거쳐 과기부와 협의하여 선발
  - 우선 2년 기간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개인별 성과 감안하여 재계약
- 자격요건

1) RCA: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i) 사무소장 (IAEA P-5급)

- 원자력협력 경험이 있고, 영어가 능숙한 자
- 사무소 개소준비, RCA 회원국과의 업무협조, 과기부와의 업무연계 능력 보유자

ii) 프로젝트 담당관 (IAEA P-3급)

- RCA Coordinator 및 회원국 National Representatives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
- RCA사업에 필요한 자원 확보 및 국제 원자력 협력(특히 RI 이용관련)에 관한 경험 및 식견을 소유한 자

iii) 행정담당 (IAEA P-2급)

- 예산 집행, 물품 관리, 국내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국제협력분야 행정 업무 유경험자

iv) 비서

- 영어에 능통하고 전산처리에 능숙한 여성 전문가
- ※ 장기적으로 RCA Homepage 운영 가능자

○ 급여 수준 (의료보험, 연금, 가족수당 등 제경비·수당 포함)

(단위: 백만원)

	급여수준	예산계획 내역
사무소장	P-5	130 (\$100,000)
프로젝트담당관	P-3	78 (\$60,000)
행정담당관	P-2	52 (\$40,000)
비서	출연(연) 선임연구원급	32.5 (\$25,000)

※ 구체적 급여액수는 추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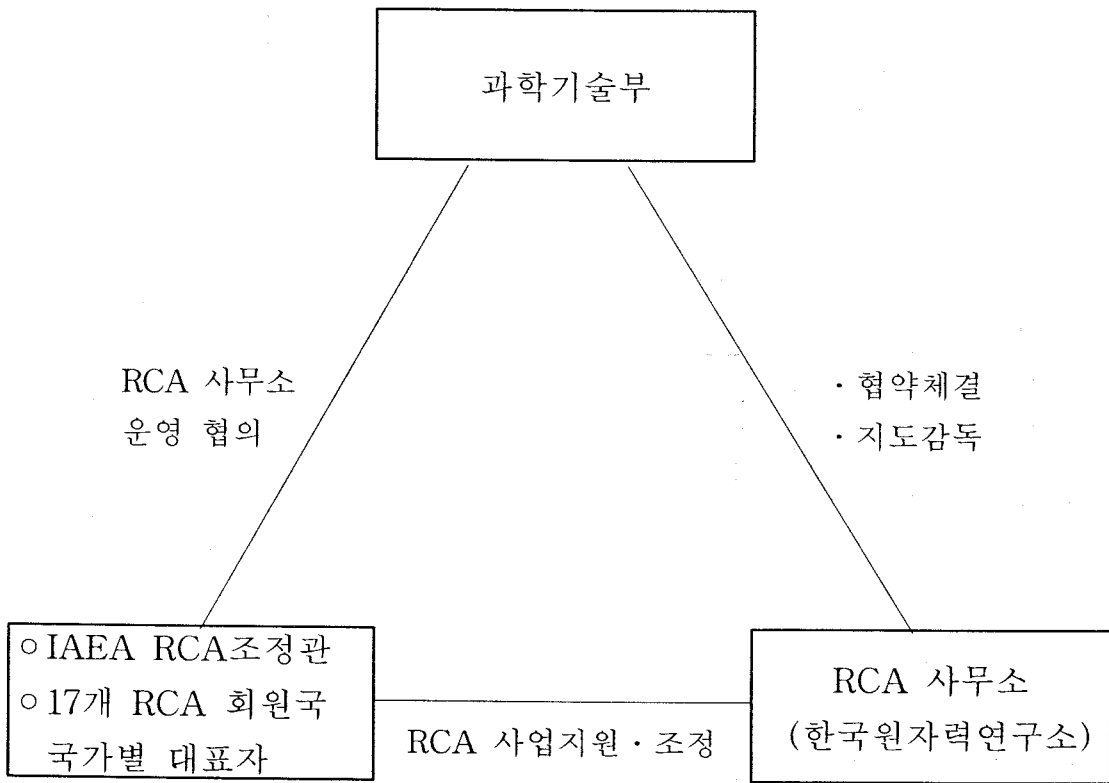
다. 사무실 설치

- 소재지: 대전 원자력(연)내 신설되는 국제훈련연수원
  - RCA사업 주요 수행기관과 근접하여 사업지원 및 활동평가 용이
  - 사무실임대 비용 절감
- 시범운영기간 이후 서울이전 방안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 일정

구 분 \ 시 기	2001.12			2002.1			2002.2			2002.3			2002.4		
	초	중	말	초	중	말	초	중	말	초	중	말	초	중	말
○추진계획 확정		—													
○RCA사무소 설치기반 마련			—												
○과기부/원자력(연) 간 협약체결				—											
○사무실 설치					—										
○직원선출 및 채용 -직원선출 -채용계약 체결					—			—							
○사무소 운영								—	—	—	—	—	—	—	—
○사무소 개소식															—

추진 체계



### 제3절 RCA 지역사무소 관련 사항 추진 일정

- 30차 총회 이후 지역사무소 설치 사항은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후속 조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다음은 지역사무소 개소 준비 팀이 작성한 앞으로의 추진 계획이다.

#### 1) 2001. 10월 초: 30차 총회 후속 조치 검토

- (1) 자문위 구성 (4개국, 또는 호주 포함 5개국인지를 결정. RCA Coordinator 및 인도, 방글라데쉬와 연락하여 확정)
- (2) 사무소장 경비 부담 원칙 결정 (중전의 출신국 부담 원칙을 고수할 것인지, 또는 인도등의 주장대로 한국이 Package 로서 부담할 것인지를 과기부 차원에서 결정한 후 이를 자문위에 상정하여 확정)
- (3) 사무소장 응모 자격 확정 (응모 자격을 RCA 회원국에 국한 할 것인지, 또는 호주의 견해대로 다른 국제기구 인사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자문위에 재상정하여 확정)
- (4) 잠정 운영기간 확정 (총회에서는 사무소 설치, 운영에 따른 모든 법적 준비가 완료되고 또한 사무소장 경비 부담에 대한 원칙이 확정되며 아울러 사무소장이 선임될때까지 사무소를 한국 주도아래 잠정 운영하되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자고 논의한바 있음. 이 사항을 자문위에 상정하여 확정해야 할 것임)
- (5) 새로운 사업계획서의 작성 (2001년 3월 다카회의에서 결정한대로 7개국 Task Force Group이 Working Paper를 작성하였으나 금번 30차 총회에서 주요 사항들이 새롭게 논란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를 자문위가 주도하여 작성하되 내년 3월 이전에 전체 회원국의 합의를 받도록 해야 할 것임)

#### 2) 2001. 12월 말까지: 법적 사항 준비

- (1) 한국 정부 내에서의 지역사무소 설치 운영에 대한 관계부처 합의서, 또는 과기부 장관 고시등 필요한 법률적 조치 필요
- (2) Host Country인 한국정부와 IAEA간의 RCA 지역사무소 설치, 운영에 대한 이해각서 체결 (한국정부를 대표하여 과기부 장관, IAEA를 대표하여 사무총장이 MOU를 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이 경우 MOU 내용에 대한 IAEA 법률 부서의 검토를 받는 것이 관례임)
- (3) Host Country인 한국정부와 전체 RCA 회원국 대표간의 지역사무소 설치, 운영에 대한 약정서 체결 필요 (각국의 National Representative 가 공동 서명하는 약정서로서 사업계획서 내용을 대체로 반영하게 됨)

3) 2002년 3월 초 까지: 사무소 개설 준비 완료

- (1) 사무실 임대 (서울, 또는 대전)
- (2) 지원인력 충원 (사업담당관, 행정담당관, 비서)
- (3) 사무집기등 완비 (통신, 문구등)
- (4) 사무소를 소개하는 안내 책자(영문)등 발간
- (5) 사무소 운영 기본 규정등 완비 (직원 급여규정, 복무규정등)

4) 2002년 3월 하순: 사무소 오픈

- (1) 행사 준비
- (2) 행사 일정
- (3) 홍보 활동

※ 국내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과기부 주관): 국내 IAEA/RCA 업무에 조예가 있는 인사 및 과기부, 외통부 등 관계 부처 담당관으로 구성하여 주요 정책 사항 협의

※ 국내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과기부 주관): 관련기관 실무책임자로 구성하여 사무소 설치 및 오픈 행사에 대한 사항 협의 결정

- 실제로 과기부는 지역사무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내적으로 지역사무소의 운영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운영위원회 첫 모임은 2002년 3월 11일 과기부에서 열렸다. 3월 27일 개소식을 앞두고 모인 의미있는 회합이었다. 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아·태지역협력협정 사무소 설치계획' (안)이 보고되었다.

-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조청원 과기부 원자력국장, 위원: RCA 지역사무소장, 원자력협력과장 (당시 편경범 과장, 현재 김창우 과장), 농업분야 오대근 농촌진흥청 국제협력담당관, 의학분야 이수용 원자력병원 부원장, 연구로분야 국일현 원자력연구소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설립추진단장, 안전분야 이재훈 원자력안전기술원 기획부장, 방사성폐기물분야 문명국 한수원 발전처장, 학술분야 유장걸 제주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 제4절 RCA 지역사무소 현안업무 추진계획

지역사무소 개소식을 앞두고 준비팀은 과기부 원자력협력과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현안 업무 추진계획을 작성하고 이의 실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현안 사항	추진 계획	비 고
1	지역사무소 사업계획서 작성(Working Pap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 또는 7월 중 자문위원회 (Ad. Com.) 회의 개최 (한국에서 개최 추진) - 자문위에서 사업계획서 최종안 도출. 이를 7월말 이전까지 전체 회원국에게 회람하여 최종 견해 촉구. 이의 없으면 8월 초 IAEA/RCA Office 에 송부하여 총회안건으로 상정 준비토록 요청.</li> <li>- 9월 18일 31차 총회에서 (비엔나) 사업계획서 (Working Paper) 의 최종 채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문위원회 (한국, 인도, 방글라데쉬, 호주, 중국의 5개국) 및 RCA 조정관 (Aleta)</li> <li>- 자문위 개최 일정은 IAEA와 협의후 확정</li> <li>- 자문위 참석자중 일부 (인도, 방글라데쉬, 중국)는 지역사무소에서 예비 지원 검토 (호주 및 IAEA는 자체부담)</li> </ul>
2	사무소장 선출 지침 확정 (Guidel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 또는 7월의 자문위원회에서 지침(안) 확정</li> <li>- 9월 31차 총회에서 채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무소에서 지침안 작성후 자문위에서 협의</li> </ul>
3	RCA 부속협정서(안) 작성 (Supplementary Agreement to R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무소 사업계획서를 기본으로 하여 RCA 부속협정(안) 작성</li> <li>- 2002년 12월 이전까지 IAEA가 전체 회원국 정부에게 부속협정안을 송부하여 승인 (Ratification) 받도록 함</li> <li>- 2003년 3월 25차 국가대표자회의 이전까지 각국 승인 완료토록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속협정의 승인은 전체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통보 및 IAEA에 대한 기탁으로 효력을 발생함 (12개국이상).</li> </ul>
4	한·IAEA 양해각서 작성 (MO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월 31차 총회에서 사업계획서 최종 채택과 함께 RCA 지역사무소 운영 및 역할등에 대한 한국 정부와 IAEA간의 양해각서 (MOU) 체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항 및 IAEA의 역할을 규정하는 양해각서</li> </ul>



5	한국정부와 사무소장 파견국 간의 양해각서 작성 (MO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CA 지역 사무소장으로 한국 이외의 회원국 출신이 선출될 경우, 한국 정부의 동 사무소장에 대한 활동 지원내용을 규정하는 양해각서 (MO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무소의 잠정운영기간 이후에 신임 사무소장이 선출될 것이므로 동 양해각서는 2004년 3월 이후 체결될것임.</li> </ul>
6	자문위 (Ad. Com.) 운영 규정 제정 (Regul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문위의 임무, 권한, 운영기간, 의사결정 방법, 의장선출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을 6월 또는 7월 개최 예정의 운영위 이전까지 안 작성하여 운영위에서 채택되도록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정운영기간 이후의 자문위 운영에 대한 사항도 고려되어야 할것임.</li> </ul>
7	한국의 IAEA EB 기여 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CA 지역사무소 운영, 관리에 따른 한국 정부의 재정기여를 한국의 IAEA에 대한 EB 기여로 인정받도록 하는 사항</li> <li>- 지역사무소 주도의 신규사업 (예: RCA Post-doc OJP 사업 수행)에 대한 한국정부의 재정지원을 한국의 IAEA에 대한 EB (또는 Special Fund Contribution)로 인정받도록 하는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중 IAEA와 지역사무소간의 업무협의를 검토되어야 할것임. 비엔나 주재 한국대표부의 협조 필요. IAEA 법률 검토 필요. (6월 중 지역사무소장 외 1인이 IAEA방문하여 TC 부서 관계관과 지역사무소 운영등에 대한 사전 업무협의 계획) (2002년 8월 예정의 비엔나에서의 Mission Briefing에서 지역사무소 운영계획에 대한 사항의 설명-과학관)</li> </ul>
8	지역기구, 국제기구와의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NCA 사업과의 보완적 협력 모색</li> <li>- RCA/AFRA/ARCAL 3자 회의에서의 TCDC 사항 도출</li> <li>- UNICEF, UNESCAP, UNDP 사업에 RCA가 참여 및 기여할수 있는지를 모색</li> <li>- APEC과의 협력 방안 모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DP 한국사무소와 황해사업에 RCA 참여 가능성 여부를 검토후 통보키로 함</li> <li>- UNESCAP 5월 방콕회의 대비</li> <li>- APEC 산업과학기술분과에의 참여 방안 모색</li> </ul>
9	RCA 향후사업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CA 사업 평가 방안 모색</li> <li>- RCA Ownership 및 Partnership 강화 방안 강구</li> <li>- 21세기 RCA 비전 보고서 검토</li> <li>- RCA 회원국간의 과학자 상호 방문 계획 검토</li> <li>- RCA에서 CRP의 필요성 및 추진 방안 검토</li> <li>- LC의 의무에 대한 규정 검토</li> <li>- CDM에 대한 RCA 로서의 대책 모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무소기 전문가 그룹에 용역을 주어 검토한후 보고서 제출하는 방향으로 추진</li> </ul>

10	RCA 지역사무소 홍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CA 지역사무소 소개용 Brochure 발간</li> <li>- IAEA 45차 총회 기간중 한·IAEA기술 전시회에 RCA 지역사무소 활동 소개</li> <li>- RCA 지역사무소 자체 Home Page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rochure 7월 이전 발간 (국, 영문)</li> <li>- KAERI 수행의 한·IAEA 기술협력 전시회에 RCA 지역사무소 내용 Input</li> <li>- RCA Home Page 구축 용역 예정</li> </ul>
11	RCA 지역사무소 Staff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 Fellowship 활용 방안 강구</li> <li>- 회원국으로부터의 CFE 또는 CFC 활용 방안 강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와의 6월 협의회에서 Fellowship 활용방안 협의 예정</li> </ul>

## 제5절 RCA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기여 관련 사항

이상의 준비 사항중 특히 한국정부의 RCA 지역사무소를 위한 경비 지원을 한국정부의 IAEA에 대한 특별 기여금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문제는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을 IAEA 측과 의견 교환을 하여 가능성을 타진하여 보았다.

### 1) IAEA에 대한 한국 정부의 특별 기여금 (EB Contribution)으로 제공

- (단점) 한국 부담금액을 IAEA 계좌에 입금한 후 되돌려 받는 형식이 되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비엔나 한국 대표부가 계정 관장), 이 과정에서 한울차가 생길 수 있으며 사후 정산 및 보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예상됨
- (장점) 한국 정부의 IAEA에 대한 EB 기여액이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대외적으로 우리의 위상이 높아질 것임
- (문제점) IAEA가 이를 받아들여 EB 기여로 승인할 것인가가 관건

### 2) IAEA 사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In-kind Contribution으로 간주

- (단점) In-kind 기여에 대한 상한선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별도의 기여로 간주해야 할 것임. 또한 In-kind 기여는 IAEA 이사회 등에서 보고되는 바 없으며 대외적으로 크게 내세울 바가 되지 못하므로 상대적으로 한국의 입장 제고가 어려움
- (장점) IAEA 에 대한 기여로 간주되어 기록에 남길 수 있으며 반면 한국정부 임의로 예산 집행할 수 있음
- (문제점) 다른 나라들도 어떠한 형태의 것이든 (예: RRU등) 기여하는 바가 있으면 모두 In-Kind 기여로 간주코자 할 수 있음.

- 3) IAEA TCDC 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CFO (Cost Free Office)로 계산
- (단점) 지역사무소가 IDEA와 연계되어 있어야 하므로 회원국을 대표하는 사무소라는 개념이 희박해 질 수 있음
  - (장점) IAEA와의 연계 강화. 한국정부의 Cost Free 기여 인정.
  - (문제점) IAEA가 지역사무소를 CFO 라는 개념으로 간주할지가 의문. 또한 지역사무소 직원들을 CFE 로 간주해야 하는 문제도 뒤따름.

4) 한국정부 단독의 기여로만 인정

- (단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IAEA 로부터 인정 받을 수 없음
- (장점) 한국정부 단독의 기여로 만족
- (문제점) 정부 예산부처에의 설득력 부족

### 제6절 RCA 지역사무소 관련 예상쟁점별 대응입장

그러나 지역사무소으로서는 2002년 3월 한국에서 열리는 24차 국가대표자 회의에서 지역사무소 운영사항이 또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강구하였다.

**1) 사무소장의 월급 및 수당 등을 출신국에 관계없이 한국이 부담**

- 한국은 지원인력 3명의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사무기기·용품 구입비, 자동차구입·운영비 등으로 연간 30만달러 정도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추가 비용 확보는 어려움
- 사무소장 월급 및 비용을 위한 별도의 재원 (IAEA 부담, 회원국들의 분담 등)이 확보될 때까지는 원안대로 출신국가에서 부담

**2) 사무소장의 특권·면책 확보 방안**

- RCA 지역사무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고 특권·면책에 관한 협정이 있어야 하나 사무소장 1인을 위해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어려움이 예상됨
- IAEA 직원으로 인정된 경우 “국제원자력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IAEA)”에 따라 면책과 특권을 누릴 수 있으므로 IAEA에서 직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사무소장과 RCA 조정관간의 역할분담 등**

- 2001년 3월 다카회의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Working Paper를 작성하였음
- 현 상태에서 우선 시범 운영을 하면서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은 회원국

들의 합의에 따라 보완 또는 개선될 수 있음

#### 4) RCA 지역사무소의 초기 운영

- 소장이 선출되기 이전까지는 한국 정부가 소장대리를 지정하여 지역사무소의 정상운영에 필요한 준비 및 지역사무소의 기능을 시범적으로 수행
- 지역사무소의 위치는 서울로 하되, 시범운영 기간중에는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소 내에 두고, 절약된 경비는 사무실에 필요한 사무기기 구입비 등으로 사용

#### 5) 한국부담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및 지원인력 보수 등의 지급방법

- “특별기여금” 형태로 RCA 지역사무소에 직접 지원하거나 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 제7절 IAEA/RCA Coordinator 및 호주등 회원국 대표가 고려한 지역사무소장의 역할

- 지역사무소장의 역할에 대하여 RCA Coordinator 와 호주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이는 앞으로 지역사무소 사업계획서 작성 및 운영에 참고가 될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들이 제시한 지역사무소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이로써 지역사무소장의 역할에 대한 IAEA와 회원국의 기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

1) 지역사무소장은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RCA 회원국의 이익을 증진하며  
Promotes the interest of RCA MSs before regional and/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2) 지역사무소장은 회원국이 추진토록 되어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회원국을 대표하고 프로젝트 목적과 성과가 전반적인 사업 계획 및 예산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며

Represents the MSs for implementing the project assigned to it and assuring that the Project objectives and outputs are met within the overall plan and budget

3) 지역사무소장은 RCA 조정관과 협의하여 전반적 사업 계획서 내에 설정되어 있는 목적, 기획, 예산 범위 내에서 기 확정된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당해 년도 사업 계획을 작성하며

In consultation with the RCA Coordinator, drafts the annual work plans for the assigned project or project activities within the objectives, plan and

budget established in the Project document

- 4) 지역사무소장은 각국의 국가 프로젝트 수행 담당자 또는 그 국가의 관련 당국과 협의하여 기 확정된 사업의 추진 일정 및 착수 계획을 주도하며

Initiates preparations and establishes timetables for the project activities as defined in the work plan in consultation with the appropriate national project counterparts and other national authorities

- 5) 지역사무소장은 지역내 국제기구등의 정책 결정자, 고위 관리층, 담당자 등과 계속적으로 또한 효과적으로 접촉하여 해당국에서 RCA 사업이 성공하므로써 경제 사회적 혜택이 높아진다는 가능성을 확인해주며

Maintains continuous and effective interfaces with executives, policy-makers and management personnel from organizations within the region to assure highest probability for project success and regional economic and social gains

- 6) 지역사무소장은 각국 관계 부처, 사업 주도국가 사업 책임자, 프로젝트 담당자 등과 RCA 사업 관련, 연락하며

Liaises with national authorities, lead country coordinators and project counterparts

- 7) 지역사무소장은 IAEA, RCA 국가 사업책임자, 기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이 계획된 대로 추진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Facilitates required reviews and assessments of progress as established in the project plan involving national counterparts, IAEA and other concerned organizations

- 8) 지역사무소장은 필요한 보고서를 회원국에게 제출하며 연차보고서, 총회 보고서, 다른 그룹회의 보고서 등 RCA 관련 문서 준비에 필요한 수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Submits required reports and provides other inputs in the preparation of RCA documents such as the annual reports, general conference reports, advisory group meeting reports, and others.

※ 국내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과기부 주관)

국내 IAEA/RCA 업무에 조예가 있는 인사 및 과기부, 외통부등 관계 부처 담

당관으로 구성하여 주요 정책 사항 협의

※ 국내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과기부 주관)

관련기관 실무책임자로 구성하여 사무소 설치 및 오픈 행사에 대한 사항 협의 결정

## 제8절 2002년 3월 24차 RCA 국가대표자회의에서 논의

2002년 3월 25-29일 한국에서 열린 제24차 RCA 국가대표자 회의는 17개 전체 회원국 및 FNCA 대표등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이 회의에서 RCA 지역사무소 사항이 다시 한번 논의되었다. 국가대표자회의 기간 중인 3월 27일 RCA 지역사무소가 문을 열게 되었으므로 전체 회원국 대표들은 더 이상 지역사무소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논란을 펼 의미가 없었다. 다만, 아직도 사업계획서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자는 기미였다. 과거 뭄바이 회의 이후 4자 소그룹이 구성되어 검토하였고 그 후 7개국 Task Force Group 이 구성되어 검토하였으나 아직도 완성을 보지 못한 입장이다.

따라서 금번 24차 국가대표자 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금 지역사무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3개 의장국인 인도, 방글라데쉬, 한국, 그리고 호주와 중국을 합하여 5개국으로 구성하였으며 IAEA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RCA Coordinator를 위촉하였다. 자문위원회는 7월 말, IAEA에서 열린 LCC 회의와 연계하여 회합하였다. 이 회의에서 사업계획서를 최종 완성하였고 자문위원회 운영 기준, 사무소장 선출 기준, 사무소장 선출위원회 운영 기준등 3개의 기준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첫 자문위원회에 중국이 참여하지 못하였으므로 31차 총회 직전에 다시 한번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서 (Working Paper)등을 최종 확인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31차 총회 직전일인 9월 17일 회합을 가질 수 있었다. 자문위원회 개최 내용은 총회 내용에 연결하여 기술하였다.

## 제9절 IAEA-TC 와의 사전 업무 협의 사항

지역사무소측은 31차 총회에서 지역사무소 문제가 확실히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아래 사전에 IAEA측과 사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2002년 6월 23일 지역사무소를 대표하여 사업담당 정준극이 IAEA를 방문, IAEA 기술협력 부서의 김병구 국장, Razley 과장, Aleta 조정관, 그리고 Bishoff등 관계관을 만나 업무 협의를 하였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 1) 사업계획서 (Working Paper)

- 자문위원회 개최 계획 및 사업계획서 확정후 조치사항: 자문위원회 (호주, 중국, 방글라데쉬, 인도, 한국의 5개국 및 RCA 조정관)

- 1) 7월 8-9일 대전 개최 3회 통보 (방글라데쉬 참석 가능 통보, 인도 불가능, 호주 및 중국은 회신 없음) - 참가경비 지원용의 표명 (지역사무소)
- 2) 자문위에서 제24차 국가대표자 회의 권고사항 참조하여 사업계획서 확정 후 8월 10일 이전까지 전체 회원국에게 보완된 사업계획서 회람.
- 3) 8월 15일 이전까지 전체 회원국으로부터의 최종 코멘트 취합. 특별한 코멘트가 추가로 제기되면 이를 재차 자문위원에게 회람하여 최종 코멘트 반영 여부 확인.
- 4) 자문위원회의 최종 의견을 존중하여 8월 17일 까지 IAEA/RCA와 협의후 9월 17일의 제31차 RCA 총회 안건으로 상정
- 5) 9월 15-16일의 의장국 사전회의 (비엔나)에서 총회 안건으로서의 사업계획서 최종 점검
- 6) 9월 17일 제31차 RCA 총회에서 사업계획서 최종 채택 및 후속 조치 합의

※ 제30차 RCA 총회 결정 사항: 한국에 RCA 지역사무소 설치를 원칙적으로 합의하며 사업계획서는 7개국 Task Force Group 이 30차 총회에서의 각회원국 견해를 반영하여 재 작성후 24차 국가대표자회의에 상정할 것.

- 이를 위하여 한국은 호주, 일본, 인도등 Task Force Group과의 협의를 마친후 2001년 12월 20일 전체 회원국에 수정된 사업계획서 송부하고 (IAEA/RCA Office 에서도 동시에 송부) 의견 요청. 그러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 따라서 IAEA/RCA Office는 2002년 3월 한국에서의 24차 국가대표자 회의에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상정. 그러나 아직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통합되지 못한 상황임.

※ 제24차 국가대표자회의 결정사항: 5개국 자문위원회 및 RCA 조정관으로 하여금 최종 사업계획서 확정하여 32차 총회에 재 상정하여 확인 (Confirm) 토록함.

## 2) 지역사무소 운영에 따는 현안사항

- (1) 사무소장의 인건비를 UN의 P-5 기준으로 하여 출신국이 부담토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3의 재원을 확보토록 함. 한국 정부가 지역 사무소 운영비 지원과 함께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바람직함.

- (2) 한국인이 사무소장으로 선임될 경우, 인건비는 한국 정부가 정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제공한다고 되어 있음 (자격은 원자력 연구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책임급 Generalist 이며 대우는 원자력연구소의 경우 부소장 수준). 한국인이 사무소장으로 선출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기 확보한 사무소장 인건비를 다른 회원국 출신 사무소장에게 적용하는 방안도 요망됨.
- (3) 사무소장의 문호를 회원국 인사로 한정할 것인지, 국제기구의 경험있는 인사까지로 확대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하였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사비용, 정착비용, 자녀학자금, 퇴직 적립금, 의료보험금 등 제반 복리후생비의 부담자가 명확히 결정되어야 할 것임.
- (4) 사무소장에게 IAEA직원과 마찬가지로의 외교적 면책특권을 줄 수 있는지의 여부. 그렇지 못할 경우, 업무상 회원국 출장 방문시 어떠한 제약도 있을 수 없다는 보장 방법이 있어야 함. 한국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면 이 경우 급여의 소득세등 추가 부담에 따른 지원 방안이 결정되어야 할 것임.
- (5) 사무소 직원으로서 회원국의 요원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이 경우, 인건비등 제반 경비의 부담에 대한 원칙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IAEA의 훈련생을 수용할 경우, IAEA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함. Fellowship 뿐만 아니라 CFE 또는 CFC의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도 검토하여 줄 것을 요망.
- (6) 초대 사무소장은 한국 이외의 회원국 인사가 말도록 함이 바람직함 (일본 주장). 사무소장의 자격 요건을 정확히 제정하여 이에 합당한 인사를 선발해야 할 것임 (호주 등의 주장).
- (7) 사무소장과 RCA 조정관의 업무가 보다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임. 사무소장이 진행중인 과제, 신규 과제의 수립, 과제 수행의 평가 등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임 (일본 등의 주장).
- (8) 잠정 운영기간 2년 동안에 지역사무소의 법적 조치 사항이 완성되지 못할 경우, 자격 있는 사무소장의 인선을 하지 못할 경우, 사무소장 인건비에 대한 부담원칙이 확정되지 못할 경우등 사무소 운영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경우, 잠정 운영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바람직한. 이 사항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는 방안 (인도의 주장).



**3) 지역사무소의 법적 조치사항에 따른 현안 사항:** 9월 비엔나에서의 31차 총회에서 지역사무소 설치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최종 채택되면 이를 근거로 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해야 함.

(1) RCA 협정의 부속협정 체결: 한국이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하여 RCA 부속협정안을 초안. 이를 자문위원회가 검토한 후 2003년 3월 파키스탄에서의 25차 국가대표자회의 최소 1개월 이전에 각 회원국에 회람하여 의견 취합과 동시에 각국 국가대표자로부터의 콘센서스를 문서 (Email 포함)로 접수. 부속협정 채택은 공식적으로 25차 국가대표자 회의에서 최종 확정.

(2) 한국정부와 IAEA간의 MOU 체결: 지역사무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정부와 IAEA간에 각각의 책무를 명시하는 MOU를 체결. 한국정부와 IAEA가 지역사무소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 지역내 원자력기술의 발전과 증대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 이 같은 MOU 초안을 8월 말 까지 작성하여 9월 IAEA 총회시 과기부 장관과 IAEA사무총장간에 서명함.

(3) 한국정부와 지역사무소장 출신국간의 상호 협조에 대한 MOU 체결: 한국 이외의 회원국 출신이 사무소장으로 선임되었을 경우, 해당 출신국과 한국정부간의 상호 협조에 대한 MOU 체결. 사무소장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활동할 때의 지원사항, 출신국의 책임등을 명시. 이는 초대 사무소장이 선출된 이후 작성되어 체결토록 하며 한국정부를 대표하여 한국의 RCA 국가대표가, 출신국정부를 대표하여 출신국 RCA 국가대표가 서명함.

**4) 지역사무소 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른 현안:** 자문위원회의 운영 및 책무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기준을 작성하여 자문위원회의 합의를 얻어야 함.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준 (Terms and References)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1) 임기: 잠정운영기간 까지를 임기로 할 것인지 그 이후에도 지역사무소 운영을 자문하는 입장에서 계속 위원회로 존속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임.

(2) 구성: 국가대표자로 할 것인지, 개인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임. 의장국 대표의 경우에는 의장을 역임했던 자격으로 참여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위원회 의장은 어떻게 선정할것인지, 위원의 교체 및 대리 참석을 인정할 것인지, 위원회 성원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등을 규정해야 할 것임.

(3) 회의참가경비: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IAEA등의 재정 부담도 모색토록 함

- (4) 위원의 책무: 지역사무소 운영 전반에 따른 자문 활동을 수용할 것인지, 사무소장 업무를 평가하는 임무도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임.
- (5) 보고 채널: 위원회 결정 사항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임. 기본적으로 위원회는 전체 회원국을 대표하는 기구이므로 국가대표자회의에 보고토록 함이 타당할 것임. 보고는 위원장이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5) 사무소장 추천 및 임명에 대한 기준

- 신입 사무소장 직무 기술서 (JD), 사무소장 응모 절차, 사무소장 공모 방침, 사무소장 응모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기준, 사무소장 임명 절차 등에 대한 기준 제정
- 사무소장의 고용 계약 조건 (복리후생 내용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이상의 기준을 7월 중 자문위원회 개최하여 최종안 마련후 8월 15일 이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전체 회원국에게 회람하여 코멘트를 취합토록 하고 이를 9월 31차 총회에 보고하며 다시 의견이 있을 경우, 2003년 3월 파키스탄에서의 25차 국가대표자 회의에서 최종 채택토록 함.

(1) 직무기술서 작성: 지역사무소가 사무소장의 직무기술서 (Job Description) 초안을 작성하여 자문위원회 결정으로 확정. JD에는 사무소장의 자격기준을 정함. 원자력 분야 20년 이상 근무. 영어에 능통해야 하며 국제회의 경험이 풍부해야 함. 방사선 이용분야의 일정분야 Specialist 보다는 Generalist를 대상으로 해야 할 것임. JD의 작성에는 IAEA 직원에 대한 JD를 참고로 하기 위하여 IAEA/RCA Office의 자문을 받도록 함.

(2) 사무소장 응모 절차: 응모 공모를 공고한 후 3개월 이내에 회원국의 국가대표를 통하여 지역사무소가 응모 신청을 접수토록 함. 응모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해당국 국가대표 또는 정부의 관계부처 대표의 추천서, 건강진단서, 영어권 이외 회원국 출신이 응모할 경우 TOEIC 등 영어 성적 증명서, 최종 학교 졸업 증명서 사본, 학위가 있을 경우 학위 증명서 사본을 기본으로 함. 각각의 서류 양식은 지역사무소가 통일하여 배포토록 함. 지역사무소는 응모자 서류를 취합하여 심사위원회에 상정함. 응모자가 10인 이상이면 1차 서류전형으로 5인 이내의 Short-list를 작성함. 지역사무소는 응모 서류를 1차 서류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에게 송부하여 일정 기간후 결과 통보토록 함. 응

모공고, 응모 접수, 응모자 심사등의 절차는 자문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며 이에 대한 초안은 지역사무소가 작성토록 함. 이상의 절차는 응모자가 회원국 출신에 국한할 경우이며 만일 국제기구등에 문호를 개방할 경우, 절차 및 구비서류의 변경이 필요함 (예를 들어 국가대표 및 관계부처 대표의 추천서 대신 소속 국제기구 대표의 추천서를 필요로함).

- (3) 사무소장 공모 절차: 지역사무소가 각 회원국 국가대표에게 공모 서한을 발송함 (응모자격을 회원국 출신으로 한정할 경우). 한편, IAEA는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IAEA Bulletin, IAEA Newsletter 등을 통하여 응모 공고 (Vacancy Notice)를 하도록 함. 지역사무소는 다른 매체를 통하여도 사무소장 응모 공고를 하도록 함. 공고후 응모까지의 기간은 3개월로 하되 자문위원회의 합의로서 결정토록 함.
- (4) 심사위 구성 및 심사 기준 작성: 지역사무소가 심사위원회 구성안 및 심사기준을 작성한후 자문위원회의 합의를 얻어 확정토록 하고 이를 전체 회원국에게 회람함. 심사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원자력 분야 경륜과 지식이 다대한 지역 인사로 구성함. 심사위원회에는 한국위원이 당연직으로 참석토록 함. 심사기준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을 원칙으로 함. 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후 5인 이내 2인 이상의 최종 후보자를 선발한후 그중 1-2인을 최종 추천하여 국가대표자 회의에 상정함.
- (5) 사무소장 임명 절차: 심사위원회가 추천한 1-2인의 최종 후보자를 국가대표자 회의에서 최종 선임토록 함. 단일 후보의 경우, 국가대표자 회의에서 회원국 국가 대표들이 가부를 결정하되 결정방법은 국가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함. 1인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되었을 경우, 국가대표자 회의에서 결정 방법을 정하여 이에 따라 결정토록 함. 최종 확정된 신임 사무소장은 선임후 1개월 이내에 사무소로 부임토록 함.
- (6) 사무소장 고용 조건: 자문위원회에서 구체적 사항을 결정함.

## 제10절 2002년 9월 31차 RCA 총회에서의 논의

- 2002년 9월 18일 비엔나에서 열린 제31차 RCA 총회에서 RCA 지역사무소 안건과 관련, RCA Coordinator가 RCA 지역사무소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RCA 지역사무소 측이 지역사무소 설치후의 진전 사항 및 앞으로의 절차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의장인 한국원자력연구소 장인순 소장은 지역사무소 설치가 RCA 30년 연혁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주는 중요하고 역사적인 사건임을 상기하고 지역사무소는 명실공히 전체 회원국의 대표하는 기구이므로 전체 회원국은 지역사무소의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장은 지역사무소가 이미 공식 오프닝하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중임을 상기하고 다만 법적 조치를 위해 2년간의 잠정운영기간을 설정하였던 것이므로 이 기간 안에 필요한 법적 준비가 완비되고 새로운 사무소장 선출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전체 회원국이 위촉한 자문위원회가 계속 수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Aleta 박사는 지난 3월 RCA 한국에서의 국가대표자 회의에서 지역사무소 사업 계획서 완성등 자문활동을 할 6명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7월 말 Vienna에서의 LC 회의와 연계하여 첫 자문위원회가 개최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의장은 이어 지역사무소를 대표하여 참석한 김진경 국장을 소개하였다. 김진경 국장은 지역사무소의 오프닝 이후 Post-doc Fellowship 연수 및 석사과정등 한두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내 원자력과학지식보존 노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많은 회원국들이 이 사업들을 환영하였음에 대하여 감사하였다.
- 이어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방글라데쉬의 Choudhury교수에게 위원장으로서 자문위 개최 내용을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자문위 위원장은 첫 자문위원회의가 7월말 Vienna에서 개최되었음을 설명하고 이 회의에서 Working Paper를 비롯하여 자문위 운영지침, 사무소장 선정위 운영지침, 사무소장 선정 임명 지침등을 채택하였고 사무소장 임용계약서, 사무소장 공모안 (직무기술서 포함)은 앞으로 구성되는 선정위원회가 맡아 할 것이라는 설명을 하였다. 그는 또한 금번 총회 바로 직전에도 자문위원회가 열려 다시 한번 Working Paper 내용을 확인하였음을 설명하였다.

## 제11절 지역사무소 자문위원회 회의보고

※ 지난 7월 31일-8월 2일 IAEA 회의실에서 열렸던 제1차 자문위원회에는 6명 자문위원중 5명이 참석하였다. 지난 3월 한국에서의 24차 국가대표자회의에서 선임한 6명의 자문위원은 방글라데쉬, 인도, 한국 (이상 의장국)의 3개국과 호주 (지역사무소 사업계획서 작성의 주도국가), 여타 회원국 대표로서 중국 이상 5개국이었으며 여기에 IAEA/RCA Coordinator를 포함하여 6명이었다. 첫 자문위원회 참석자는 호주 (John Easey), 방글라데쉬 (Naiyyum Choudhury), 인도 (K. Raghuraman), 한국 (정준극), IAEA/RCA Coordinator (C R Aleta)

의 5명이었으며 중국의 Zhang Jing 은 연락을 늦게 받았다는 이유로 참석치 못하였다. 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하였다. 자문위원회가 채택한 Working Paper 등은 참고로 첨부하였다.

- 사업계획서 (Working Paper) 최종본 검토후 채택
- 자문위원회 운영기준 채택
- 사무소장 선정 기준 채택
- 사무소장 선정위원회 운영기준 채택
- 사무소장 공모안과 사무소장 고용계약 기준 (Terms and Conditions)은 새로 구성되는 사무소장 선정위원회가 작성토록 하였다.

※ 두 번째 자문위원회 회의가 9월 17일 오전 10시 VIC 회의실에서 열렸다. 6명 자문위원 전원 참석하였다. 중국은 Zhang Jing을 대신하여 Zheng Ke Min이 참석하였고 한국은 KAERI 정준극이 참석하였다. 김진경 국장과 Razley 과장은 옵서버로 참석하였다. 이 회의의 주목적은 총회에 상정되는 사업계획서 (Working Paper)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었다.

- 중국은 Working Paper가 전에 비하여 훨씬 Improve 되었음을 언급하고 특히 사무소장의 급여문제 등이 많이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 파키스탄은 아직도 지역사무소장의 역할이 분명치 않음을 말하였음. 예를 들어 지역사무소장이 IAEA TO와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면 RCA 조정관의 역할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지역사무소가 아웃소싱등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TO와 직접 연락할 수도 있으며 중요한 통신 내용은 RCA 조정관에게 Copy를 제공하므로써 정보의 공유와 업무협조를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이 있자 이를 공감하였다.
- 호주는 법적 준비와 관련하여 , Supplementary Agreement, MOU의 내용이 초안되고 검토 작업에 들어갔는지 궁금하다고 문의하였다. 한국은 금번 총회에서 사업계획서가 최종 채택되어야 이를 기본으로 하여 초안이 작성될 것이며 가급적 올해 안으로 검토까지 마무리 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호주는 부속협정이 사실상 반드시 필요한 것만은 아니라는 견해를 다시 한번 피력하였다. 만일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를 한국 정부, 또는 지역사무소가 주도하는 것이라면 법적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 아니겠느냐는 의견이었다. 본 협정 제7조에 의거, IAEA가 행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속협정이 되었던 또는 다른 형식의 문서가 되었던 IAEA가 주도하는 문서가 되어야 대외적인 공신력이 높을 것 아니겠느냐는 의견이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하여 회의에서는 지역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초안 하여 (한국이 호주와 협의하여 초안한 후 이를 전체 회원국에게 회람하기 이전에 자문위원들에게 먼저 공람하도록 함) IAEA가 주도하여 만들어서 다음 국가대표 자회의 또는 총회에서 (그렇지 않으면 어느 때든지 통신으로) RCA 회원국 결정 사항 (Resolution)으로 채택하고 이 내용을 IAEA가 문서로 만들어 (IAEA본회의에서 회원국 결정사항을 IAEA 사무소가 문서로 만들어 발행함과 같은 형태) 회람 (Circulation)함이 오히려 타당하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한국은 이 사항을 한국정부와 협의후 그렇게 하는 것이 한국 정부가 부속협정을 만들어 회원국의 동의를 얻는 것보다 더 타당하다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자문위원회에 통보하여 추진토록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부속협정이 되었던 RCA 총회 결정사항이 되었던 한국으로서 이 문서가 필요한 것은 정부 관련부처 (특히 예산부처)에게 지역사무소 설치 운영에 따른 일종의 전체 회원국 및 IAEA의 약속을 입증(Evidence)하기 위함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므로 실상 총회 RES. 으로부터 IAEA가 문서로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더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문위원들은 Resolution의 내용을 Working Paper를 Reference로 하여 작성함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음. Resolution도 협약과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하자는 내용은 지난번 1차 자문위원회에서는 논의된바 없으며 금번 새롭게 제시된 아이디어였음. 이에 대하여는 IAEA 측도 바람직하다는 견해였다. 부속협정이라는 제목으로 본협정에 첨부하는 문서가 된다면 그것 역시 일부 회원국에서는 내각과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여 언제 완성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작용하였다. 위원회는 부속협정 대신 일단 총회 결정사항으로서 법적 조치를 주도하도록 하고 한국 정부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새롭고 타당한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 【RCA 지역사무소 사업계획서 (Working Paper) 요약】

1. 서언 (RCA 지역사무소 설치안건이 2001년 9월 15일 비엔나에서의 제30차 RCA 총회에서 원칙적 결정되었으며 2002년 3월 25-28일 한국에서의 제24차 RCA 국가대표자 회의에서 자문위원회 (위원: 6명)를 구성, 이 위원회에게 사업 계획서 및 각종 지침을 검토하고 채택하는 업무를 위임하였음. 이에 따라 2002년 7월 31일- 8월 2일 비엔나에서 제1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서 (Working Paper)를 최종 채택하고 이에 부수되는 지침을 완성하였음. 이 사업 계획서는 2002년 9월 18일 비엔나에서의 제31차 RCA 총회에서 최종 보고될 것이며 이로써 지역사무소 설치에 따른 법적 절차를 준비토록 한다는 내용)
  2. 배경 (RCA 설립 25주년을 기하여 RCA 지역사무소 설치, 운영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제기되었으며 2000년 3월 인도에서의 제22차 RCA 국가대표자 회의에서 한국이 지역사무소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을 제안하므로써 현실화되었다는 내용)
  3. 지역사무소 설치의 필요성 (RCA 사업의 회원국에 의한 Ownership 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내용)
  4. 지역사무소장 (Director)의 역할 (RCA 에 대한 대외 인식제고, RCA 사업의 새로운 파트너 모색 등을 규정)
  5. 지역사무소 운영 (조직, 역할, 위치, 사무실, 운영경비 등에 대한 사항)
  6. 사무소장 (사무소장에 대한 대우, 급여 제공 방안, 복리 후생, 특권, 보고 채널, 사업주도국가와의 연계, IAEA/RCA 조정관과의 업무 조정, IAEA 기술담당관과의 업무연계등 사항을 규정)
  7. 기타 사무소 직원 (사업담당관, 행정담당관, 사무원등 지역사무소 직원의 직무에 대한 사항, 고용 및 급여에 대한 사항등을 규정)
  8. 법적 조치 (사무소의 법적 위상 확보를 위해 RCA 부속협정의 체결, 한국정부와 IAEA 간 사무소 지원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등을 규정)
- Legal Back-up measures의 필요성: 한국 정부는 1년에 약 50만불 상당의 예산을 지역사무소 운영비로 지원코자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야할 입장에 있음. 그러나 그만큼 예산을 정부재정에서 지원하려면 어떠한 형태의 것이든

증빙이 있어야 함. 그 증빙은 (Evidence)는 RCA 협정의 Umbrella Agreement, IAEA와의 MOU 등이 될 것임.

9. 경과조치 (사무소의 법적 준비 사항이 완료되며 신임 사무소장 임명 이전까지 2년간의 잠정운영 기간을 가지도록 규정)

#### (회원국들의 코멘트)

- 태국은 Working Paper가 상황에 따라 계속 보완되어야 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지역사무소 설치에 따른 어떤 형태의 협정 또는 MOU는 각 회원국의 외교정책과도 관련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태국은 법적 위상이 문제라고 내세우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법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태국 대표의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RCA와 같은 지역협력협정을 가지는 목적은 첫째, IAEA TC 전략에 따라 IAEA로부터 지역내 회원국에게 원자력에 대한 기술 이전을 효과적으로 증진하는 것, 둘째, TCDC의 첫 단계로서 회원국간에 원자력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개발, 훈련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원(Resources)을 공유하는 것이고 셋째, IAEA 기술협력으로 인하여 얻은 경험을 개도국간에 공유하는 것, 즉 개도국간의 기술이전에 있음.
  - 2) RCA는 기본적으로 IAEA의 테두리 내에서 이와 같은 정신과 목적으로 출범하였음. 이 같은 정신은 협정 내용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음. RCA는 IAEA와 Membership 또는 Partnership 관계로 협력토록 설립되었음. 물론 IAEA는 RCA 사업을 어떠한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도 '소유'(Own)하면 안될 것임. 이와 관련하여 RCA 사업은 IAEA의 국가 사업, 또는 지역간 사업과 같은 선상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임. 이는 회원국 정부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며 (항상 존재하고 있지만) 실수요자 (End-user)에게 필요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또한 가능하다면 기술자립과 계속 유지 발전을 보장하는 것임. IAEA TC 전략 메카니즘을 통하여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른 방안도 고려될 수도 있을 것임. 공통된 목적은 회원국과 파트너가 효과적으로 협력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3) 현재 RCA 회원국들은 모두 IAEA의 책임 있는 회원국이며 파트너임. 대부분 RCA 회원국이 자원에 한계가 있는 개도국이기 때문임. 그러므로 태국을 포함한 대부분 RCA 회원국들은 RCA 지역사무소를 포함한 RCA 활동을 소유할 입



장이 아님.

4) RCA 지역사무소는 IAEA와 연결된 기구로서 존재할 때에 RCA를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음. 이러한 입장에서 IAEA는 지역사무소장의 경비를 포함한 지역사무소 관리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임. 비록 지역사무소를 위하여 RCA 부속 협정이 만들어지고 어떠한 MOU가 체결된다고 해도 이것으로 지역사무소가 IAEA의 법적 관련기구로서 존재하기는 어려움. 그렇게 되면 지역사무소장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협상할 때에 IAEA의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 지역사무소와 사무소장은 일본원자력산업회의 (JAIF) 수준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임. 그렇게 되면 지역사무소의 활동은 FNCA와 같은 성격이 될 수 있을 것임. 지역사무소는 자체 사업 계속 추진을 위해 Host 국가가 필요함. 그러므로 IAEA가 지역사무소 관리에 관련되는 것은 RCA 활동을 현재의 위상과 특성으로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임.

5) 그러므로 태국은 지역사무소가 어떠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더라도 그것이 IAEA와 아무런 연계가 되지 않는다면 부속협정등 어떠한 협정에도 동참할 수 없음.

- 일부 회원국 대표는 Working Paper에 RCA 사업에 대한 회원국의 Ownership 강조 내용이 부족하므로 강화되기를 요망하였다. 지역사무소장이 IAEA의 간판 없이는 대외적 활동을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다.

- 호주는 RCA 지역사무소가 새로 개발한 사업에 대하여 치하하고 (Tremendously Exciting Program이라고 표현하였음) 지역사무소가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Entity로서 인정을 받아 활동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표명하였다. 호주는 RCA에 대한 Financial Funding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하고 새로운 Donor를 모색하는 것이 지역사무소의 중요업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호주는 잠정 운영기간 중 사무소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경험과 교훈을 얻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사무소에 의한 재정지원이 증가하며 IAEA에게 굳이 전적으로 의존할 필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호주의 이 같은 주장은 RCA가 궁극적으로 IAEA로부터 종속관계를 벗어나서 명실공히 지역 독립 기구로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도라고 풀이할 수 있음).

호주는 과거 지역사무소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RCA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을 다른 국제기구로부터 확보하는 것이며 이 같은 견지에서 호주는 지역사무소장 공모에 대한 문호를 회원국에만 한정하지 말고 국제기구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유

능한 인물의 영입을 위해서도 열어 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또한 지역사무소가 한국사무소라는 인식을 벗어나도록 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바 있다. 호주는 호주정부가 RCA를 위하여 1년에 약 150만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도 그 정도 이상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그러나 호주 정부가 언제까지 이러한 지원을 할지는 모르겠으며 분명한 것은 가까운 장래에 지원 규모를 축소할 것이므로 결국 RCA로서는 새로운 재원 모색이 가장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였고 이에 대한 역할을 지역사무소가 해야 할 것이라고 내세웠다.

- 뉴질랜드도 호주의 입장 (Position)과 같음을 표명하고 두가지 사업, 특히 석사 과정을 착수했음은 RCA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이미 지역사무소의 Quality를 보여주었다고 언급하였다. 뉴질랜드는 지역사무소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음을 치하하고 지역사무소의 주요 Function 과 관련한 앞으로의 사업계획 (Work Plan)을 알고 싶다고 언급하였다.
- 인도는 한국 정부의 지역사무소 재정지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표명하고 지역사무소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To enter into designated function) 모든 회원국이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인도는 과거, 지역사무소 설치 운영은 RCA의 앞날을 위해 중대한 것이므로 지역사무소의 역할과 운영을 기획하기 위해 연구조사 용역사업을 수행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한바 있다. 인도는 특히 지역사무소장 인건비와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한국인이 사무소장이 될 경우, 인건비를 한국기준에 의해 부담하겠다고 하는 만큼 기왕에 확보하여 놓은 예산이므로 한국인 이외의 인사가 사무소장이 되는 경우에도 이 기준으로 부담함이 어떻겠느냐는 견해를 주장한바 있다. 즉, Package contribution 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였다.
- 중국도 지역사무소의 노력을 치하하였음. 중국은 과거, 사무소 직원중 적어도 1인이라도 한국인 이외의 인사를 수렴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바 있다. 이 경우,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한국정부와 파견국이 공동 부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는 제안이 있었다.
- 일본은 지역사무소를 재정 지원한 한국 정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표명하였다. 다만, 사무소장에게 국제법상의 외교적 면책 특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며 사무소장의 활동에 대하여 회원국이 인정하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본은 과거, 초대 사무소장은 한국인 이외의 인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공식 표명한바 있다. 이는 지역사무소가 한국의 사무소가 아니라 회원국의 사무소라는 위상을 위해서라는 설명이었음. 일본은 사무

소장의 감독권에 대하여도 현실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바 있다.

- 방글라데쉬는 지역사무소가 IAEA와 Complimentary 관계를 유지토록 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총회에서는 자문위원회가 최종 검토하여 채택한 사업계획서를 보고 받고 채택키로 하며 다른 기준들도 자문위원회가 채택한대로 양해하고 채택하였다. 다만, 사업계획서의 경우, 앞으로 수정 보완해야할 사항이 생기면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사업계획서의 채택과 함께 다음 단계로 필요한 법적 조치로서 자문위원회 및 일부 회원국(일본 등)은 보조약정을 체결토록 할 것이 아니라 총회 Resolution으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대하여 지역사무소측은 한국 정부와 협의하여 가장 합당한 조치가 어떠한 것이 될지 제안코자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만일 한국정부로서 Resolution 형태가 합당할 것 같으면 이 결의문의 문안을 사무소가 IAEA와 협의하여 초안키로 하였다. 초안된 문안은 일단 자문위원회의 콘센서스를 받도록 하였다. 이를 IAEA사무소(RCA Coordinator 책임)이 문서로 만들어 가까운 시일 안에 회원국에게 공람토록 하였다. 한국정부와 IAEA간의 Mutual Commitment 에 대한 MOU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진키로 하였다. 왜냐하면 만일 총회 결의문으로 채택이 된다면 그 내용에 한국정부와 IAEA의 공동 약속사항이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문서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었다. 한편 사무소장 선정위원회를 자문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구성하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회합을 하여 사무소장 공고안, 사무소장 고용계약서를 마련키로 하였다.

## 제12절 RCA 지역사무소 운영 관련 IAEA측의 새로운 제안

총회 직후인 9월 20일 및 25일, TCPA 국장인 김병구 박사는 3개 의장국 (방글라데쉬, 한국, 파키스탄), 뉴질랜드 (P. Roberts), RCA 조정관 (Aleta), 아태지역 협력과장 (Razley)을 초청하여 RCA지역사무소 관리 강화에 대한 별도의 비공식 협의를 하였다.

- RCA지역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IAEA (TCPA 김병구 국장)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제안을 하고 이에 대한 사전 비공식 협의 모임을 9월 20일 (금) 오전과 9월 25일 (수) 오전 IAEA의 TCPA 김병구 국장실에서 가졌다.

RCA 3개 의장국, 뉴질랜드 (Peter Roberts), 그리고 IAEA에서는 Razley 과장, Aleta RCA Coordinator가 참석하였음. 9월 25일의 모임 역시 김병구 국장의 요청

에 의하여 회집되었으며 Razley 과장, Aleta RCA Coordinator가 참석하였다.

#### □ IAEA 제안 사항

1) RCA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Vienna에 근무하고 있는 RCA 조정관을 RCA 지역사무소 잠정운영기간이 끝남과 함께 지역사무소에 주재토록 하고 지역사무소장을 겸직 토록함이 바람직함. 그러나 가급적이면 2003년 3월부터 겸직 주재하는 방안도 검토되기 바람.

IAEA는 RCA가 그동안 회원국에 의한 RCA 사업의 Ownership 중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사업 계획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흡한 면이 많다고 간주하고 있음. RCA 사업 예산의 80%이상을 재정지원하고 있는 IAEA로서는 RCA 사업이 IAEA의 기본 정신에 맞게 효과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음. 회원국의 필요에 따라서 발족한 지역사무소는 IAEA의 이같은 요망에 적극 부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임. IAEA는 RCA 사업계획의 구성 (Formulation)에 있어서 RCA 회원국들이 IAEA의 Central Criteria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제안을 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 참여국 정부의 RCA 사업에 대한 공동 약속 (Comitment)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패턴으로 진행된다면 이것은 IAEA 예산의 무책임한 집행일 뿐만 아니라 원자력기술의 확대를 통하여 지역 경제발전, 국민 생활 수준 향상, 환경 보전을 이룩한다는 IAEA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임. 그러므로 효율적인 예산지원과 또한 IAEA가 강조하고 있는 원자력기술의 미래지향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려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할 수 밖에 없으며 RCA가 다른 지역협력협정에 비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새로운 변화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는 의견임.

RCA Coordinator (조정관)는 IAEA 직원으로서 RCA 사업에 대한 계획과 집행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근년에 이르러서부터 IAEA/RCA 사업이 주제사업 (Thematic Program)을 전제로 한 2년 주기추진 (Cycle implementation)으로 상황이 변함에 따라 사업 기획이 대단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으므로 RCA 조정관이 지역에 주재하여 지역사정과 IAEA의 기본 TC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기획을 주도함이 필요하다는 주장임.

한편 지역사무소의 주요 업무가 RCA에 대한 인식제고 및 새로운 사업파트너 발굴에 있는 것과 관련, 지역사무소장이 IAEA의 신분일 것 같으면 대외적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RCA 조정관이 지역에 주재하여 그러한 업무를 담당함이 바람직함. 국제기구등이 RCA 사업에 과연 재정지원할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으나 IAEA 직원이 국제기구와 협상하여 재원을 확보한 예는 다수 있음. 국제기구가 IAEA에 재정지원할수 있었던 것은 IAEA라는 위치와 IAEA 직원이라는 외교적 신분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임.

잠정운영기간은 당초 2년간, 즉 2002. 3-2004. 3월로 예상하고 있으나 필요시 1년 더 연장하여 2005. 3까지 운영할 수 있을 것임. 그러므로 IAEA가 생각하고 있는 One person with two hats (RCA 조정관과 지역사무소장 겸직) 아이디어는 2003년 3월부터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지역사무소 자체 문제도 있을 것이므로 2004년 3월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임.

2) 지역사무소장을 겸직하는 RCA 조정관은 P-5로서 IAEA가 급여 및 기타 복리후생 경비를 제공할 수 있음. IAEA의 TCF(기술협력자금)중 RCA에 배정되는 예산에서 인건비 등을 집행할 수 있음. 만일 한국인이 RCA Coordinator로 선임되고 지역사무소장을 겸직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경비는 P-5로서 IAEA가 부담할 것이다.

RCA 지역사무소는 임시운영기간이 지나고 정식 운영에 들어감과 동시에 새로운 지역사무소장을 공모하고 선임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 현재의 한국정부 주장에 따르면 새로운 지역사무소장의 경비는 출신국 부담으로 되어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UN기구의 P-5 수준에 상당하는 경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지역사무소장을 파견할 수 있는 회원국은 찾기 어려움. 그러나 지역사무소장을 IAEA/RCA Coordinator가 겸직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경비는 당연히 IAEA 부담이므로 사무소장 경비의 출신국 부담이라는 난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됨.

한국정부는 한국인이 지역사무소장에 선임되면 그 인건비는 한국정부가 부담한다고 했으나 IAEA로서는 RCA Coordinator를 겸직하게 되는 것이므로 인건비를 P-5로서 IAEA TCF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임. 그럴 경우 P-5 인건비는 1년에 약 18-20만불이 되지만 근무지가 한국이 될 것이므로 이전비용, 정착비용, 자녀학자금, 주택보조등은 차이가 날것임. 하지만 외교적 신분을 가지게 됨으로서 소득세 감면 등의 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됨.

3) RCA 조정관이 지역사무소장을 겸직하게 되더라도 IAEA 직원으로서 외교적 면책특권을 가짐.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지역사무소장의 지역내, 또는 국제기구와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외교적 면책특권 사항도 사무소장이 IAEA 직원 신분이면 자연스럽게 해결됨. 그동안 한국정부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지역사무소장에게 외교적 면책특권을

주려면 그 1인을 위한 별도의 법을 만들어 국회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음. 그리고 이 같은 절차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불투명하다는 견해였음. 그러나 IAEA 직원으로서 한국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당연히 외교적 신분을 가지게 됨으로서 (P-5이상부터) 모든 면책 특권을 가지게 됨. 그러므로 한국에서 지역사무소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번거롭고 어려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역사무소장이 전체 회원국을 대표하는 신분이라면 IAEA의 직원신분으로서 IAEA에 종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일 수 있음.

4) 지역에 주재하는 RCA 조정관 겸 지역사무소장은 (1) RCA 주제사업의 사업계획 작성(Formulation)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2) 지역내 다른 국제기구와의 접촉을 통하여 새로운 Donor (Partnership) 모색에 주력하고 (3) IAEA가 권고하는 아웃소싱 업무를 주도하게 됨.

아웃소싱 업무는 IAEA가 계속 관심을 갖고 회원국에게 권고하여 온 사항임. 한국에 설치된 지역사무소가 한국내 RCA 행사의 아웃소싱 업무만 주관한다면 이것은 지역사무소의 업무 영역에 한계를 주는 것임. 중요한 것은 지역사무소가 한국의 사무소가 아니며 전체 회원국의 사무소라는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역사무소는 지역내 다른 회원국의 아웃소싱업무에도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RCA Coordinator가 지역에 주재하게 되면 이 같은 사항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임.

5) Vienna 에는 RCA 사업의 집행 (Implementation)을 위해 새로 P-4를 임명하여 IAEA RCA Office 에 파견되는 Cost Free Experts와 함께 집행업무를 전담토록 함.

RCA Coordinator가 지역에 주재할 경우, RCA 사업의 기획에 전념하게 됨. 따라서 IAEA 본부에서 RCA 사업의 예산과 집행을 전담할 별도의 책임자가 필요함. 이를 위하여 TC 부서에 P-4급의 직위를 신설코자 함. RCA Coordinator가 P-5급이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집행담당은 P-4로 설치코자 함. 신설되는 P-4는 Fellowship+Training Section (Bishoff과장)과 협조하여 RCA 행사의 아웃소싱에도 기여를 하게 됨.

현재 RCA 사업의 집행에는 RCA Coordinator's Office에 파견되어 있는 CFE가 (현재 한국에서 파견)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앞으로 CFE는 RCA 행사의 집행에 주력하게 될것임. 현재 파견되어있는 CFE가 임기후 귀국할 것에 대비하여 현재 일본에서 파견되어 있는 CFE를 2002년 10월부터 점진적으로 RCA Coordinator's

Office 에 배속하게 될 것임.

6) IAEA는 궁극적으로 3개 지역협력협정 (AFRA, ARCAL, RCA) 업무를 전담하는 1인의 P-5를 두어 업무를 총괄토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새로 발족한 ARASIA(아랍지역협력협정)의 업무도 함께 총괄하게 됨. 이는 IAEA TC 전략에 있어서 국가 사업과 지역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고려임.

현재 TC 부서에는 3개 지역협력협정 업무를 담당하는 조정관이 각각 근무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협력사업의 회원국에 의한 점차적 Ownership 증대를 고려할 경우, 이들의 IAEA 내에서의 업무는 축소될 것이며 반면 지역 내에서의 활동이 강화될것임. 이와 관련, IAEA는 앞으로 3개 지역협력 사업의 조정관을 통폐합하여 1명이 담당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

더구나 금년에 아랍지역협력협정(ARASIA)가 발족되었고 또한 동구 및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한 새로운 지역협력협정도 발족한 기미가 있는 입장에서 그럴 경우마다 조정관을 신설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지역협력협정 업무를 1인이 전담토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7) 현재의 Dir-TCPA인 김병구 국장은 RCA 업무와 관련한 이상 사항을 이미 DDG-TC와 협의하였으며 아울러 10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신임 Dir-TCPA인 Peter Salema에게 계속 Follow-up 할 것을 권고할 것임.

TC 부서의 Director에 대한 인사변동이 지난 9월 이사회에서 확정된바 있음. 그 결과 현재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협력을 맡고 있는 TCPA 국장인 김병구 국장은 9월 말로 퇴임하는 TCPB의 Baretto 국장 후임으로 내정되었으며 한편 TCPA 국장은 탄자니아 출신 Peter Salema가 부임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음. 김병구 국장은 RCA 업무를 Salema 국장에게 인계하면서 RCA지역사무소 관련 사항도 적극 협조 요청하겠다고 함. 김병구 국장의 RCA 지역사무소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현재 Floating 상태에 있을 뿐이지만 이미 DDG-TC와도 협의하였던 사항이라고 함. 그러므로 IAEA의 공식 견해라고 간주할 수 있음. 더구나 김병구 국장은 이 사항을 회원국 대표인 3개 의장국과도 협의하였으므로 (비록 Brainstorming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으나) 공식적 견해라고 할 수 있음.

8) RCA 조정관의 지역사무소 겸직 문제에 따른 IAEA 자체의 사항은 김병구 국장과 Razely 과장이 검토하며, 회원국들의 의견 조정은 Aleta 박사가 맡아 하도록 함. 김병구 국장은 특히 Legal 검토를 위하여 Legal Office의 Philippe와 협의키로

함. 또한 김병구 국장은 이 사항을 과기부 조청원 국장과 협의하며 9월 말 한국을 방문하는 RCA 조정관 Aleta 박사도 과기부 조청원 국장 및 관계관을 만나 협의할 계획임.

지역사무소 사항은 2000년 7월 말 IAEA에서 첫 자문위원회를 갖고 지난 2년 동안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였던 사업계획서 (Working Paper)를 최종 검토후 채택하였으며 아울러 자문위원회 운영기준, 지역사무소장 선정 기준, 지역사무소장 선정위원회 운영기준등 필요한 기준을 검토하고 채택한바 있음. 이 최종 사업계획서는 31차 RCA 총회에서 전체 회원국들이 양해하는 것으로 채택하였으며 만일 앞으로 내용 보완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시간을 두고 검토하여 반영키로 하였음. 이처럼 사업계획서를 확정된 것은 한국정부의 지역사무소 운영에 대한 법적 지원사항을 조속히 준비토록 하기 위해서임.

법적 지원사항으로서는 일단 지역사무소 설치 운영에 대한 전체회원국의 지지를 표명하는 결의문(Resolution)을 작성하고 이를 IAEA가 Endorse하여 한국정부에 기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었음. 이 같은 견해는 지금까지 논란되어 온 RCA 협정의 보조약정 (Supplementary Agreement)은 일부 회원국이 국내 사정에 따라 각의와 국회를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을 필요로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가 IAEA에 기탁되고 양해되지 않는다면 대외적으로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에 따른 것임. 그러므로 IAEA가 공식문서로서 지역사무소 설치에 대한 회원국의 지지를 표명한다면 공신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었음.

한편 지역사무소장을 RCA Coordinator로 겸직토록 하게 된다면 현재 기술되어 있는 지역사무소장 선정에 대한 내용 대신에 그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추가하면 될 것이라는 의견임. 이 경우, 사업계획서 수정 보완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검토 및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할 것임. 이 사항은 지역사무소와 함께 RCA Coordinator가 업무를 진행토록 한다는 것임.

9) IAEA는 지역사무소의 RCA Up-stream 사업에 대한 적극 참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 요원 1인을 IAEA TC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최소 3개월 이상 파견할 것을 권고함. 파견에 따른 경비는 RCA의 TCDC 사업에서 Fellowship 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함. IAEA는 2005-2006 사업의 기획 (Formulation)이 2003년 1월부터 시작해야함을 고려하여 지역사무소 요원의 IAEA TC 부서 파견을 가급적 이 시기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권고함.



Upstream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하여 수요를 계획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RCA가 어떤 사업을 해야하는지는 회원국의 필요를 정확히 판단함으로써 가능해 짐. 이와 함께 회원국의 능력 (인프라 포함), 정부의 지원등도 함께 고려해야 함. IAEA는 회원국들이 주제사업을 계획할때에 Upstream 반영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음. 사업의 계획은 IAEA의 TC 전략에도 부응되어야함. 2003년 초부터 시작되는 2005-2006년도 주기 사업의 계획서 작성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초기에서부터의 개념정립이 필요함. 이 사항은 지역사무소의 업무 범위에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지역사무소 프로그램 요원이 IAEA에 파견되어 구체적인 Upstream 작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였음. 지역사무소가 프로그램 요원을 3개월 내지 6개월간 장기 파견할 수 있을 것인지는 자체 검토해야할 사항임. IAEA는 가급적 1월 첫주부터라도 파견되기를 바라고 있음.

10) 현재 TC 부서에 CFE로 파견되어 있는 일본의 Yokoyama를 단계적으로 RCA 사업의 Implementation 업무에 참여토록 함. 필요시에는 역시 중국으로부터 Type B CFE로 TC 부서에 파견되어 있는 CFE도 RCA 업무에 투입할 수 있음.

IAEA의 이 같은 생각은 과연 한국이 RCA 업무를 위하여 CFE를 추가로 파견할 수 있는냐는 문제와 결부된 사항임. 한국은 RCA 업무를 위하여 지난번 KAERI 최평훈 실장을 CFE로 파견한바 있으며 현재는 KAERI 김경표 실장이 파견되어 있음. 김경표 실장의 기한은 원칙적으로 2003년 4월까지임. IAEA는 한국이 계속하여 RCA Coordinator's Office에 CFE를 파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왜냐하면 한국으로서는 지역사무소가 설치되었으므로 IAEA에 CFE를 파견할 여건이 된다면 오히려 지역사무소에서 근무토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임. 더구나 만일 RCA Coordinator가 지역에 주재하게 된다면 Vienna에서는 주로 Implementation에 중점을 둘 것이므로 한국으로서는 그 업무만을 위하여 CFE를 파견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적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임. 그러나 한국이 지금까지 수년간 IAEA TC에 CFE를 파견하여 RCA 업무를 지원토록 한 것은 인력개발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효과적인 사항이므로 간단히 필요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임.

11) 만일 한국정부가 RCA Coordinator의 지역사무소장 겸무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고려할 경우, IAEA로서는 RCA Coordinator를 ADB가 소재하고 있는 마닐라, UNESCAP 등 관련기구가 소재하고 있는 방콕, 또는 WB (세계은행)이나 UNEP가 근접하여 있는 지역에 주재토록 할 수 있음을 차선책으로 제안하였음.

이 경우, 사무실문제, 지원요원 문제 등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에서 RCA Coordinator와 지역사무소장이 각각 별도로 근무한다는 것은 업무의 중복성등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긍정적 고려 대상이 될 수도 있음.

### 9월 20일 (금) 비공식협약시 의견 표명 요지

- B K Kim Comment: 지난 9월 17일 ARASIA가 출범하였다. 77 그룹이 적극 지지를 표명하였다. ARASIA는 협정의 문구 중 Nuclear Technology 라는 용어 대신에 Atomic Energy 라는 용어를 사용키로 했다. 이것 역시 변화의 한 단면 (Facet)이라고 본다. RCA는 9월 18일 총회를 가졌다. 이번 총회는 변화를 위한 적당한 시점에서 열렸다고 본다. RCA 업무를 관장할 Director가 새로 임명되었다. 탄자니아 출신의 Peter Salema이다. RCA Coordinator도 내년 2월이면 새로 임명이 된다. 사람뿐이 아니라 사업의 성격도 변화할 때라고 생각한다. RCA 지역사무소의 오픈은 새로운 변화를 위한 좋은 시도이다. 현재는 Interim 운영 기간이지만 Permanent 운영으로 들어가게 되면 RCA에 요구되는 새로운 변화에 부응해야만 할 것으로 믿는다.

어떻게 하면 변화하는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RCA Coordinator는 지역에 주재하여야 할 것이다. IAEA로서는 앞으로 다른 지역협력협정 (AFRA, ARCAL을 말함)의 조정관도 지역에 주재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본다. 둘째 RCA 지역사무소장의 급여는 P-5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적어도 RCA Coordinator에 상응하는 Position이라면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어느 회원국이 그만한 예산을 부담할 수 있겠는가? 아직은 Rough Idea 이긴 하지만 만일 지역에 주재하는 RCA 조정관이 지역사무소장을 겸직한다면 여러 면에서 RCA를 위해 발전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아이디어의 시작은 Vienna에서 하지만 실현은 지역에서이다.

Munim Awais (Pakistan) Comment: Two positions by one person 개념으로 생각한다. 지역사무소장이 IAEA 신분을 가지게 되면 경비도 IAEA부담이라고 생각한다.

Peter Roberts (New Zealand) Comment: RCA Coordinator를 IAEA가 Contract Base로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왜냐하면 RCA 조정관이 지역에 주재하며 또한 지역사무소장을 겸직할 경우,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Razley Comment: 이 문제를 IAEA보다는 RCA 전체 회원국을 대표하여 3개 의 장국이 Initiate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총회에서 B K Kim은 RCA 지역사무소의 Work Plan이 필요하다고 요청한바 있다. RCA 사업의 Quality를 개선하는 일에 있어서 지역사무소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IAEA와 회원국에게 설명함이 필요하다. 지역사무소는 사업의 Programming, 각각 다른 사업의 Intergrity, 다른 기구와의 Communication 에 Appropriate skills 이 있어야 할 것이다.

John Chung (Korea) Comment: RCA 지역사무소는 출범한지 이제 겨우 몇 달 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Interim 기간을 두고 Designate Function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IAEA가 지역사무소에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엇그제 총회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Working Paper를 최종 Endorse하고 Adopt 했다. 물론 운영을 해 가면서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Working Paper를 수정 보완하게 되겠다. 기본적으로 지역사무소는 1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독자 기구이다. IAEA의 종속되어 있는 기구가 아니다. RCA 조정관을 지역에 주재토록 한다는 것이 IAEA의 정책이라면 이의가 없다. 그러나 RCA 조정관이 지역사무소장을 겸직한다는데에는 여러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회원국들, 특히 한국정부에게 타당성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게 추진한다면 종전에 RCA 지역사무소 자문위원회의의 최종 검토를 거쳐 채택한 Working Paper는 그 내용이 상당히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일단 총회에서 채택되었는데 그 다음날 새로운 아이디어가 표명되는 것은 혼란스런 일이다. RCA가 새로운 시대적 Paradigm의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는데는 동감한다. RCA 조정관의 지역사무소장 겸직 Idea는 한국 정부가 상세 검토할 사항으로서 그런 연후에 다시 Brainstorming 함이 필요하다.

Choudhury (Bangladesh) Comment: RCA Coordinator의 지역 주재는 원칙적으로 찬동한다. 하지만 IAEA와의 Communication 이 중요한 입장에서 지역에 주재할 경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IAEA TO와의 사업 추진에 따른 빈번한 협의문제, IAEA TCF (기술협력자금)의 배정문제등에 RCA 조정관이 IAEA 직원으로서 이들과 얼굴을 맞대고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무소장의 경비가 문제가 된다면 타당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국제기구를 Host한 국가가 그 기구대표의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Munim Awais Comment: IAEA의 Fellowship을 지역사무소에 배치하여 사업 계획 작성, 아웃소싱 등의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Aleta (RCA 조정관) Comment: RCA 조정관이 지역사무소에 주재한다면 지역사

무소를 위해서 근무하는 것인지, IAEA를 위해서 근무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역사무소 본래 설립 목적에 적합한 조치가 될 수 있을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RCA 조정관이 지역에 주재하면 IAEA 관련 부서와의 업무 연결(Connection)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RCA 조정관은 기본적으로 IAEA에 상주하고 필요시 지역에 상당기간 체류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Munim Awais Comment: 좋은 생각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IAEA와의 연계가 반드시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 수시로 메일, 전화를 이용하여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역에 주재하므로써 불리한 점도 많을 것이다. Vienna에 근무하는데 따른 혜택이나 유리함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Peter Roberts Comment: 지역사무소장은 Powerful 한 Figure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다른 국제기구와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무소장은 IAEA가 요구하는 Guideline에 따라 LC 국가 사업책임자들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무소장은 회원국들의 결정사항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사무소장의 역할에 대한 회원국들의 Authorize가 중요하다.

B K Kim Comment: 3개 의장국이 먼저 해 주어야 할 일은 현재의 사업 시스템에 대한 Issue Finding 이며 그 다음에 필요한 Recommendation을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무소는 한국사무소가 아닌 RCA 회원국들의 사무소로서 Action Plan을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전체 회원국들에게 지역사무소의 역할과 계획, 즉 필요성을 Convince 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RCA 사업에 대한 Donor들 (IAEA 포함)은 지역사무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으므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azley Comment: 지역사무소 업무와 관련하여 1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Governing Board를 가지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 Board가 RCA 사업에 대한 자문을 함이 필요하다. UNDP가 왜 재정지원을 중단했는가? 그들의 기준 요건에 맞지 않는 사업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Good Lesson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John Chung Comment: 주지하는 대로 Interim 운영기간중 선임사무소장 선출등 업무를 자문하기 위하여 5개국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는 RCA 조정관도 Member로 되어 있다. Interim 운영기간이 끝나고 나면 SAC (Staning Advisory Committee)를 두기로 합의하였다. Working Paper에 표명되어 있다. 그러므로 SAC가 Board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사업계획 Formulation 과

관련하여 지역사무소는 LC 및 Project Committee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결코 Dictate하지는 않을 것이다. RCA의 Operating Rules and Guidelines 에 따라 사업의 계획은 각 Project Committee 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의 임무와 책임을 도외시 할 수는 없다. 또한 회원국들은 IAEA 가 무슨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지 정확히 표명할 필요가 있다. Member States 에 의한 Ownership 중대가 중요하다면 IAEA가 Overly control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사무소의 역할에 대하여 아직도 논란이 있음은 의외이다. 당초부터 역할은 분명하다. RCA에 대한 Awareness를 Improve하고, 즉 Visibility를 Enhance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새로운 Partnership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내용은 Working Paper에 명시되어 있다.

B K Kim Comment: IAEA로서는 RCA 사업이 IAEA의 Central Criterion에 맞지 않으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다. 한편, 사업 수행에 있어서 TO들이 Dominating 한다는 얘기도 듣고 있다. 이견 곤란하다. 일단 LC 사업책임자들이 Proper Fashion으로 간다면 문제없을 것이다. 앞으로는 TO역할을 지역사무소장이 해야하고 그 때에 필요하다면 TO를 불러서 협의하면 될 것이다. 또 하나, 한국의 지역사무소가 유리한 점이 있다. 한국은 Computer 기술에 있어서 매우 앞장서 있다. 한국에서는 가정의 거의 3분의 1은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이 Infra를 vitalize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TC Pride등 정보 유통 시스템을 한국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방사선방호 원격교육 프로그램도 경제적으로 (Low Cost)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무소는 RCA ENO 사업의 중심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Class Room 교육은 점차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 RTC (지역훈련과정)은 현장 실험 위주로 가야 할 것이다.

Peter Roberts Comment: TO 역할을 LCC (Lead Country Coordinator)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사무소장의 주 역할은 Funding Source의 발굴이다. 그러자면 프로그램을 잘 알아야 한다.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의 내용이 Project Committee에 전달되고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LCC는 자기 기술분야만 집중하여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추진코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되면 전체 Picture를 보지 못하는 염려가 있다. Johannes 선언을 생각하여 RCA 사업의 전체 Picture를 보고 반영토록해야 할 것이다.

B K Kim Comment: RCA Coordinator가 지역사무소장을 겸직하는에 따른 Pro and Con을 잘 검토하기 바란다. 회원국의 Ownership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Two in one' concept 이다. 그럴 경우 적격자의 선정은 IAEA와 회원국이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Razley Comment: 2005-2006 사업계획에 지역사무소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출범한지 얼마 안되는 입장이므로 새우면서 경험을 쌓는 방식으로 접근함이 좋을 것이다. IAEA의 Upstream 정책을 지역사무소가 속히 이해하게 되기 바란다.

B K Kim's Last Comment: 내년 3월 파키스탄 회의에서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협의되기 바란다.

### 제13절 IAEA와의 비공식 협의시 의견 표명 요지

- B K Kim Comment: RCA Management Strengthening 에 대하여 DDG-TC Qian과 의견을 나눈바 있다. RCA 지역사무소 현안을 포함한 RCA 사항을 후임자인 Peter Salema에게 hand-over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이 제안은 Floating Idea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Agency 내부의 검토가 있어야 하며 Member States의 Consensus가 있어야 하고 특히 한국정부의 Approval 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현안이 잘 이해되고 협조될 것으로 기대한다. Time Frame은 내년 2월초 Aleta 박사의 퇴임이후 새로운 RCA Coordinator가 임명되기 전에 원칙적인 결정을 보고 3월 Islamabad에서의 25차 국가대표자회의에서 새로운 지역사무소 운영방안이 협의되기를 바란다. 추진 절차는 먼저 IAEA내부 검토를 끝내고 그 결론을 가지고 회원국 및 한국정부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같은 제안의 Basic Concept는 Strengthening RCA Management를 위해서이다. 그래서 RCA Coordinator를 지역에 주재토록 한다는 Idea를 낸 것이다. 현재 Vienna에 상주하는 RCA Coordinator 가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길 경우, 예산 체제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IAEA로서 지역사무소 운영은 현재 SG 뿐이다. 그러나 TC에서는 그러한 예가 없다. 그러므로 RCA Coordinator의 근무지가 지역으로 결정된다면 정규인건비에서 지원되기보다는 TCF (기술협력자금)에서 부담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RCA Coordinator는 P-5로서 1년 경비가 20만불 정도 된다고 본다. RCA 1년 전체 예산은 약 2백50만불 수준이다. 그러므로 사업예산의 약 8%를 RCA 조정관 경비로 집행한다고 해도 RCA 사업은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본다. 물론 회원국들이 RCA 예산을 이렇게 인건비로 집행하는 것을 양해해야 할 것이다.

RCA Coordinator가 지역에 주재하면서 가장 중점 두어야 할 Function은 Programming 이다. RCA 프로그래밍은 IAEA의 Central Criteria에 Meet 되어야 한다. 2005-2006년 사업계획 작성은 2003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지역에 파견되는 RCA Coordinator가 Lead Country Coordinator등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그러면 Implementation은 누가 Follow-up 할것이나? IAEA가 맡을 것이다. 물론 점진적으로 회원국, 특히 지역사무소에 아웃소싱 하고자 한다. 현재로서는 10-15%는 아웃소싱할 생각이다. 지역에 주재하는 RCA 조정관은 프로그래밍에 중점 두어야 할 것이다. Implementation은 현재로서 CFE인 김경표, 그리고 TCPA 국장실 Andy (인도네시아 출신 사무원)가 맡아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RCA 지역사무소의 잠정운영기간중 RCA Coordinator는 Vienna에 주재하면서 RCA 사업의 집행 Follow-up 책임도 함께 지낸다. 물론 RCA Coordinator가 지역에 주재하게 되면 Vienna에서 집행을 Follow-up할 별도의 담당자가 필요할 것이다. P-4급을 Assign하고자 한다. P-5는 지역에, P-4는 IAEA에 근무하면서 서로 협조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말하자면 RCA로서는 P-4가 1명 추가되는 셈이다. 그러나 P-5 RCA Coordinator의 급여를 TCF에서 부담한다면 IAEA로서는 P-4 신규 임용에 대한 재정부담이 되지 않는 셈이다.

10월 1일부터 TCPA 국장은 Peter Salema가 맡게 됨. 본인 (김병구)로서는 RCA 조정관 및 지역사무소에 대한 사항을 Salema국장에게 이관하게 되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코자함. 물론 Razley 과장과 Aleta 조정관이 Salema 국장의 업무에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함.

현재 Working Paper에 의하면 지역사무소장은 회원국들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음. RCA 조정관은 IAEA가 선정하여 임명하지만 지역사무소장을 겸직하므로 회원국들과 협의하여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한국 출신이 지역사무소장에 선임되더라도 RCA 조정관 업무를 겸직하는 것이므로 인건비는 IAEA가 부담하는 것이다.

Aleta Comment: 지역에 주재하는 RCA 조정관의 인건비를 TCF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TCF 예산이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 나중에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RCA 조정관 인건비를 삭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P-5로서 외교적 신분을 보장받는 문제이다. 관례적으로 보면 D 급 이상만이 외교관 신분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P-5에 대하여도 외교 면책 특권을 준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B K Kim Response: RCA에 대한 IAEA의 재정기여는 계속 보장될 것이다. 문제는 회원국들이 사업비의 약 8%를 인건비로 전용하는 것을 승인할 것인가 이다. 물론 지역사무소장은 회원국들이 선출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TCF는 기본적으로는 IAEA 예산이므로 IAEA가 배정하기 나름이라고 본다. P-5의 레제 파썰 문제는 IAEA 내부 Legal Office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Razley Comment: RCA 협정에 IAEA는 행정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다. 어떻게 지원하느냐는 것은 IAEA가 정할 일이다. 물론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는 있다. 회원국으로서 IAEA의 P-5가 프로그래밍 업무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므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일부 회원국들은 RCA 조정관이 지역사무소장을 겸직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당초 지역사무소를 설립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생각은 한국정부도 당연히 가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RCA Coordinator를 다른 국제기구가 위치하고 있는 국가에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있는 Manila에 주재할 수도 있고 UNDP가 있는 Koala Lumpur에 주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과연 다른 국제기구들이 RCA에 예산기여를 할지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 IAEA/RCA의 사업과 이들 국제기구가 추구하는 사업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재정지원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일부 국제기구들도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데 RCA에 까지 재정기여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도 한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IAEA 직원으로서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한 경우가 많이 있다. 어떤 직원을 1백만불 이상의 예산을 확보한 경우도 있다. RCA사업 계획이 명확하면 파트너 (Donor)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RCA가 그들이 추구하는 사업 정신과 부합하는 좋은 사업을 개발하면 문제없을 것이다. 좋은 사업을 가지고 예산지원이라는 문을 두드리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을 두드릴 때 좋은 모자를 쓰고 있어야 돈을 주는 사람도 신뢰할 것이다. IAEA라는 모자를 쓰고 있으면 유리할 것이다.

B K Mim Comment: Action Item을 생각해 보자. 본인(김병구)은 Peter Salema에게 inform하겠다. 또한 한국정부의 의견이 중요하므로 과기부 조청원국장에게도 연락하겠다. 한국은 방문하는 Aleta 박사도 기회가 되면 과기부를 방문하여 조국장 등과 의견교환하기 바란다. Razley 과장은 내년 3월 Pakistan 국가대표자회의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Non-working Paper를 준비하기 바란다. 그러는 사이에 본인(김병구)은 DDG-TC Office의 Adm. Officer인 Philippe Fouchard와 협의할 것이며 Qian Jihui와도 계속 의견 교환을 하겠다. IAEA의 INT 프로젝트 (지역간 협력사업)을 1명이 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지역협력협정 사업도 한 사람이 총괄함이 바람직하다. 아직은 5개국밖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아라시아 (ARASIA)가 출범하므로 지역협력협정은 4개가 있게되었다. 유럽 (주로 동구를 말함)은 별도의 지역협력협정이 필요치 않다고 말하고 있다. 모두 잘하고 있고 각국이 오너쉽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 백

## 제4장 RCA 30주년 기념행사 추진현황

### 제1절 RCA 30주년행사 추진개요

2002년도는 RCA가 아·태지역 국제협력기구(IAEA) 회원국 상호간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자력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및 국민복리증진을 위해 설립 된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특히 21세기 아시아 태평양시대를 맞이하여 세계경제의 주체로 발돋움하고 있는 아·태지역 IAEA 국가들이 RCA를 통해 원자력분야의 과거와 현재의 협력현황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미래 협력방향을 마련하므로서 이 지역 상호교류 및 경제협력의 물고름 트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할 것이다.

30주년이 흐르는 동안 RCA는 이 지역 내에서의 원자력의 농업적, 산업적, 의학적인 이의 증진 및 에너지정책수립 등에 있어 긴밀한 상호유대를 해오고 있는 한편, 아프리카지역의 원자력분야 협력단체인 AFRA와 중남미,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 원자력협력체인 ARCAL 등과도 원자력분야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원자력협력사업은 에너지기술자립을 위한 원자력발전분야에 치중한 결과, 비 발전분야의 방사선이용에는 적극적이지 못하여 원자력분야의 국제적 협력이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0년도 중반에 우리나라의 핵연료 및 원자로계통설계 등 원자력발전기술이 이미 기술자립을 하여 세계로 원자력 기술을 수출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됨에 따라 비 발전분야의 국제협력에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세계적으로도 성능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가 우리나라 기술진에 의해 자력으로 건설, 원자력의 의학, 식품, 환경 등 비 발전분야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됨에 따라 방사선이용을 통한 국제적 협력의 선진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RCA의 주도국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협력사업은 원자력기술의 농업적 이용, 보건에의 이용, 산업에의 이용, 환경보호에의 이용, 각 국의 에너지정책 수립 지원, 연구용 원자로 운영 및 응용, 비 발전분야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사선방호 그리고 개발도상국간의 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제협력과제는 30개 이상으로 우리나라는 20개 이상 과제에 참여하여 활발한 연구 및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RCA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아·태지역 원자력협력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등 RCA 전문가들을 초청, 기념강연회를 가졌다. 아울러 ‘RCA 30주년의 주요업적과 향후전망’이라는 주제로 RCA 사업성과 전시회 및 ‘방사선식품조사 기술성과 전시회’를 통해 RCA가 그동안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나갈 방향을 재정립하는데 좋은 기회였다.

RCA 행사기간동안에 RCA 국가대표자회의가 열려 채영복 과학기술부장관, 찬지후(Qian Jihui) IAEA 사무차장 등이 참여, RCA지역협력을 도모하였고, 이 자리에서 과기부 조청원 원자력국장이 제24차 RCA 국가대표자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어 향후 1년간 RCA 의장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RCA 회원국의 오랜 숙원이었던 RCA 지역사무소가 우리나라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설치 운영됨에 따라 아·태지역 회원국의 원자력분야의 의견수렴과 함께 우리의 원자력분야 선진기술을 수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해볼 때 RCA 30주년 기념행사는 RCA 회원국간의 그동안에 이루어냈던 상호협력연구를 더욱 다지고,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며 상호 최신정보를 교류하는 터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RCA가 나가야할 바람직한 향후 방향을 설정하는데 이번 행사가 시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 제2절 RCA 30주년 행사 준비내용

### 1) ‘기념강연회’ 행사

#### 가) 행사취지

RCA 30주년 기념행사는 2001년 9월 14일에 열린 비엔나 제30차 RCA 총회에서 전체 회원국들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행사기간에 특별강연회 등을 갖기로 하였다. 특히 RCA에 많은 공헌을 한 인사들을 특별강사로 초청 특별강연이 이루어졌다. 행사명칭은 원자력 과학포럼-RCA 30(Nuclear Scientific Forum-RCA 30)로 정하였다.

#### 나) 행사주제 및 내용

주제는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원자력’(Serving for Regional Needs)이며, 행사내용은 ‘RCA의 과거 공적, 현재의 기여, 미래를 위한 노력’(Past, Achievements, Present Contributions, Future Endeavors)으로 정하였다.

#### 다) 행사일정

2002년 3월 25일 하오 2시부터 시작되었으며 RCA 제24차 국가대표자회의가 열리는 기간(3월 25일-29일)동안에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되었다.

#### 라) 초청강사 및 강연내용

아난드박사(Mr. A. K. Anand)가 'RCA의 발자취와미래방향'이란 주제로 기념강연하였으며, 이 강연을 통해 원자력협력은 지역발전의 지름길임을 역설하였다. 아난드박사는 전 RCA 인도 국가대표자로 2000년 RCA총회의장을 맡기도 하였으며, 인도 원자력연구센터 특별자문위원이기도 하다. 초우드리박사(Prof. Dr. Nayyum Choudhury)는 '인간의 기본요구를 위해 봉사하는 원자력기술'이란 주제로 강연을 통해 원자력을 통해 지구적인 문제인 식수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안했다. 초우드리박사는 RCA 방글라데쉬 국가대표로 2001년 RCA 총회의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방글라데쉬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 일본의 마치박사(Dr. Machi Sueo)는 '원자력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도전'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보다 발전되고 첨단화되며 환경 친화적인 분야에 원자력을 이용하자고 제안하였다. 마치박사는 전 IAEA 사무차장이었고 RCA 조정관으로 일본 원자력산업회의 상무이사이다.

호주의 이지박사(Dr. John Easey)는 'RCA의 협력증진방안'이란 제목으로 변화하는 국제사회에서 RCA의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방안에 대해 강연을 하였다. 이지 박사는 전 RCA 조정관으로 현재 호주 원자력과학기술기구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병희박사는 '자립적 경제개발을 향한 RCA의 역할'에 대한 제목으로 지역내 복리증진을 위한 제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이병희박사는 1987년 RCA 총회의장전 과기부 원자력위원으로 현재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로 있다. (# 별첨 : 강연요약 내용)

#### 마) 행사준비 추진일정

원활한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2001년 10월에 전반적인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행사 시행방안 Outline 작성한 후 2002년 1월에 초청대상자와 강연제목 등을 확정시키고 초청장 발송하였다. 또한 강연 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강연내용을 조정하기도 했다. 국내유관기관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원자력 관련 기관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수행하였다. 2002년 2월에는 프로그램 및 진행순서를 확정짓고, 국내 원자력 관련기관에 강연회 참석을 알렸다. 2002년 3월이 되어서는 강연자료를 취합, 편집하였고, 강연회 행사 장소 등 각종 행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였다. 이와 함께 RCA행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원

자력 유관기관 대상 홍보활동도 꾸준히 수행하였다.

#### 바) 행사준비 추진반 운영

RCA 30주년 기념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이 팔로 하는 행사 추진반을 구성 운영하였다. 추진반장은 원자력협력과장이 맡으며 그 밑에 총괄기획팀, 행사진행팀, 행사지원팀을 두었으며, 보다 효과적인 행사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대표들을 중심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두었다. 자문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 외교통상부 등이 참여하였다.

추진반의 총괄기획팀은 회의 참가안내 Pack 제작, 초청장 및 참가자 확인, 의제 검토, 개회사, 환영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행사진행팀은 행사운영 (자료배포, 기념촬영 등)과 행사 예산 및 회계, 감사초청, 전시회 등을 주관하였으며, 행사지원팀은 만찬준비(메뉴, 주요인사 초청 등), 대표단 입국 및 호텔 (Check-in 지원), 수송차량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 사) 행사준비 점검사항

RCA 30주년 기념행사가 개최 될 행사장 점검에도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 강연회 장소 확인에서부터 의전에 따른 좌석배치, 등록안내 부스 운영, 현수막, 안내 표지 준비, 마이크시설 등을 확인하고 점검하였다. 30주년 기념행사 중 비중 있는 행사중의 하나가 초청 강연회라고 할 수 있다. 이 초청강연회와 관련하여 초청강사 및 강연제목 확정 한 후 강연청탁서 발송 및 확인, 참석자 초청장 발송, 각종 경비 확인 및 지원, 출입국업무 지원, 외국 초청강사 숙소 예약 등 초청강연회 강사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또한 강연초록집을 발간하고 효과적인 강연을 위해 시청각기자재를 준비하였다.

오랜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참석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초청장 발송에서부터 주요 참석자를 확인하고, 국내 RCA 관련 과제 참여자는 필히 참석하도록 하는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구했다. 이와 함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전체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사회자 및 진행자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개회사등 행사진행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정부부처인 과학기술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내외 관련기관 초청장 발송과 정부차원의 홍보활동을 수행하였다.

유관기관과 일반국민들이 RCA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홍보하기 위하여 국내 홍보 및 국외홍보방안을 수립하고 언론기관 홍보 및 홍보물 발간 준비, Internet 등 다양한 홍보방안 강구하였다.

## 2) 'RCA 사업성과전시회' 행사

### 가) 행사취지

RCA 30주년을 자축하며 그동안 아·태지역의 원자력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이루어낸 각종 연구개발성과물을 전시하고, 이를 발판으로 이 지역에서의 원자력 분야 협력을 가일층 강화하고, 보다 발전된 원자력분야 연구개발 협력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시, 홍보하였다. RCA사업성과 전시회 명칭은 "RCA 30주년의 주요업적과 향후 전망"으로 정하였다.

### 나) 행사일정

2002년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RCA 제24차 국가대표자회의가 열리는 기간동안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회의장 로비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 다) 행사내용

아·태지역 회원국들이 그동안 RCA 협력사업으로 이루어낸 연구개발성과물을 전시하였다. 판넬, CD-ROM 및 각종 연구성과물을 현장에 전시, 각국의 연구성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 전시회에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선식품생명공학연구팀의 방사선을 통한 식품의 저장, 관리 등의 연구개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사선식품 조사기술 성과전시회를 가져 국내외 참가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 라) 행사추진

전시회 행사의 세부 추진일정은 RCA 30주년행사와 함께 월별로 일정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원활한 전시회 행사준비를 위하여 RCA 30주년행사와 함께 묶어 추진반을 구성, 각 팀별로 업무를 분담, 조직적으로 운영하였다. 이와 함께 IAEA와 연락하여 전시용 판넬 및 CD-ROM 등 전달, 항공으로 수송된 판넬 등 전시품목 접수 및 이송, 전시장에서 전시가 가능하도록 전시대 및 탁자 등 확보, 각종 음향시설, 전기시설 등을 점검하였다. 성과전시회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방문객 배포용 RCA 소개책자 등 홍보물을 비롯하여 CD-ROM 전시를 위한 PC 모니터 준비하였고 전시회 안내 자료와 초청장을 발송하였다.

## 3) RCA 지역사무소 개소식 행사

### 가) 개소식 행사 취지

2001년 9월 오스트리아 비엔나 IAEA 본부에서 개최된 제 30차 RCA 정기총회에서 2002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 24차 RCA 국가대표자회의 기간 중에 RCA 지

역사무소를 개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부는 임시 조치기간 (2년) 중에 RCA 지역사무소를 한국원자력연구소 산하 임시조직으로 하여 개소하기로 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우리나라의 RCA 사업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RCA 지역사무소가 RCA 사업의 추진현황을 적기에 파악할 수 있어 업무수행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시조직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 내에 설치하여 시범 운영기간 중에 RCA 협정 개정 (사무소 설치 근거규정 마련) 등의 절차를 마친 후 국제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화로 추진하다가 2년 후 정식 조직으로 서울에서 출범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부는 2002년 1월 29일 과학기술부 훈령 제 90 호로 “아·태 원자력협력협정 사무소 운영지원사업 처리규정”을 제정, 시행하였다. 동 규정 제 3조 (사무소 설치) “사무소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설치하며, 연구소의 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은 사무소가 아·태지역 회원국간 기술협력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사, 회계 등에서 독립성을 부여하고, 이의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에 의거 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연구소와 간에 “아·태 원자력협력협정 사무소 운영지원사업” (협약기간 : 2002년 3월 16일 - 2002년 12월 31일)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의 한시조직으로 2002년 3월 정식 출범하였다.

#### 나) 행사일정 및 내용

2002년 3월 27일 오후에 RCA회원국들의 오랜 여망인 지역사무소 오픈 행사가 한국원자력연구소 연수원 앞에서 있었다. 이날 오픈 행사에는 과학기술부 유희열 차관을 비롯하여 RCA회원국 대표단, IAEA 관련인사, 국내 원자력 유관기관 및 대덕연구단지 기관장, 국내 RCA사업책임자 등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오픈 행사는 RCA지역사무소의 김진경 국장의 경과보고로 시작되었으며, 과기부차관, IAEA사무차장, 현 RCA의장의 축사와 함께 주요 참석자들이 함께 테이프 커팅으로 지역사무소 개소를 알렸다. 그리고 각국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여 RCA지역사무소 개소를 뜻깊게 하였으며, 몇몇 RCA회원국 대표는 지역사무소 개소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기념품을 선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날 행사에 참석한 RCA회원국 대표들은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 3층에 자리 잡은 RCA지역사무소를 둘러보고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 다) RCA지역사무소 개소 의의

RCA지역 사무소는 회원국의 오너십을 제고하고 회원국 주도로 RCA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구체적으로는 RCA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사무소를 운영함으로써 RCA의 대외 인식을 제고하고 회원국 근거리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회원국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히 협력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에 개소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자력으로 설계한 연구용원자로 “하나로”가 1995년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역협력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RCA 지역사무소를 우리나라에 개소함에 따라 한국에 유치하면서 발생하는 부대경비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1년에 70여건의 RCA 사업의 각종 Meeting, Workshop, Training Course 중 한국이 필요한 RCA event를 적극 한국에 유치하기가 유리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한국원자력연구소내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International Nuclear Training and Education Center : INTEC) 가 2002년 4월에 정식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INTEC 의 활성화를 위하여도 RCA event를 적극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RCA 의 event를 개최하는 여건만 조성이 된다면 많은 RCA event를 우리나라에 유치가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1년에 약 5-7 건의 RCA event를 유치하고 있다. 한번 개최되는 RCA event(1주일) 의 예산이 약 \$50,000 임 점을 감안하여 불 적에 RCA 지역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함으로써 더 많은 RCA event를 한국에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 이에 따라 event를 유치함으로써 파생되는 간접적인 외화획득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 여 백

## 제5장 RCA 지역사무소 개설 홍보 내용

### 제1절 개요

RCA가 아·태지역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모토로 출발하여 30년간의 연륜을 쌓아오면서 이제 청장년세대에 속하는 성숙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RCA가 원자력을 통한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일한다는 그 설립배경 및 사업취지 등에 대해 널리 알려지지 못한 것도 현실이다. 특히 이번에 RCA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RCA관련 행사는 그동안 RCA 사업을 통해 추진해온 대내외적인 RCA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므로써 이를 널리 알렸던 좋은 홍보의 기회였다고 할 수 있었다.

### 제2절 홍보 주요 내용

RCA 3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다양한 RCA 사업을 알려주는 3가지의 주요행사가 있었다. 즉, 제24차 RCA 국가대표자회의, RCA 설립 30주년 기념강연회 및 패널전시회 그리고 역사적인 RCA 지역사무소를 우리나라에서 여는 개소식이 있었다.

첫째로, 제24차 RCA 국가대표자회의가 3월 25일 개막식과 함께 열렸고 저녁에는 채영복 과학기술부장관 주재로 RCA 17개 회원국 대표 및 대사 등을 초청, 환영리셉션을 여는 등 RCA 회원국간의 협력을 돈독히 하였다. 이번 RCA 국가대표자회의에서는 보건, 농업, 산업, 환경, 연구용 원자로 이용 등 원자력분야에 대한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향후 2003, 2004년 RCA 사업계획 및 규모, 차기회의 개최국가 등을 결정하였다.

둘째로, RCA 설립 30주년 기념강연회 및 패널전시회를 개최, RCA 사업의 다양한 활용 및 향후전망에 대해 발표 및 토의가 있었다. 이번 30주년 기념강연회에서는 인도 원자력연구소 특별자문관 아난드박사(Mr. A. K. Anand), 방글라데시 원자력위원장 초우드리박사(Prof. Dr. Nayyum Choudhury), 일본 원자력산업회의 상임이사 마치박사(Dr. Machi Sueo), 호주 원자력과학기술기구 이지박사(Dr. John Easey), 한국의 이병희 과학기술원 명예교수 등의 기념강연이 있었다. 이번 기념강연회에서는 RCA의 지나온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모두가 힘을 모아 회원국 상호 복지사회를 열어가자는 대 공감대를 얻는 큰 수확을 얻었다. 또한 RCA 회원국의 지역간 협력사업 및 각국의 RCA 사업성과에 대해 패널이나 CD-ROM을 제작, 전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셋째, RCA 지역사무소 개소식을 한국원자력연구소내 원자력연수원에서 RCA 회원국대표, IAEA 관계자, 정부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RCA지역사무소 개소는 RCA 전체 회원국의 오랜 숙원이었으며, 그동안 우리나라의 유치 노력 및 홍보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RCA지역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내 회원국의 원자력분야의 협력과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의 선진기술을 수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 제3절 효율적인 홍보활동체계 구축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홍보네트워크를 형성, 추진하였다. 이번 행사 담당기관으로 과기부 원자력협력과 및 공보관실, 한국원자력연구소 홍보협력과, 안전기술원 홍보협력과, 원자력문화재단, 원자력산업회의, 원자력의학원, 한수원(환경기술원 포함) 및 기타 RCA에 참여하고 있는 농진청 및 관련대학 등이 참여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공적인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특히 행사를 위해 사전점검모임을 갖고 치밀한 준비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하였다. 홈페이지 자료(수록자료 취합정리, 홈페이지 디자인 등), RCA 광고(광고문안 필름제작 등), 보도자료 작성(국영문, 별도 요약문 등), 기자간담회(일정조정 및 장소, 인터뷰 등), 취재 지원활동(각 행사별 취재지원 등)을 갖고 행사에 만전을 기했다.

### 제4절 추진일정 및 세부홍보활동

RCA 행사의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일정을 작성하여 이에 따라 시행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일시	홍보내용	비고
2001년 10월	- 전반적인 홍보추진방안 수립 - 세부적 시행방안 Outline 작성	
2002년 1월	- 세부홍보계획 수립 - 홈페이지 올릴 자료 작성 - 팸플렛 자료 작성 준비	
2002년 2월	- 언론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작성 - 언론기관에 제공할 특집기자 준비 - 기자간담회 스케줄 수립	
2002년 3월	- 보도자료, 특집기사 배포 - 기자간담회 개최 - 행사 취재 지원	
2002년 4월	- 보도내용 스크랩 - 관련유관과의 최종협의 마무리 - 홍보활동 평가	

RCA행사와 관련하여 홍보활동은 매우 다양하게 펼쳐졌다. 홍보매체의 활용에 있어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등 신문 및 전문잡지, 방송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배너광고 등 여러 매체를 활용 홍보를 하였다. 특히 홍보추진 대상에 있어서도 언론기관, 원자력유관기관, 정부 관련부처, 교육기관 및 일반국민 등 국내홍보는 물론 국외 언론기관, 각종 국제기구 및 NGO 등 국외 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였다. 특히 국내홍보의 경우 국내 언론매체에 보도자료를 작성, 제공하였고, 기자간담회 개최, 특집 프로그램 추진 그리고 인터뷰, 기고 및 출연 주선 등을 하였다. 또한 국외 언론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주한 외국 언론 특파원에게 보도자료 제공, 외국 원자력전문지에게 자료 제공 및 인터뷰, 특집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인터뷰, 기고 등 협조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원자력유관기관을 통한 홍보를 실시, IAEA/RCA 홈페이지 홍보, RCA 각 회원국을 통한 홍보 및 원자력유관기관에 팸업창을 게시하여 홍보효과를 높였다. RCA를 알리는 홍보 팸플렛 제작, 사진 및 비디오 제작 등 홍보자료도 발간·배포하였다.

## 제5절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제24차 RCA 국가대표자 회의, RCA 설립 30주년 기념강연회 및 패널전시회 및 RCA 지역사무소 개소식 등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였다. (# 별첨 : 1.과 기부 보도자료, 2.원자력(연) 보도자료)

언론기관 보도내용을 보면 방송사의 경우 RCA 사무소의 개소에 대해 YTN, KBS, MBC 및 TJB에서 2002년 3월 27,28일 양일간 방송되었다. 아울러 신문의 경우 서울경제, 한국경제, 세계일보 등에서 보도되었다.

<신문사 보도내용, # 별첨 첨부>

신문사	보도일시	보도내용
서울경제	2002년 3월20일	- 17개 RCA 회원 등 참가, 25일부터 국가 대표자회의
한국경제	2002년 3월20일	- 아·태 원자력협력회의, 25일부터 서울 서 개최
전자신문	2002년 3월21일, 3월28일	- RCA 사무소 한국에 설치, 27일 원자력 연구소서 개소
디지털 타임스	2002년 3월20일	- 원자력협정 대표자회의, 서울서 25일부터 5일간
세계일보	2002년 3월 28일	- 아태 원자력협력기구 사무소 국내 개설
대전매일	2002년 3월 28일	- 아시아·태평양 원자력협력기구, 사무소 원자력(연)에 개소
대덕넷	2002년 3월 28일	- RCA 지역사무소 본격 출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RCA 관련 주요행사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할 수 있으며, RCA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특히 RCA 지역사무소의 우리나라 유치에 RCA 사업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고, 국제협력에서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역할이 예상된다 고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국제파트너십 증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RCA 활동이 기존의 틀을 넘어 더욱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지역 회원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연구협력방안을 발굴, 시행함으로써 이 지역 회원국가들의 관심과 협력을 적극 유도해 낼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이러한 RCA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RCA 분야에 다년간 경험이 있고 이들 회원국간에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있는 RCA 홍보전문가를 양성, 활용한다면 이 분야에서의 다양한 정보 획득, 나아가 국가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여 백

## 제6장 향후 RCA지역사무소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 제1절 독립된 법인격의 확보

현재 RCA지역사무소는 2002년 3월 출범 당시, 사무소 행정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KAERI 소장 산하 기구로 편제되어있다. 당시 사무소를 대전의 KAERI 구내에 설치하고자 했던 이유로서는 우선 서울에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하려면 예산상 많은 부담이 있었으므로 KAERI에 설치한다면 사무실 공간을 거의 무상으로 활용할수 있었다는 점, 예산집행 등 KAERI의 행정지원을 받을수 있다는 점, 상당수 RCA 행사가 KAERI를 중심으로 대전에서 열리므로 연계성이 있다는 점, KAERI에 INTEC 등 우수 시설이 있으므로 RCA 사업을 발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그리하여 과기부와 KAERI가 협약을 체결하여 인사와 회계의 독립성을 갖는 KAERI 소장 산하의 특별 부서로 설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무소 자체로서는 독립된 법인격이 없으므로 자체적으로 계약, 구매, 자산관리, 인사를 할수 없는 입장이다. 이는 대외적인 관점에서 볼때 RCA 사무소가 한국정부의 부속 기구라는 인식만을 심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회원국을 대표하는 지역협력기구라는 독자성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이는 당초 회원국들이 사무소 설치를 지지하고 합의하였던 내용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행정 편의에 따른 체제에서 벗어나 독자성을 갖는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사무소 자체로서 별도의 법인격을 가져야 한다. 국내법에 의한 법인격을 취득하려면 법원에 법인체로登記되어야 한다. 비영리의 사단법인이던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법인이던 법적 기본 요건으로 일정한 기금이 있어야 하며 아울러 이사회가 구성이 되고 정관이 완성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국내에서의 법인격 확보를 위해 별도의 국내인을 위주로 하는 이사회를 설치하기 된다면 RCA 전체 회원국을 대표하는 위치에서의 사무소로 인정받기 어렵다. 전체 회원국들은 사무소에 이사회 형식의 상설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합의한바 있다. 그 자문위원회와 법인체 이사회와의 역할 정립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 사무소 의사결정의 최고기구인 전체 회원국을 대표하는 자문위원회이다. 현재의 잠정운영 기간 중에는 6명 위원으로 구성된 임시자문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호주, 중국, 인도, 방글라데쉬, 한국, 그리고 투표권이 없는 IAEA/RCA Coordinator 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소 운영의 정책 결정은 자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국가대표자 회의가 수행한다. 자문위원회는 전체 국가대표자들의 위임을 받은 기구이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별도로 구성되는 법인 이사회가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맡아 할수 있는지 검토되어야 할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사무소가 국제기구로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제2절 국제기구로서의 위상 정립

사무소는 회원국을 대표하는 기구라고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독립적 위상을 가지고 활동하기가 어렵다. 정당하게 인정받는 국제기구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한국 정부의 산하단체라는 인식을 받으며 일정 한도 내에서의 활동밖에 할수가 없다. 국제기구의 성격을 가지자면 크게 세가지 방안이 있다. 첫째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국제기구의 산하기구로서 인정받는 것이다. IAEA는 기존의 국제기구로 UN 전문기구이다. IAEA 직원들은 국제공무원이다. IAEA 정규 직원은 국제공무원으로서 면책 특권을 가지며 일정한 수준의 직원은 외교관 신분을 가진다. IAEA는 본부 이외에 2개소에 사무소를 두고있다. 토론토와 도쿄이다.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본부 근무의 직원과 동일하게 면책 특권이 있으며 일부는 외교관 신분을 갖는다. 그러나 RCA 사무소는 IAEA 사무소가 아니다. IAEA는 RCA의 당사국이 아니다. 다만, 행정지원을 하는 사무소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아무튼 RCA 사무소가 IAEA와 많은 관련이 있다고 하지만 IAEA가 RCA 협정의 당사국이 아니므로 사무소가 IAEA와 연계될수는 없다. 만일 RCA 사무소가 IAEA의 산하 지역 사무소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RCA 사무소 직원은 면책 특권을 가지게 되며 사무소장은 외교관 신분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IAEA로서는 RCA 사무소를 산하 기구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회원국들도 사무소가 IAEA에서 독립되어 운영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무소가 IAEA 산하 조직으로 될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두번째 방안은 회원국들이 협약을 통하여 사무소를 국제기구로서 설치토록 하는 것이다. RCA의 경우, 조약 성격의 협정이 있다. 이 협정을 개정하여 사무소 설치항목을 추가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전체 회원국들의 일관된 협조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부 회원국은 협정 개정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RCA 협정은 각국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의 비준을 받아 효력을 발생한 것이다. 협정의 내용을 개정한다면 다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일본이나 호주의 경우에는 5년을 보고있다. 국정이 불안한 국가에서는 언제 국회가 해산될지 모르며 언제 장관이 바뀔지 모르는 형편이므로 국가 차원에서의 비준을 기약하기는 어렵다. 또하나 간과할수 없는 사항이다. 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노력을 들여서 RCA 협정을 개정하였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사정상 사무소가 폐쇄된다면 다시 협정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롭고도 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무소를 전체 회원국의 지지와 합의를 통해 설치하긴 했지만 아직도 일부 회원국은 이 사무소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또한 과연 필요한 기구인지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제3절 사무소 자문 기구의 집중화 및 활성화

현재 사무소 운영 관리 및 사업에 대한 자문기구로서는 2002년 3월 한국에서의 25차 국가대표자회의에서 구성한 자문위원회가 있다.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02년 7월 비엔나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같은 해 9월 역시 비엔나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사무소의 법적 기반 구축을 위한 조치를 협의하였다. 현재는 사무소가 잠정운영기간 중이므로 이 자문위원회도 잠정이며 사무소가 본격 운영에 들어감과 함께 상설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된바 있다. 그러므로 이 사무소 자문위원회가 사무소 운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회원국을 대신하여 자문하고 협의하며 의사 결정을 하는 기구이다.

다른 한편으로 현재 과기부가 사무소 운영자문을 위하여 사무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과기부 원자력국장, 당연직 위원으로서는 과기부 원자력협력과장 및 RCA 사무소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 3명을 제외한 위원들은 RCA 각 사업분야를 대표하는 국내 전문가로 선임되어 있다. 농업(농진청), 보건(원자력병원), 산업(KAERI), 방사선방호(KINS), 연구용원자로 및 에너지(KAERI), 방사성폐기물관리(한수원), 환경(KAERI) 등 주제 분야별로 국내 관련기관의 중견 간부급을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만일 과기부의 운영위원회가 사무소와 과기부간의 업무 연계, 사무소와 외교부, 예산처 등 다른 정부 부처와의 업무 연계, 사무소와 국내 원자력 산업체간의 업무 연계 등을 자문하고 지원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고 필요성이 인정되겠지만 사업 계획, 예산 집행등 사무소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이라고 한다면 이는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역할과 혼선이 있을 수 있다.

RCA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을 위하여 사무소는 국내 우수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RCA 업무에 경륜과 지식이 풍부한 외국 전문가들로서 기술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계획으로 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라고 할수 있다. 국내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국의 입장을 떠나서 지역의 관점에서 앞으로 RCA 사업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것은 환영받을 일이다. 그리고 이들의 제안에 대하여 국제적 인정을 받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 전문가의 추가 자문을 받겠다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사업에 대한 자문은 사무소가 별도로 진행중이므로 과기부의 운영위원회 역할에 대한 재 검토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 제4절 사무소의 국제화

현재 사무소 요원은 국장 1인, 사업 담당 1인, 행정 담당 1인, 비서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 1월부터는 홈페이지 담당 요원 1인, 비서 1인을 추가 채용하였다. 사무소는 앞으로 회원국으로부터 요원을 파견받아 사업 추진, 정보 네트워킹 업무 등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 사무소는 이미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 예비 접촉을 하였으며 IAEA와도 사전 협의 하였다. IAEA 측은 2003~04년도 국가 사업에서 회원국들이 이미 신청한 Fellowship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사무국 Fellow로 요청한다면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로 회원국들이 IAEA 정규 기술협력에 의한 훈련생 요청 Portion을 사무국 요원 파견으로 변경하여 지원해 줄지는 미지수이다. IAEA 자체 행정 절차상의 복잡함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른 시일 안에 회원국으로부터의 Fellow 파견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사무소가 국제 기구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회원국 요원의 공동 근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사무소가 외국 직원을 파견받아 함께 근무할 경우, 국제기구로서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국제화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다른 사항은 차치하고서라고 사무국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서와 업무 협의는 공용어인 영어로 진행되어야 한다. 구매 계약 등 예산 집행은 당분간 기존의 한국 관행대로 한글로 한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국제기구답게 공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앞으로 혹시 사무소장이 공개 모집에 따라 외국인이 선임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전체 사무국 직원이 영어 능력이 탁월해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에 회원국들도 한국 정부의 사무소 지원에 대한 노력을 보다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 제5절 사무소의 위치에 대한 검토 필요

현재는 여러 편의상 사무국이 대전에 위치하고 있다. 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 건물의 3층 2개 방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부족하다. 앞으로 외국인 직원이 부임한다든지 또는 IAEA Fellow 가 파견될 경우를 생각하여 추가로 사무실이 필요하며 사무국 전용의 회의실도 있어야 한다.

현재의 대전 위치는 KAERI, KINS, NETEC, KEPRI, KAIST 등이 있으므로 편리한 점도 있지만 앞으로 사무소에게 부여된 본연의 업무인 RCA 인식제고 및 새로운 파트너 모색을 위해서는 서울이 보다 효과적이다. RCA 회원국의 공관들이 모두 서울에 있으며 UNDP 등 국제기구도 모두 서울에 있다. 또한 가장 빈번한

접촉이 있어야 하는 MOST, 외교부도 서울에 있다. 그리고 원자력 산업체의 본부도 대부분 서울에 있다. KIRAMS, KOICA, KISTEP 등이 서울에 있으며 농진청, 국립수의과학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식약청 등이 서울 근교에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들 기관과의 빈번한 접촉을 고려해서 현재의 대전보다는 서울이 사무국 위치로서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사무소가 국제기구로서의 위상을 견지하려면 아무래도 서울 위치가 더 효과적이다. 정부의 검토가 필요하다.

## 건의사항

### 1. 시급한 법적 조치의 완비

2002년 9월 비엔나에서의 31차 RCA 총회에서 그동안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였던 사업계획서 (Working Paper)는 최종안이 완성되어 채택되었지만 실제로 지역 사무소의 법적 위치를 표명하는 문서는 작성되지 못하였다. 원칙적으로는 전체 회원국이 찬성하는 협정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리하여 본 협정의 부속협정 체결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었다. 그러나 이 역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자문위원회와 IAEA는 총회 결정사항 (Resolution)으로 만들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세웠다. 현실적으로는 가장 용이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차기 총회에서는 이 사항이 성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IAEA가 지역사무소 운영에 관한 새로운 제안을 한 상태이므로 우선 이 사항에 대한 결론이 나와 할 것이다.

### 2. RCA지역사무소 상임 자문위 운영의 필요성

현재 RCA 지역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5개국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자문위원회 (Interim Advisory Committee)의 주요 목적은 지역사무소가 정상 운영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회원국을 대표하는 이 자문위원회는 사업계획서, 각종 기준 등을 검토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31차 총회에서 이들 문서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 자문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지역사무소의 임시운영기간중에 한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임시운영기간이 지나서라도 지역사무소의 업무를 자문할 수 있는 상설자문위원회 (Standing Advisory Committee)을 구성하여 활용토록 함이 지역사무소의 위상 제고와 대표성 제고에 도움을 줄 것이다. 상설 자문위원회는 5개국이 초과하지 않도록 소규모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 물론 IAEA를 대표하여 RCA Coordinator가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3. 사무소 스태프 보강의 필요성

현재 임시운영기간중 사무소 직원은 사무소장을 비롯하여 사업담당 1명, 행정담당 1명, 비서 1명, 그리고 아르바이트 학생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폭주하는 업무를 처리하는데에는 이들 스태프만 가지고는 역부족이다. 그러므로 스태프 보강을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 사무소 스태프는 우선 영어에 능통해야 하며 다음으로 원자력 기술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한다. 사

무소장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스태프 보강의 방안으로는 능력 있는 인물을 발탁하여 채용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할 때에 용이한 일은 아닐 것이다. 다만, 앞으로 인터넷 활용이 대폭 증가할 것이므로 홈페이지 운영 등 이 분야 전문 인력의 보강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IAEA Fellowship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미 지역사무소는 중국, 베트남등의 고위 관계관과 접촉하여 이들 국가에서 IAEA 훈련생을 추천하여 지역사무소에서 근무토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IAEA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CFE의 활용도 고려해 볼직하다. 그러나 이 경우, 회원국으로부터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국내 기관에서 CFE를 받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4. IAEA의 새로운 제안에 대한 수용여부

IAEA 제안은 실로 IAEA TC사업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변화로서 이를 한국 정부가 수용하느냐는 여부는 앞으로 RCA 사업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IAEA의 생각은 앞으로 RCA등 지역협력협정에 의거한 업무는 지역중심으로 운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즉, 회원국에 의한 오너쉽 증대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 첫 시도를 4개 지역협력협정중 가장 연륜이 오랜 RCA 부터 적용해 보겠다는 것이다.

한국이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였지만 이 사무소가 본래 취지대로 RCA에 대한 인식을 증대하고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모색하는 일에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IAEA 및 회원국들은 지역사무소의 존재에 대하여 회의를 품을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지역사무소는 1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발족하였고 그동안의 과정에서 전체 회원국들은 지역사무소의 중심역할을 인식 증대 (RCA의 미래를 위한 Visibility 제시 포함), 새로운 자원 모색으로 집약하였음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두가지 중심 역할은 결국 RCA가 IAEA 이외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IAEA는 현재 RCA 전체 사업예산의 80%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20%정도는 EB 기여금, 또는 Footnote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IAEA는 EB 및 Footnote 자금의 규모를 확대하므로서 자체 부담을 축소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는 2000년 1월부터 UNDP가 그 때까지 재정 지원하여 오던 일부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나서부터 제3의 기관에 의한

재원확보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RCA 지역사무소가 국제기구를 상대로 재원확보 활동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역사무소의 법적 위상이 IAEA에 비하여 미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IAEA로서는 자체 고위직 직원인 RCA Coordinator를 지역에 파견하여 지역사무소 본연의 업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한국정부는 RCA지역사무소 사무소장으로 한국인 이외의 다른 회원국 인사가 선정되었을 경우, 급여를 출신국이 부담토록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만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회원국은 극히 한정되어 있다. 더구나 그럴만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RCA지역사무소에 인력과 예산을 투자할 타당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므로 IAEA로서는 만일 RCA Coordinator가 지역사무소장을 겸직하게 된다면 모든 회원국이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무소장 경비의 출신국 부담이라는 숙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로서는 금번 IAEA의 이 같은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서 가능한 상호 명분과 이득을 함께 얻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부 록

1. 아·태원자력협력협정사무소 운영지원사업 처리규정
2. RCA 30주년 기념 과학 포럼 기념강연 내용
3. 과학기술부/한국원자력연구소 보도자료/언론기관 보도내용
4. RCA국가대표자회의 및 RCA지역사무소 개소식 사진
5. 2002년 9월 31차 총회에서 채택된 RCA지역사무소  
설치 사업계획서
6. RCA 지역사무소장에 대한 고용계약서 초안
7. 2002년 9월 31차 총회에서 최종 채택된 RCA지역사무소  
자문위원회 운영기준



# 여 백

## 아·태원자력협력협정사무소운영지원사업처리규정

과학기술부 훈령 제 90 호

### 제1장 총 칙

####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핵과학및기술의연구,개발및훈련에관한지역협력협정(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에 근거하여 아·태지역 회원국간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연구 및 개발과 실제 응용을 촉진하는 협력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회원국간 합의에 의해 한국에 설치되는 아·태원자력협력협정사무소(이하 "사무소"이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재원)

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출연금과 회원국 부담금 및 기타 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 제 3조(사무소 설치)

사무소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설치하며, 연구소의 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은 사무소가 아·태지역 회원국간 기술협력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사, 회계 등에서 독립성을 부여하고, 이의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

### 제 2장 사무소 운영위원회

#### 제 4조 (위원회의 설치)

① 사무소 운영지원사업에 대해 과학기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아·태원자력협력협정사무소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매년도 사무소 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의 선임과 사무소 소속 직원의 채용 등에 관한 사항
3. 운영 실적평가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 5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사무소장의 선임시에는 사무소장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1. 사무소장
  2. 과학기술부 원자력협력과장
  3. 위원장이 위촉한 산·학·연 전문가
- ③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부 원자력협력과장이 된다.

##### 제 6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제 7조 (회의의 개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토록 한다.

##### 제8조 (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9조 (수당지급)

위원회의 참석위원에 대하여는 운영지원사업의 사업비에서 회의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10조 (전문가의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등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 3장 지원절차

### 제 11조(운영계획의 제출)

사무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연도 사업착수 1개월 전까지 장관에게 다음연도 사무소 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 12조(사업비 계상 기준)

사무소장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계획을 제출할 때, 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비목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인건비 : 사무소 소속인력의 인건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기본연봉수준, 경력 및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직원별 직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사무소장 : P-5급
  - 나. 프로젝트 담당관 : P-4급
  - 다. 행정담당관: P-3급
  - 라. 사무원: G-4
2. 직접경비 : 연구소가 정한 기준이나 원가계산 등 일반관례에 따라 실 소요비용으로 계산하되, 세부비목은 다음 각목과 같다.
  - 가. 여비 : 사업수행을 위한 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등
  - 나. 기술정보활동비 : 국내외 세미나 개최 및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사용료, 도서등 자료 구입비, 기술정보 수집비, 해외교육훈련비(학비보조는 제외), 국내외 전문가 초청경비, 자문료, 회의수당,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등
  - 다. 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전자계산장비, 응용프로그램 포함) 구입비 및 구입 부대경비, 외부 기자재 임차료, 운반구 구입비 등
  - 라. 재료 및 전산처리비 : 내구년수가 1년 이하인 재료등의 구입비, 사무용품비, 전산처리비 등
  - 마. 수용비 및 수수료 : 인쇄·복사·인화료,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제세공과금, 공공료, 제수수료 등
3. 간접경비 : 당해 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간접경비로서, 사무소 소속인력 이외의 지원인력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의 세부비목으로 구성된다.

### 제 13조 (운영계획의 승인 및 협약체결)

- ① 장관은 운영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연구소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

### 제 14조 (사업비의 지급)

장관은 사업의 추진상황 및 정부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시 또는 4회 이내로 분할하여 사업비를 지급한다.

제 15조 (사업비의 관리·사용)

사무소장은 연구소가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마련하고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소장은 이의 관리를 위한 사무소장의 지원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4장 운영결과의 평가 등

제 16조 (운영결과의 접수 및 평가)

- ① 사무소장은 매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장관에게 운영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운영결과를 위원회를 통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영지원사업에 반영한다.

제17조 (실태 조사 등)

- ① 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결과의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소장 및 사무소장의 사업수행 실태에 대해 현장조사·확인할 수 있다.
- ② 장관은 평가나 조사·확인결과 법령이나 협약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시정조치 요구, 협약 해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8조 (잔액처리 등)

장관은 사업종료 후 정부출연금(이자수입을 포함한다)의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시행기간) 이 규정의 시행기간은 아·태 원자력 협력협정사무소가 "핵과학및기술의연구,개발및훈련에관한지역협력협정"에 의거 국제기구로 출범할 때까지로 한다.

제 3조(기타) 제 11조와 관련, 2002년도 운영계획서는 사무소 설립 후 가능한 조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RCA 30 주년 기념 과학 포럼 기념강연 내용

○ 주요 강연 내용 및 강연자 현황

강 연 제 목	강 연 자	비 고
○ RCA의 발전취와 미래방향 - 원자력발전 협력사업의 선택은 지역 발전을 위한 길	아난드(Anand) 박사 인도 원자력연구센터 특별자문위원	전 RCA 인도 대표 2000 RCA 총 회의장
○ 인간의 기본요구를 위해 봉사하는 원자력기술 - 지구적 식수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췌우드리(Choudhury) 박사 방글라데시 원자력위원회 위원	RCA 방글라데시 대표 2001 RCA 총 회의장
○ 원자력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도전 - 보다 발전된 산업활동과 보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	마치(Machi) 박사 일본 원자력산업회의 상무이사	전 IAEA사무차장 RCA 조정관
○ RCA의 협력증진방안 - 지역사회에서 RCA의 위상제고를 위한 방안	이지(Easey) 박사 호주 원자력과학기술기구 연구위원	전 RCA 조정관
○ 자립적 경제개발을 향한 RCA의 역할 - 지역내 복리증진과 관련한 문제점 그리고 해결 전략	이병휘박사 한국 과학기술원 명예교수	1987 RCA 총 회의장

## RCA의 발자취와 미래 방향

### - 원자력발전 협력사업의 선택은 지역발전을 위한 길 -

A. K. Anand

인도 바바원자력연구센터 특별 자문위원  
전 RCA 인도 국가대표, 2000년도 RCA 총회 의장

1. 일찍이 1964년 인도와 필리핀, 그리고 IAEA의 3자가 연구용원자로 분야 공동협력을 위해 IPA (India-Philippines-IAEA)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아시아 지역 원자력 공동협력의 첫 출발로서 오늘날 아태지역 원자력협력 체제인 RCA의 선구적인 역할을 한 것이었다. 당시 추진되었던 사업은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한 중성자 빔 실험이었다. 이 프로그램에는 인도네시아, 한국, 태국, 그리고 당시 대만이 참여한바 있다. IPA 위원회의 의장은 라만나 (Raja Ramanna) 박사였다. 라만나 박사는 바바원자력연구센터 (BARC) 소장을 지냈으며 지금은 인도 의회의 존경받는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 1969년부터 1972년에 이르기까지 인도가 주도한 IPA에 지역내 다른 국가들도 참여하기를 희망하였다. 결국 IPA를 보다 확대 발전시키자는 희망은 동남아와 태평양 지역, 그리고 극동지역 국가까지도 포함하는 새로운 원자력분야 지역협력 체제의 설립으로 연계되었다. 이에 따라 1972년 IAEA 주도로 현재의 RCA가 출범하게 되었다.

3. RCA가 출범한 1972년에는 회원국이 11개 였다. 그러나 다음해에는 14개 회원국이 되었다. 현재는 지역내 17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있고 앞으로도 지역내 2-3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동참할 전망이다. 현재의 RCA 협정은 1987년에 기본이 마련된 것이다. IAEA의 RCA 지원업무는 RCA가 설립된 후부터 1985년까지 연구 및 동위원소부 (Research and Isotope)에서 관장하였다. 그러다가 1985년 이후부터는 IAEA의 기술협력부 (Technical Cooperation)에서 맡게 되었다. 1972년부터 1996년까지의 25년을 기반조성을 위한 제1기라고 한다면 1997년부터 오늘의 2002년까지는 발전을 위한 제2기이고 이후부터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3기에 해당한다.

4. 출범이후 첫 25년 동안 RCA는 지역이 안고 있는 산업, 농업분야에서의 문제점들을 원자력 기술로 공동 해결하는데 많은 비중을 두었다. 회원국들은 그 성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하였다. 첫 25년 동안 RCA는 약 65 건의 개별 프

로그래밍 추진을 통하여 약 270회의 공동연구 회의와 지역훈련과정을 개최하였다. 이 기간동안 RCA를 통하여 훈련받은 지역요원을 1천 2백여명에 이른다. 훈련과 공동 자문회의의 주제는 식량과 농업, 원자력 에너지, 기초 원자력 기술 개발, 보건, 산업, 방사선 방호, 연구용 원자로 이용증진등 다양하였다.

5. 1997년은 RCA로서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한 계기였다. 실상 원자력 기술협력 사업에 대한 IAEA의 정책은 1995년과 1996년 사이에 두드러진 변화를 내포하고 있었다. RCA 정책도 이같은 IAEA의 새로운 정책에 부응해야 했다. RCA 프로그램에 있어서 주인의식 (Ownership) 개념은 IAEA가 1995년에 처음 제시한 것이었다. RCA 사업 운영에 있어서 RCA 회원국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사업수행을 주도하는 주도국가 (Lead Country)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RCA 운영규정 및 지침이 완성되어 사업수행에 따른 주도국가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이밖에도 RCA의 오너쉽을 증대하기 위한 몇가지 안이 제시되었다. RCA 지역사무소의 필요성도 대두된 것은 그러한 오너쉽 증대 방안의 하나였다.

6. 지난 5년 동안 RCA 회원국들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원자력 기술을 보다 폭 넓게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 기간동안 RCA 지역 훈련과정이 111회였으며 기술자문회의가 82회로서 모두 203회의 사업수행이 있었다. 이것은 지난 25년간의 275회 사업수행과 비교할 때 상당한 증가가 아닐 수 없으며 이것은 곧 지역이 필요로 하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

7. RCA의 여러 사업중에서 연구용 원자로 응용 사업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RCA의 전신인 IPA가 연구용 원자로 사업부터 착수한 것은 의미 있는 발자취이다. 연구용 원자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동위원소 생산으로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기 때문이다. 연구용원자로를 통하여 원자력 발전에 대비한 인력양성을 할 수 있으며 원자력 발전과 관련되는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수행할 수 있다. RCA 회원국들은 전세계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는 50%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발전과 진보를 측정하는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는 전력 사용이다. 원자력발전은 아시아 지역에서 당연한 선택이다. 현재는 RCA 회원국 중 5개국 정도만이 원자력 발전으로 국가 에너지 공급에 기여하고 있으나 앞으로 환경문제, 화석 에너지 자원의 고갈 문제 등을 고려 할 때 원자력 발전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RCA도 지역내 원자력 발전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에 시야를 돌려야 할 것이다.



인간의 기본 요구를 위해 봉사하는 원자력 기술  
- 지구적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N. Choudhury

방글라데쉬 원자력위원회 위원

방글라데쉬 RCA 국가대표, 2001년도 RCA 총회의장

1. 지난 세기에 세계 인구는 세배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깨끗한 물 소비는 여섯 배로 늘어났다. 만일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지 못한다면 세계 인구의 절반은 물 기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농업, 산업 그리고 일반 생활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세계수자원위원회의 보고서도 이 사실을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다.

2. 40년전 세계인구는 30억명 이었다. 현재는 60억명이다. 2050년까지는 90억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인간 생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인구 증가에 뒤따르지 못한다. 우리는 물 없이 3일을 견디어 내기 어렵다. 오늘날 세계 인구 5명중 한 명은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물을 접하고 있지 못하다. 매년 3백만명 이상이 물로 인한 질병 때문에 사망하고 있다. 그 중 2백만명은 어린이이다.

3. 지구를 살펴보면 지구 표면이 푸른색 수자원으로 덮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구 표면의 물 중에서 95%이상이 짠 바닷물이거나 염분이 들어있는 것이다. 나머지 3% 중의 75%는 극지방의 얼음이거나 빙하이다. 실제로 인간이 쓸 수 있는 물의 양은 전체 지구상 물의 1% 중에서 10분의 1에 불과하다. 옛 바다사람이 탄식했듯이 '사방이 온통 물이지만 먹을 물은 한방울도 없도다' 이다.

4. 방글라데쉬의 물 사정은 정말 위험수위이다. 일견 방대한 갠지스 강 삼각주 등으로 수자원이 풍부할 것 같지만 이 나라는 물에 의한 질병으로 보이지 않는 비극에 직면하여 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농촌지역에서는 식수를 자연적으로 있는 물웅덩이에서 길어서 썼다. 물에 의한 질병 때문에 매년 약 25만명의 아이들이 생명을 잃었다. 그 후 거의 모든 농촌에서는 우물을 파고 그 물을 쓰게 되었다. 우물물은 농촌수의 97%나 차지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 설사 질환이 대단히 줄어들게 되었다. 이렇듯 우물물은 수많은 생명을 건지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제 그 우물물 때문에 또 다른 심각한 위기에 당면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방글라데쉬의 우물에서는 표준치를 훨씬 넘는 비소가 발견되고 있다. WHO가 정

한 기준치에 비하면 무려 46배나 높은 것이었다. 전체 우물의 27%에서 그런 사실이 밝혀졌다. 주로 지하 150 미터 깊이의 지하수 우물이었다. 이로써 약 5천7백만명이라는 막대한 주민이 우물물을 마시므로서 농축된 비소도 함께 마신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 3천 5백만명은 리터당 50 마이크로 그램의 비소를 흡수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나머지는 리터당 10 마이크로 그램을 흡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비소를 마시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질병으로 이어지는 사실은 비단 방글라데쉬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멕시코, 대만, 인도, 몽골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등등의 수백만 주민들이 비소 함유량이 WHO가 정한 기준보다 훨씬 높은 물을 마시고 있다. 비소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이다. 하지만 독성이 있다. 125 그램만 투입하면 단번에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 아주 조금이라도 비소가 함유된 물을 오래 마시게 되면 건강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지하수의 품질을 파악하는 것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다. 우물을 아주 깊게 파는 것은 비소에서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6.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물의 성분을 분석하고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예는 재래적인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이런 방법들은 더디고 정확하지도 않으며 더구나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는 그런 장비조차 확보하기 힘들다. 동위원소를 이용하면 지하수의 움직임과 품질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무거운 동위원소를 다른 수문학(水文學)적 및 지질학적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아프리카와 서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동위원소를 이용한 지하수 조사를 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바 있다. 인도에서는 동위원소 기술을 이용하여 건조하고 메마른 지역에서의 지하수 재충전 과정을 밝혀낸바 있다. 에티오피아와 알제리아에서는 동위원소기술에 수문학적 경험을 살려서 실질적이고도 종합적인 지하수 관리 대책을 수립할 수 있었다.

7. 방글라데쉬에서는 IAEA 기술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1999-2000년 수자원 조사 사업을 수행하였다. 기본 목적은 지하수 계층별로 각기 다른 수맥에 대한 동위원소 함유 데이터를 얻는 것이었다. 동위원소 기술을 이용하여 비소 함유량을 측정할 수 있었다. 심층 수맥에서 비소가 없는 양질의 음용수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심층 지하수는 별로 오염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원자력기술을 이용하면 수자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이것은 주민의 건강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더 세밀하고 실질적인 응용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RCA를 통한 지역협력은 지역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크다.

원자력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도전  
- 보다 발전된 산업활동과 보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 -

Sueo Machi (町末男)  
일본원자력산업회의 상무이사  
전 IAEA 사무차장, RCA 조정관

1. RCA는 현대 원자력 기술을 보전, 산업, 농업의 여러 분야에서 활용토록 함으로서 국민 복지 향상과 경제 발전을 이루는데 많은 기여를 해 왔다. RCA는 최근 원자력 기술을 환경보호에 이용하는데 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 세계적 관심 사항인 환경보호에 부응하기 위해서이다. 원자력 기술은 개발 가능성이 무한한 분야이다. 새로운 원자력 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원자력 평화 이용의 새로운 지평선을 열어 나가는 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이다.

2. 환경보호를 위한 원자력 기술의 이용 가능성은 매우 많다.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하는 산업 공장 (발전소 포함)으로부터의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기술, 산업 폐수와 같은 폐기물을 정화하는 기술은 매우 전망이 밝은 필요기술이다.

3.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 또는 발전소로부터는 SO-2와 NO-x가 배출되어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오염은 산성비의 원인이 되며 온실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첨단 원자력 기술인 전자 빔 (Electron Beam)을 이용하여 SO-2와 NO-x를 동시에 제거 할 수 있는 기술이 일본 다카사키 (高崎) 방사선연구소를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이 기술은 독일, 폴란드, 중국 그리고 브라질 등에서 직접 활용되고 있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사업 배기가스가 굴뚝을 통하여 배출되는 경로에 방사선 조사 (照射) 반응기를 설치하여 이를 통과하도록 한다. 여기에 가스 상태의 암모니아를 소량 뿜어 나오도록 한다. 그렇게 하면 반응기로부터 방출되는 전자빔이 배기 가스와 반응하여 SO-2는 황화 암모니움으로, NO-x는 질산 미립자의 혼합 물질로 바뀌게 된다. 이 기술은 환경 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SO-2와 NO-X를 정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혼합물은 바로 농업용 비료로 만들어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처리과정에서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도 잇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산업시설에서의 SO-2와 NO-X 제거를 요구하는 엄격한 환경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산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4. 폴란드에서는 석탄 사용 공장에서 나오는 배기 가스를 충분히 정화할 수 있

는 전자 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효과를 보고 있다. 2000년 12월 설치되었다. 이 사업은 IAEA 기술협력 프로그램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 공장에서는 SO-2 90% 이상과 NO-X 85% 이상을 10 킬로 그레이 정도의 방사선을 쬐여 제거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시설용량 220 메가와트의 주부(中部)전력 소속 중유사용 발전소로부터 나오는 배기가스를 정화할 목적으로 대규모 방사선 조사 시설이 설치되어 시범 운영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석탄 발전소에서 나오는 SO-2를 제거하기 위해 전자빔 시범시설을 설치하여 2년동이나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곧 두 번째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5. IAEA는 일본 전문가와 공동으로 경제성 평가를 하였다. 초기 투자비와 운전 비용을 고려하여 기존 기술과 비교하였을 때 전자빔을 이용하는 기술이 훨씬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기술의 대표적인 것은 석회와 촉매를 함께 사용하여 SO-2와 NO-X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술을 이용하면 부산물로 상당량의 석고가 생산된다. 석고를 별다르게 사용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이것이 폐기물로서 부담을 준다. 반면, 전자빔을 이용했을 때 생기는 부산물은 농업 비료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일이다.

6. 일본원자력연구소 (JAERI)는 지난해에 생활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을 제거할 목적으로 전자 빔 시범 시설을 설치하였다. 올해 2월 14일, 90% 이상의 다이옥신을 15 키로 그레이 (kGy) 정도의 전자선 조사로 제거할 수 있음이 공식 발표된바 있다. 앞으로 산업화가 유망한 분야이다.

7. 원자력기술을 이용하여 산업 폐수를 정화하는 사업은 한국에서 시범을 보여 대단히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대구에 있는 염색공장에서는 염색 폐수를 전자빔으로 처리하여 정화하고 있다. 현재 시범시설 운영을 통하여서는 하루 1천 입방미터의 폐수를 처리하고 있지만 앞으로 IAEA 와의 기술협력을 통하여 하루 1만 입방미터의 폐수처리 실용규모의 시설을 설치코자 하고 있다.

8. 방사선과 동위원소를 산업에 응용하면 공정 개선, 품질 제어, 환경 보호라는 1석 3조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면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하다. 방사선과 동위원소를 산업 발전과 환경 보호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산업계가 직접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는 원자력 기술개발에 RCA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RCA의 협력 증진 방안

### - 지역 사회에서 RCA의 위상제고를 위한 방안 -

John Easey

호주원자력과학기술기구 (ANSTO) 연구위원

전 RCA 조정관

1. RCA는 IAEA의 주도로 출범하였고 그 동안 IAEA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으면서 30년의 연륜을 쌓아 왔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과 함께 RCA 사업을 IAEA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RCA가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없을까 하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다. RCA 사업은 회원국들 스스로가 개발하고 추진하며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였다. 이제 RCA는 지역내 각 회원국들이 어떤 분야에서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어떻게 하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RCA 사업의 RCA 회원국에 의한 오너쉽(Ownership) 증대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었다.

2. 1996년 때마침 RCA 설립 25주년에 즈음하여 향후 25년의 RCA 비전을 진단해 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처방해 보는 노력이 수행되었다. 그 결과 다음 5개 분야에 있어서 협력 사업을 집중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1) 식량과 영양의 확보와 안전성 - 경제적이고 영양가 높은 식량의 생산 (2) 보건 - 일반 대중에게 경제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건강 증진 (3) 산업 개발 - 경제 증진과 고용 증대 (4) 에너지 - 새롭고 경제적인 에너지원의 제시, (5) 환경 보호 및 방사선 방호 - 환경 친화적인 효율성 높은 기술 개발.

3.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이들 비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자면 몇가지 전제조건이 이행되어야 한다. 첫째는 RCA가 어떤 분야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일이다. 즉, RCA의 능력을 점검하고 위상을 높이는 일이다. 둘째,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자력 기술이 다른 기술에 비하여 어떻게 경제적으로 가치 있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이다. 또한 이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다른 협력기구와 연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일도 중요하다. 셋째, RCA만이 내세울 수 있는 특성을 강조하므로써 주위에서 RCA를 필요한 존재로 인식시키는 것이다.

4. RCA 위상 제고를 위한 종합 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제는 RCA로서 몇가지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고려해 볼 시점이다. 우선, 누가 RCA 사업의 최종 수

요자인지 파악하는 일이다. 개발된 기술은 활용되어야 한다. 누가 활용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다음으로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는 정보 사회이다. 필요한 정보가 필요한 대상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RCA의 기술과 새로운 정보를 누가 실수요자에게 전달하여 효과적인가를 짚고 넘어가야 할 때이다. 또 한가지는 이렇듯 실수요자를 파악하고 정보의 전달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들은 충분히 있는지, 또는 부족하다면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지를 강구하는 일이다.

5. 사람들은 대체로 RCA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설령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IAEA에 속해 있는 어떤 부서로 보는 경우가 있다. RCA는 회원국의 기구이다. 물론 RCA 사업의 대부분 예산이 IAEA로부터 지원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RCA가 회원국들만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비록 IAEA의 지원에 따라 RCA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해도 IAEA 자체의 규정, 절차, 기준의 테두리에 매어 있게 되면 바람직한 사업 추진을 어렵게 될 수도 있다. RCA 사업의 오너쉽 증대 문제가 대두된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6. RCA 25년의 비전을 달성하자면 새로운 기술, 실용성이 보이는 기술, 그리고 인적자원과 연구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 IAEA와 RCA 회원국들로부터의 지원금, 또는 기여금으로는 부족하다. RCA 사업의 증대와 함께 재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IAEA나 회원국 이외로부터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아태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재정 확보 노력이 있어야 한다.

7. 오늘날 각 회원국에는 RCA 사업을 통한 폭 넓은 기술이 축적되어 있다. 이 기술은 비단 원자력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과학기술 분야에까지 응용이 가능한 것이다. 이 기술을 다른 지역기구 또는 국제기구에게 제공함으로써 RCA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RCA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 한국에서 문을 여는 RCA 지역사무소는 RCA에 대한 대외적 인식을 높이고 RCA 이외의 기관 또는 협력체와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 RCA에 대한 창구는 IAEA의 RCA 조정관이 유일하다. 왜냐하면 회원국 대표인 의장은 매년 교체되기 때문에 대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IAEA와는 별도의 구성요원으로 설립되는 RCA 지역사무소는 사무소장이 앞장서서 독립적으로 RCA에 대한 이미지를 증진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 개인의 친분과 활동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8. RCA에 대한 인식 제고는 RCA 사업의 확대를 위해 기여할 뿐 아니라 RCA 25년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RCA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다. 각국의 국가대표는 RCA 사업 확대 증진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해야 할 것이다. RCA 지역사무소는 RCA 전략의 적극 추진에 핵심 역할을 맡아 하며 'RCA 이미지' 제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RCA의 성공은 회원국이 RCA 사업에 적극 참가하고 기여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겠다는 다짐에 달려있다. 이것이야말로 RCA 생애의 새로운 국면을 마련해 주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자립적 경제개발을 향한 RCA의 역할**  
- 지역내 복리 증진과 관련한 문제점, 그리고 해결 전략 -

**이병휘 (李炳暉)**  
한국과학기술원 (KAIST) 명예교수  
1987년도 RCA 총회 의장

1. 1970년도 초반, IAEA의 지원 아래 RCA가 처음 출범하였을 당시, 지역내 회원국들은 원자력기술의 새로운 이용으로 경제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넘쳐 있었다. 사실 당시에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한정된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였다. 연구, 개발, 훈련에 중점을 둔 사업이었다. IAEA가 이렇듯 방사선과 동위원소 이용의 기본에 중점을 둔 배경에는 이미 산업화된 지적재산 정보와 중복되는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측면도 있었지만 농축, 재처리, 중수 생산과 같은 민감 기술은 배제하므로써 핵 확산금지 규범의 요건에 부응해야 한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원자로 기술, 핵연료 사이클 기술은 제외되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년 동안 RCA 사업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원자력 협력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효과적으로 구축하였다는 것은 내세울 만한 성과였다. 가장 성공적인 것은 지역내 각 회원국의 기술 경제적 및 사회 정치적 인프라가 서로 다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공동 협력을 성공시킬 수 있는지 교훈을 얻은 것이다. 그 결과 각국은 자질 있고 유능한 원자력 기술 인력을 RCA 지역 훈련과정을 통해서 양성할 수 있었으며 이들에 의하여 원자력 기술의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

3. 원자력 기술을 지역사회의 경제 자립에 효과적으로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 수립, 사업 관리, 사업 추진의 모든 면이 성공적이어야 한다. 사업 운영면에 있어서 요원 훈련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적격자가 훈련을 받아야 함은 물론, 이들이 훈련을 받은 후 사회와 산업을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주시해야 한다. 각국에는 국가대표와 사업 참여 책임자들이 있다. 이들은 원자력 기술의 산업화와 실용화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개발된 기술은 이를 상용화하기 전에 시범 단계를 거쳐 기술경제성을 입증하는 일이 중요하다.

4. 일반 대중에 대한 이해증진은 원자력 사업의 실용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



는 사항이다. 원자력기술 개발이 왜 필요하며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얻어야 한다. 특히 원자력 일선 종사자에 대한 이해 증진은 매우 중요하다. 원자력 홍보 전략을 현실성 있게 수립하고 전문 요원을 양성하는 일은 원자력에 대한 이해증진 노력에 필수적이다.

5. RCA를 통하여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들이 과연 지역 사회와 회원국들의 요구에 맞는 것인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직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많이 있음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어떤 사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첫째, 기술 지원의 대상에 대하여도 깊은 고려가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대규모 산업체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기술지원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기술 지원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환경을 생각하는 원자력 기술지원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공장이나 발전소의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일, 공장 폐수를 정화하는 일은 가시적인 효과를 보는 것이다.

6. 셋째로는 날로 증대하고 있는 국가간, 지역간의 무역에 기여하는 일이다. 식품의 경우에 있어서 특히 그러하다. 지역내에서 건축 활동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원자력 기술은 아주 작은 분야에서도 커다란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빌딩 건물 자재의 습도 측정, 토양 상태의 분석, 하천 침적물의 이동 경로 측정 등에 추적자 (追跡子) 이용은 유용한 기술이다.

7. 오늘날 과학기술의 진보는 실로 눈부신 지경이다. 새로운 첨단 기술인 정보 기술 (IT), 생명공학기술 (BT), 나노기술 (NT) 등에 방사선 응용기술을 접목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속적 경제 개발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다. 선진 첨단 기술을 이른 시일에 이전 받는 일은 중요하다. 기술이전에는 새로운 형태의 재정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다시 말하여 RCA 사업들은 목표 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에 사회경제적 발전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8. RCA 사업의 운영 패턴을 종래부터 '톱 다운' 방식이었다. 결정하는 대로 따르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제로부터는 '바텀 업' 방식으로 변환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 기술을 활용 가능한 '엔드 유저' (최종 실수요자)를 고려하는 사업 수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엔드 유저의 참여를 권장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가장 훌륭한 관리 방안은 'Top Down' 방식과 'Bottom Up'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9. 아시아 지역은 급속한 경제 개발을 이룩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인구 증가도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지속적인 경제 개발을 위한 에너지 확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 보전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지역내 국가들이 어떠한 에너지 사용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RCA는 전통적인 방사선 응용 증진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겠지만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분야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지속적인 경제 자립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여 백

## 1. 과기부 보도자료

### - RCA, 제24차 국가대표자회의 및 RCA 사무소개소식 개최 - (3월 25~29일, 서울·대전)

과학기술부는 17개 RCA 회원국 국가대표자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24차 RCA 국가대표자회의가 3.25~29간 서울 팔래스호텔 및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최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동 회의기간중 RCA 사무소 개소식이 3.27 대전에서 개최되며, RCA 설립 30주년 기념강연회 및 패넬전시회도 함께 개최된다고 발표하였다.

#### <제24차 RCA 국가대표자 회의>

제24차 RCA 국가대표자 회의가 3.25(월) 09:30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채영복(蔡永福) 과학기술부 장관, IAEA 사무차장(Dr. Jihui Qian), 17개 RCA 회원국 국가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채영복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아·태지역 국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RCA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한국에 설치되는 RCA 사무소의 출범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과학기술부 조청원(趙靑遠) 원자력국장이 의장으로 3.25(월)에서 3.29(금)까지 개최되는데, 2003~2004 RCA 사업계획 및 규모, 차기 회의 개최국가 결정 등 중요사항들을 결정하게 된다. 3.25 저녁에는 채영복장관이 이번 회의 참석자들과 주한 RCA 17개 회원국 대사등을 초청, 환영리셉션을 개최할 계획이다.

#### <RCA 지역사무소 개소식>

RCA 지역사무소 개소식이 3.27(수) 17:00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과학기술부 유희열(柳熙烈)차관, IAEA 사무차장 (Dr. J. Qian), 17개 RCA 회원국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번에 한국에 설치되는 RCA 사무소는 연간 600만불에 달하는 RCA사업의 기획, 조정 및 UNDP, WHO, FA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 등 RCA 사무소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RCA는 1972년 설립되었으나, 그간 자체 사무소 조직이 없이 운영되어 오고 있었는데, 한국이 지난 2000.3 제22차 RCA 국가대표자회의(인도 뭄바이)시 한국 유치 제안을 하고, 2001.9 제30차 RCA 정기총회(오스트리아 비엔나)시 한국유치가

최종 결정된 바 있다.

### <RCA 설립 30주년 기념강연회 및 패널전시회>

올해는 RCA 설립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이번 회의기간중 30주년 기념강연회 및 패널전시회가 개최된다. 기념강연회는 3.25 14:00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되는데, 인도 원자력연구소 특별자문관 아난드박사(Anand), 방글라데시 원자력위원장 초우드리박사(Choudhury), 일본 원자력산업회의 상임이사 마치박사(March), 호주 원자력과학기술기구 이지박사(Easey), 한국 이병휘 과학기술원 명예교수 등이 특별강연자로 초청되어, 지난 30여년간의 RCA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전시회에서는 RCA가 그간 추진해 온 지역내·지역간 협력사업중 주요성과를 패널과 CD-ROM으로 전시될 계획이다.

#### \* <아·태원자력협력협정(RCA)>

- 아·태지역 국가간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하고, 지역의 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1972년에 체결
- 회원국(17개국):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인니, 말련, 싱가포르,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몽고, 호주, 뉴질랜드, 태국

## 2. 원자력(연) 보도자료

- RCA 지역사무소 개소식 열려 -

(3월 27일 오후 5시에 원자력(연)내 원자력연수원)

아시아·태평양지역원자력협력기구(RCA) 17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하는 제24차 RCA 국가대표자회의의 일환으로 RCA지역사무소 오프닝행사가 3월 27일 오후 5시 한국원자력연구소내 원자력연수원에서 국내외 귀빈을 모시고 개최됐다.

RCA지역사무소의 개소는 전체 회원국의 오랜 숙원으로써 그동안 우리 정부의 유치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RCA지역사무소는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에 설치운영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내 회원국의 원자력분야의 협력과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의 선진기술을 수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RCA 지역사무소는 17개 회원국들의 참여하에 운영되며, 사무소는 사무소장, 프로젝트담당관, 행정담당관 및 IAEA에서 지원하는 2~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 RCA 사무국 개소

서울경제 3월 20일

17개 RCA 회원국등 참가  
25일부터 국가대표자회의

과학기술부는 17개 아·태 원자력협력협정(RCA) 회원국 대표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5일부터 4일동안 국가 대표자 회의를 개최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서울 팔레스 호텔과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RCA 설립 30주년 기념강연회와 패널전시회도 함께 열린다. 기념 강연회에서는 RCA의 사업성과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27일에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유치한 RCA 사무국 개소식도 개최한다. 원자력연구소에 설치되는 RCA 사무국은 전문가 파견·기술훈련·세미나 및 장비지원 등 연간 600만 달러에 달하는 사업을 기획·조정하며 유엔 개발계획,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의 협력업무를 맡게 된다.

전자신문 3월 21일

RCA 사무국 한국에 설치  
27일 원자력연구소서 개소

'아태지역 원자력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과 관련한 협력 협정(RCA)' 사무국이 우리나라에 설치된다.

원자력연구소는 25일부터 29일까지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17개 RCA 회원국 국가대표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 등이 참여하는 '제24차 RCA 국가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27일에는 원자력연구소에서 RCA 사무국 개소식과 함께 RCA 설립 30주년 기념강연회 및 패널전시회를 마친다고 20일 밝혔다.

<대전=박희범기자 hnpark@etnews.co.kr>

한국경제 3월 20일

아·태 원자력협력회의  
25일부터 서울서 개최

제24차 아·태지역 원자력협력협정(RCA) 국가대표자회의가 25일부터 5일동안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RCA 국가대표자 회의에는 IAEA 사무차장인 자택이치엔 박사 등 17개 RCA 회원국 국가 대표자 1백50여명이 참석해 내년 RCA 사업계획, 차기 회의 개최국가 선정 등을 협의한다.

이번에 설치되는 RCA 사무국은 연간 6백만달러에 달하는 RCA 사업을 기획 및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초대 사무국장은 김진경 과기부 공업 부이사관이 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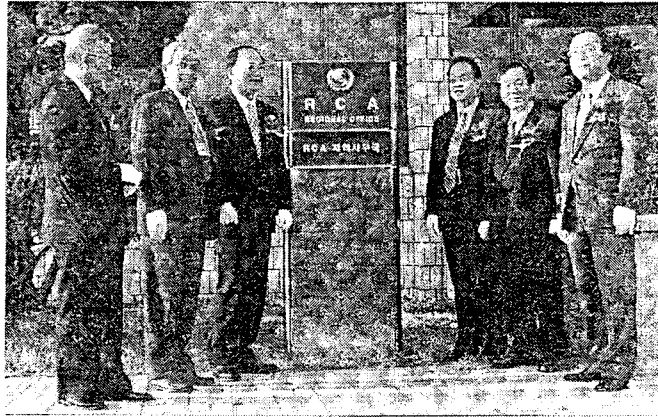
디지털타임스 3월 20일

원자력협정 대표자회의  
서울서 25일부터 5일간

과학기술부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아·태지역 원자력협력협정(RCA) 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과학기술부 조정원 원자력 국장이 의장으로 17개 회원국 대표가 모여 2003~2004년 RCA 사업계획 및 규모, 차기 회의 개최 국가 등을 결정하게 된다.

27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유희열 과기부 차관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RCA 사무국 개소식이 열린다. 서낙영기자



◇아시아-태평양지역 원자력협력기구(RCA) 지역사무국이 27일 오후 대전 대덕연구단지 한국원자력연구소내에서 장인순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차우드리 방글라데시 원자력위원회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국식을 갖고 문을 열었다. /대전=김을지기자

## 亞太 원자력협력기구 사무국 국내 개설

### 어제 대덕서 개소식

아시아-태평양지역 원자력협력기구(RCA) 지역사무국이 우리나라에 설치됐다.

17개 회원국이 참여한 RCA 지역사무국은 27일 대전 대덕연구단지의 한국원자력연구소(소장 장인순) 내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인 지웨이친안 박사와 유희열 과기부 차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국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프로젝트 담당관, 행정 담당관, IAEA 파견 인력 등 5~6명이 근무하며

RCA 사업에 대한 홍보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증진 등 연간 600만달러에 달하는 사업을 기획·조정해 회원국간 경제발전 등을 모색케 된다.

RCA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간 상호협력을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하고 경제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1972년에 결성됐으며, 한국 일본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몽골 미얀마 싱가포르 스리랑카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등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전=김을지기자 ekim@sgt.co.kr

대전매일 3월 28일

## 아시아·태평양 원자력협력기구 사무국 원자력연구 개소

아시아·태평양지역 원자력협력기구(RCA) 사무국이 27일 오후 5시 원자력연구소에서 과기부 유희열 차관, 국제원자력기구 Dr.J.Qian 기술협력 담당 사무차장, 17개 회원국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RCA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프로젝트 담당관, 행정 담당관, 국제원자력기구(IAEA) 파견 인력 등 5~6명이 근무하면서 연간 600만달러에 달하는 RCA 사업에 대한 기획, 조정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 등을 담당한다. <李成烈 기자>

전자신문 3월 28일

### RCA 지역사무국 원자력연구 개소

아시아 태평양지역 원자력협력기구(RCA)의 지역사무국 개소식이 27일 오후 소내 원자력연구소에서 장인순 원자력연구소장, 나이올 초드리 방글라데시 원자력위원장, 유희열 과기부 차관, 취안 지휘 IAEA 사무차장, 조형원 과기부원자력국장, 김진영 RCA 지역사무국장(왼쪽부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RCA 지역사무국은 호주·방글라데시·중국·인도·인도네시아·일본·한국·말레이시아·몽골·미얀마·뉴질랜드·싱가포르·스리랑카·파키스탄·필리핀·태국·베트남 등 17개 회원국의 참여로 운영되며 사무국은 사무국장, 프로젝트 담당관, 행정담당관 및 IAEA에서 지원하는 2~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대덕뉴스]RCA 지역사무국 본격 출범

아태지역 17개 회원국 이해증진 및 원자력 기술발전 도모

[입력일 : 2002-03-27]

아시아-태평양지역 원자력협력기구(RCA) 지역 사무국이 대덕밸리에 새 동지를 틀었다.

RCA 지역사무국은 27일 오후 5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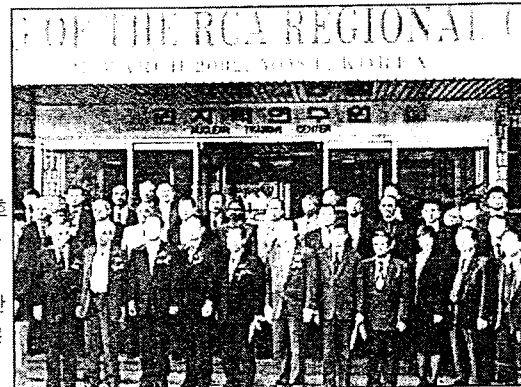
RCA 지역사무국은 사무국장과 프로젝트 담당관, 행정 담당관, 국제원자력기구(IAEA) 파견 인력 등 5-6명이 근무하면서 RCA 사업에 대한 홍보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회원국간 원자력 기술발전 등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펼친다.

개소식에는 유희열 과학기술부 차관, IAEA 치엔 지후이(Qian Jihui)사무차장, 방글라데시 원자력위원장 Choudhury, 17개국 RCA 회원국 대표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유희열 과학기술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RCA 지역사무국 설치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라며 "아태지역 국가의 원자력 기술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치엔 지후이 IAEA 사무차장은 "17개 RCA 회원국의 연합체인 RCA 지역사무국이 뉘른게나마 설치됨으로써 RCA의 발전과 이해증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RC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간 상호 협력을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하고 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72년에 체결된 국제협력기구로 한국과 일본, 중국,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몽골, 미얀마, 싱가포르, 스리랑카,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 등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042-868-2776

# 첨부 4.

◆ 제24차 RCA 국가대표자회의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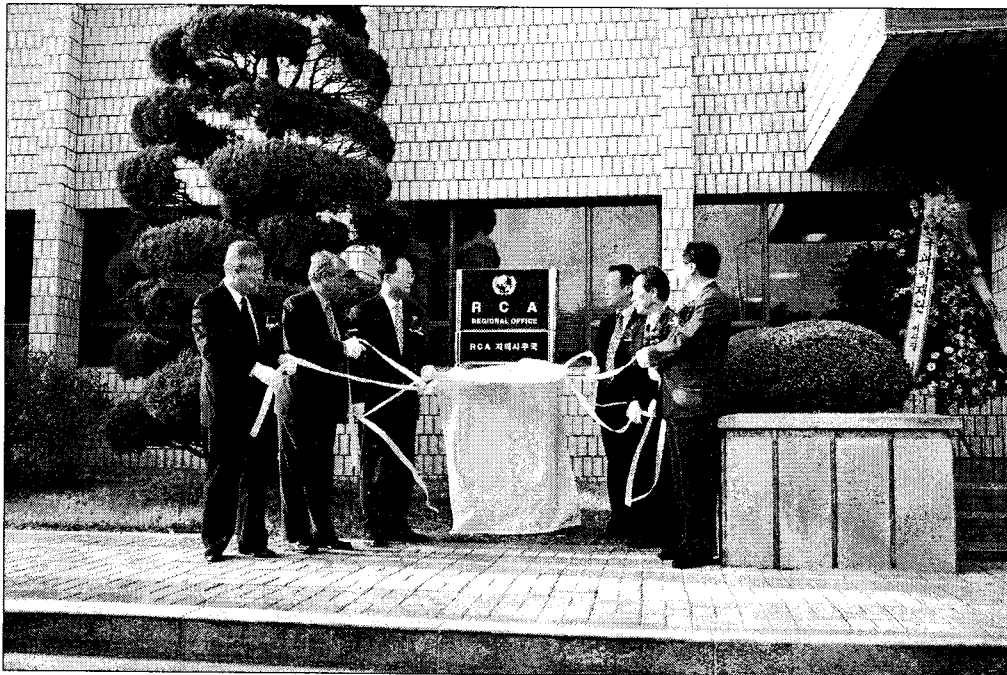


제24차 RCA국가대표자회의 개막식 후 채영복 과학기술부장관과 회원국 대표단



제24차 RCA국가대표자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과학기술부 조청원 원자력국장이 회의를 주재

◆ RCA 지역사무소 개소식 사진



RCA지역사무소를 알리는 현판 제막식. 왼쪽부터 장인순 KAERI소장, 차우드리 방글라데쉬 원자력위원장, 유희열 과기부 차관, 찬주이 IAEA사무차장, 조청원 원자력국장, 김진경 초대 지역사무소장



RCA지역사무소 개소 기념식 후 유희열 과기부 차관과 RCA회원국 대표단

## Working Paper

### **On the Establishment of an RCA Regional Office In the Republic of Korea**

#### **1. Introduction**

This Working Paper was prepared to provide the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RCA Regional Office in the Republic of Korea that was opened in March 2002 on the occas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RCA establishment and the 24th RCA Meeting of National Representatives. The establishment and opening of the RCA Regional Office was in principle agreed upon and adopted by consensus of the Member States at the 30th RCA General Conference on 15 September 2001 in Vienna. A few additional comments from the Member States about this Working Paper at the 30th RCA General Conference and also at the 24th RCA Meeting of National Representatives in Korea were well reflected when finalizing this Working Paper.

At the 30th RCA General Conference, a Task Group consisted of 7 RCA Member States that was originally formed at the 23rd RCA National Representatives Meeting in Dhaka, Bangladesh in March 2001 was again requested to review and conclude the Working Paper. The Task Group Member States were Australia, China, India, Japan, Korea, Pakistan and the Philippines. Australia and Korea were requested to take the lead. However, it was needed to further review the Working Paper since several other comments were again made at the 24th RCA Meeting of National Representatives in Korea.

An Advisory Committee (interim) was composed at the 24th RCA Meeting of National Representatives in Korea to support the Regional Office to enter into normal function. Members are the three Chair Member States at the time when the establishment of the RCA Regional Office was in principle agreed at Dhaka meeting in 2001, i.e. India, Bangladesh and Korea. Australia was requested to be a member because the country has played a leading role to prepare the Working Paper. China was requested to be the member representing all other Member States. In addition, the RCA Coordinator of IAEA was requested to be a member. The Advisory Committee is initially requested to work not only for preparation of a final version of the Working Paper but also to conclude Guidelines for nominating and appointing a Regional Representative. Operating Rules for the Advisory Committee shall be prepared separately.

## **Guidelines on the Operation of the Advisory Committee of the RCA Regional Office are attached as Annex 1.**

The Advisory Committee met in July 2002 in Vienna and concluded a final version of the Working Paper as well as the Guidelines for nominating and appointing a Regional Representative in order to report at the 31st RCA General Conference in September 2002 in Vienna.

## **2. Background**

At the 19th RCA National Representatives Meeting in Yangon, Myanmar in March 1997, on the occasion of the 25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RCA, the need to establish an RCA Regional Representative was strongly proposed as one of the measures to increase RCA ownership by the Member States. This was clearly stated in the RCA Vision Statement that also recommended other new initiativ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the Lead Country concept, the implementation of thematic projects, the utilization of Regional Resource Unit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RCA Operating Rules and Guidelines.

It is also noted that, based on record, there was a suggestion during the RCA Meeting in 1978 in Vienna to have an RCA Office in the region. However, it was mentioned that the level of RCA programs was too small to warrant such an Office at that time.

The need to have an RCA Regional Representative has been revisited at the RCA policy level meetings since the Yangon meeting. At the 22nd RCA National Representatives Meeting in Mumbai in March 2000 and at the 29th RCA General Conference in Vienna in September 2000, the Republic of Korea proposed to host the RCA Regional Office when established in that country and pledged to provide necessary operating expenses, including the salary of the Regional Representative, if he/she is a Korean. The RCA Member States welcomed Korea's significant contribution. However, there were questions on the role and functions of the Regional Representative, and also on the payment to the Regional Representative, if he/she is not Korean.

At the 23rd RCA Meeting of National Representatives in Dhaka, Bangladesh in March 2001, the RCA Member States again expressed their support for the Korean proposal and a Task Group was formed to draft a working paper for agreement at the 30th RCA General Conference in Vienna in September 2001.

At the 30th RCA General Conference on 15 September 2001 in Vienna, the Member States agreed in principle on the establishment of the RCA Regional Office in Korea in early 2002 but as interim operation until necessary legal provisions would be prepared. The 30th RCA General Conference requested Korea to prepare for its opening during the 24th RCA Meeting of National Representatives and particularly in connection with the 30th anniversary of RCA establishment that Korea would host.

### **3. Need to Establish an RCA Regional Office**

Since the inception of the RCA in 1972 and until recently, most of the RCA programs and projects have been formulated and implemented by the IAEA. It is noted that the IAEA is not a signatory to the RCA but provides assistance ranging from secretariat duties to technical support and project funding. The IAEA has been strongly urging Member States to take more ownership of the RCA program. The RCA Regional Office is particularly believed to be a good vehicle for increasing Member States' ownership of the RCA programs.

### **4. Role of the RCA Regional Representative**

It is important to have a clear separation betwee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RCA Coordinator and the RCA Regional Representative. The RCA Coordinator continues to be the primary point of liaison with the IAEA as a staff of the Agency, while the RCA Regional Representative is responsible for developing contacts with other reg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additional partnership of the RCA and developing new programs for the RCA. The role of the RCA Regional Representative and the Regional Office as agreed upon at the 23rd National Representatives Meeting in Dhaka and at the 30th RCA General Conference in Vienna in 2001 would therefore be:

- (1) To pro-actively seek out opportunities for the RCA to participate in projects being formulated and designed by major regional and international donors, including international agencies,
- (2) To negotiate and secure contracts for income generating activities to both fund the RCA Representative position and provide supplementary funding for RCA projects;
- (3) To promote the application of nuclear techniques to assist in addressing regional and national problems;
- (4) To implement the directives of the Member States as agreed upon at the RCA Meetings of National Representatives, in particular, to support developing and formulating new project proposals from Member States in liaison with the relevant Lead Country; and
- (5) To provide regional visibility for the RCA at regional and national forum and to develop RCA future strategies and missions in cooperation with the Member States.

It could be summarized that the role of the RCA Regional Office would be to increase the awareness about the RCA before the Member States and

other regional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o seek additional partnership among the regional and international nuclear communities.

## 5. Operation of the Regional Office

### (1) Organization

The RCA Regional Office shall initially comprise of the following staff.

- 1 Regional Representative (Director)
- 1 Project Planning Officer
- 1 Administration Officer
- 1 Secretary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above positions be filled locally with the exception of the Regional Representative who should be from one of the Member States including the host country.

- (2) IAEA Fellowships: The IAEA is requested to attach its regular fellowship(s) to the Office to support the Office's technical program activities. Assignment of Cost Free Expert(s) or Cost Free Consultant(s) from the Member State(s) is also welcomed for work at the Office.
- (3) Location: Seoul, Korea (during the interim period, the Office will locate at Daejeon, Korea adjacent to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to have technical as well as administrative supports)
- (4) Working Environment: It shall be satisfactory and conducive to a good working attitude.
- (5) Office Space: It shall be adequate to accommodate the Regional Representative's office and other staff members. A meeting facility of average size shall be arranged additionally.
- (6) Office Equipment: The Regional Representative and other staff members shall be provided with appropriate office working desks, filing cabinets, telecommunication lines, modern computers and other office equipment including Internet access lines.
- (7) Transport Vehicle: The host country shall provide a dedicated vehicle for the use of the Office.
- (8) Operating Expenses: The host country shall provide all locally needed operating expenses of the Office.

## **6. Director of the RCA Regional Office**

- (1) Appointment: The appointment of a Director needs final approval at the RCA National Representatives Meeting and shall be endorsed at the RCA General Conference. However, leading up to this approval, an appropriate job description for the Regional Representatives position needs to be carefully drafted for helping with selection and evaluation. The process of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an RCA Regional Representative will also need to be open and transparent.

**Guidelines on the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an RCA Regional Representative are attached as Annex 2.**

- (2)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The exact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required for the Regional Representative shall be clearly explained in the job description (JD). It is expected that any candidate shall have a proven record of achievement in the key requirements. The candidate is required to have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scientific background, preferably in nuclear science, and preferably would be familiar with the work of the RCA. A separate Selection Committee shall be composed to select and to recommend a most suitable Regional Representative to the RCA policy level meetings for final appointment and endorsement.

**Guidelines on the Operation of the Selection Committee for an RCA Regional Representative are attached as Annex 3.**

- (3) Duration of Appointment: Fixed term, 3 years.
- (4) Performance Evaluation: Because the performance of the Regional Representative is critical to the future of the RCA, there will have to be close scrutiny of the Regional Representatives performance against agreed performance criteria on at least an annual basis and failure to perform may to result in early termination.

**Vacancy Notice together with Job Description is attached as Annex 4.**

- (5) Salary: It is recommended to pay the salary at a similar level to the UN organizations P-5 staff. The salary including a reserve for retirement allowance for the Regional Representative shall be provided by the originating Member State. If the Regional Representatives origin is Korea, the salary shall be paid in compliance with the Korean governments guidelines. Likewise, the originating Member State may pay salary and other fringe benefits on its own guidelines, if not provide UN P-5 level payments.



- (6) Fringe Benefits: The originating country shall provide settlement and resettlement expenses when he/she moves from the Regional Representative's home country to Korea. This does not apply to the Regional Representative originating from Korea. Other fringe benefits such as medical insurance and children's educational tuition fees may also be provided by the Regional Representatives home country. The fringe benefits may also b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originating country's own guidelines suitable to its situation.
- (7) Privileges and Immunities: Unless a separate agreement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concluded between the host government and the originating government of the Regional Representative, he/she shall observe Korean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taxation. If not otherwise agreed, the income tax can be compensated for from the Regional Office expenditures. The Member States, particularly the host country, shall try to offer every possible support to the Regional Representative for the exercise of his/her functions. This may require additional separate agreement between the originating Member State and Korea.
- (8) Reporting: Since the Regional Representative is responsible to RCA Member States, he/she shall report directly to the RCA policy level meetings about his/her performance. In preparing reports, the Regional Representative is advised to liaise with the RCA Coordinator of the Agency. For regular reporting purposes, the present Chair of the RCA policy level meetings will act as the interregnum interface between the Regional Representative and the RCA National Representatives.
- (9) Relationship with Lead Countries: The Regional Representative does not have a direct on-going involvement with Lead Countries of the RCA thematic projects. However, in the pursuit of the objectives of the Regional Office, the Regional Representative may need to correspond with Lead Countries. As set out in the Lead Country paper agreed at the 28th RCA General Conference in 1999,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Lead Country to provide the initiative in coordinating and managing all aspects of the project cycle and to oversee the technical progress and evaluation of projects.
- (10) Relationship with the RCA Coordinator: It is necessary to have a clear separation betwee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RCA Coordinator and the Regional Representative. The Regional Representative may communicate directly with the IAEA/RCA Office and is advised to liaise with the RCA Coordinator on a regular basis for consultations and feedback with regard to RCA matters.
- (11) Relationship with IAEA Technical Officers: The Regional Representative can communicate directly with the Agency's Technical Officers with respect to technical matters. To ensure effective coordination, the RCA Office should copy all communications from the Regional Representative to the Technical Officers.

A Board type committee with less than 5 members shall be comprised when the Regional Office enters into normal function. The Board will basically provide advices for the operation of the Regional Office representing the Member States. The Board will accordingly have the responsibility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Regional Office, particularly that of the Regional Representative.

**Terms and Conditions for the Regional Representative are attached as Annex 5.**

## **7. Other Staff of the Regional Office**

- (1) Project Planning Officer: To assist the Regional Representative in his capacity of developing, formulating, implementing and evaluating RCA projects.
- (2) Administrative Officer: To assist the Regional Representative in his capacity of operating and managing the Regional Office and coordinating with the host government.
- (3) Secretary: To support the administrative work of the Office. The Regional Office may hire additional temporary staff to support administrative works.
- (4) Employment: The Regional Representative will be responsible for hiring the supporting staff according to the guidelines set forth by the Regional Office.
- (5) Payment: The host government shall provide salaries and other remunerations including fringe benefits to the staff members of the Office in accordance with the established guidelines. The payment shall be made in local currency.
- (6) Employment Terms: The host government shall regulat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of the staff members of the Office. The host government shall prepare job descriptions for hiring the supporting staff as an initial step. The Regional Representative when appointed shall confirm the job descriptions.

## **8. Legal Actions**

- (1) RCA Supplementary Agreement: The present RCA Agreement is valid until June 2007 after extending another 5 years as of June 2002. Legal advices are made to facilitate the establishment of the RCA Regional Office by through amendment of the RCA Agreement. However, amendment of the existing RCA Agreement requires additional ratification from the

parliaments of the Member States that will be a time consuming process. There is, however, legal opinion that a supplementary agreement to the present RCA Agreement among RCA Member States would be sufficient without the amendment. This would seem to be a practical approach, since any amendment of the existing RCA Agreement will take time and the continuity of the present RCA Agreement would not be impacted.

- (2) MOU between the IAEA and ROK: An MOU that describes formal commitments both from the IA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behalf of the Regional Office regard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RCA Regional Office will be needed. The nature of such an MOU will explain the host governments commitment to support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Regional Office as long as the Office is located in the country and will also describe the Agencys role of liaison with the Office.
- (3) MOU between the RCA Member States and ROK: An MOU that defines the commitments from the originating country of the Regional Representative, if he/she is a non-Korean national and the Government of Korea as the host government shall be concluded in order to support the activities and living of the Regional Representative in Korea.

## 9. Interim Measures

Interim operation of the Regional Office until the Office enters into normal function are needed in order to set in place all legal,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details involving procedures and management for the Regional Office. The expected interim period will be two years as agreed at the 30th RCA General Conference in Vienna in September 2001. If necessary, the interim period of 2 years can be extended another 1 year for better preparation.

- (1) During the interim period, as an initial step, the Regional Office will be located in Daejeon, Korea.
- (2) During this period, the host government shall assign an Acting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Regional Office. The host government shall also hire staff members for the Regional Office for immediate work.

RCA 지역사무소장에 대한 고용계약서 초안 (사무소장 선출 위원회가 최종 검토하여 국가대표자회의에서 채택한 문서)

## **Guidelines on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the Employment of the RCA Regional Director at duty station in Korea**

The Advisory Committee on behalf of the RCA National Representatives of the Member States is requested to develop the Guidelines o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Employment of the RCA Regional Representative at duty station in Korea. The Guidelines shall be agreed at the RCA policy level meetings. However, if the Regional Representative is a Korean national, the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are not applied and shall be in compliance with the currently available Korean governments regulations and practices. Therefore, the following Guidelines are only applied to a non-Korean Regional Representative.

Meanwhile, if the Regional Representative is not a Korean national, the originating home country may apply its own remuneration policy based on the countrys own regulations and practices. In any case, the newly appointed Regional Representative and the host government shall conclude an employment contract that describes details of terms and conditions of the duty work, particularly the financial responsibilities by home country and the host government.

### **REMUNERATION POLICY**

#### **1. Remuneration**

The remuneration policy for the RCA Regional Representative shall basically be similar to the UN organizations P-5 level.

Salary is payable at the end of each calendar month in the currency of the duty station, i.e. in Korean Won. The Regional Representative may, however,

submit to the host governmen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a request for a foreign allotment in US dollars or in the currency of his/her home country up to a maximum of 70% of his/her net emoluments.

## 2. Net Emoluments

The Regional Representatives net salary is composed of net base salary (US\$.....single/dependency rate, at the valid exchange rate of Korean Won) plus local post adjustment, after deduction of his/her 7.9% share contribution to the Pension Fund (\* refer to hereafter mentioning Pension Scheme), and will amount to:

.....at single/dependency rate Korea Wons .....

Plus

.....dependency allowance

(if applicable)

Korean Wons .....

i.e. .... Korean Wons.....

or Korean Wons ..... per month, before deduction for participation in the host governments health insurance scheme. Dependency allowance, Pension Fund and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s are all subject to changes according to the relevant Rules of the host government.

The share of host governments counter-contributions to the schemes is subject to the relevant Rules of the host government at the time of his/her entry on duty.

## 3. Salary Increment

Subject to satisfactory service, a salary increment is payable each year. The rate of annual salary increment shall be defined by the home country based on the relevant practice of the UN organizations at the time of his/her entry on duty.

## 4. National Income Taxes

The emoluments are not deemed to be exempt from national income taxes of the host country unless otherwise a special legal backup measures are made.

The host government will reimburse the Regional Representative for income taxes levied upon his/her income, unless specified otherwise in the employment contract.

## **BENEFITS and ALLOWANCES**

### **5. Assignment Grant**

Upon his/her entry on duty, the Regional Representative will receive an assignment grant that will be borne by the home country.

This grant amounts to:

.....per day for a 30 day period at full rate for the Regional Representative, i.e.....

and .....per day for a 30 day period at half rate for a spouse and for each recognized dependent child accompanying him/her to the duty station and residing with him/her for a reasonable period. The Daily Substitute Allowance (DSA) will be subject to the IAEA rate applicable to the host country. When receiving DSAs, it shall be deducted from the monthly salary computed on a daily basis.

### **6. Dependency Allowance**

Dependency allowance shall be borne by the home country by Korean Wons .....per annum for each dependent child. The allowance shall not be paid in respect the first child, if the Regional Representative has no dependent spouse; in this case, the Regional Representative shall be entitled to the dependency rate of the UN organizations.

Where there is no dependent spouse, a single annual allowance of Korean Wons.....may be payable for either a dependent parent, a dependent brother or a dependent sister, whose dependency upon the Regional Representative has been recognized by the ad-hoc committee.

The Regional Representatives own or legally adopted children may be recognized as dependents. A prerequisite for the recognition as a dependent is

that the Regional Representative provides the main and continuing support for the child; that is to say the child must be mainly dependent on the Regional Representative for the ordinary necessities of life.

A child may normally be recognized as a dependant as long as it is under the age of 18 years. However, if the child is in full-time attendance at a school, university or similar educational institution, recognition as a dependant may be extended up to the age of 21 years. If the child is physically or mentally incapacitated for substantial gainful employment either permanently or for a period expected to be of long duration, no age limit applies for the recognition as a dependant.

The term dependant spouse signifies a spouse whose gross occupational earnings do not exceed a certain income level.

All claims have to be supported by documentary evidence to the ad-hoc committee.

## **7. Rental Subsidy**

A rental subsidy scheme aims at ensuring a greater degree of equity and alleviating hardship by subsidizing housing for new coming Regional Representative to duty station. This scheme is only applicable if rental costs significantly exceed the average for the duty station. The host government shall define details and the home country shall bear the cost.

## **8. Education Grant**

An education grant is payable by the home country, if supported by documentary evidence, in respect of each child who is in full-time attendance at a recognized school or university. The grant is not payable for attendance at a school free of charge or one charging only nominal fees at the host country

The grant is payable from the scholastic year following the child's fifth birthday, or in which he/she completed his/her fifth year, provided this age is attained during the first term of that scholastic year. The grant shall be payable until the end of the fourth year of post-secondary studies or the

award of the first recognized degree, whichever is earlier. The grant will not be paid beyond the scholastic year in which the child reaches the age of 25.

The amount of the grant per scholastic year shall be defined by the ad-hoc committee but in general shall apply the IAEA practice that is 75% of admissible expenses up to a maximum grant of US\$.....

When the period of service of the Regional Representative does not cover the full scholastic year, the amount of the education grant shall be the proportion of actual attendance computed on a daily basis. Please note that schools may charge parents for reservations made for places at the school and may also charge tuition covering a full scholastic term, although the child/children may finally not attend the school, or only attend part of the term, as the case may be. In such an event, parents must assume costs over and above the pro-rated amount payable by the home country.

A special education grant for disabled child/children is payable.

## **TRAVEL and REMOVAL**

### **9. Travel**

The Regional Representatives travel has to be authorized by the present Chair with support from the host government. Generally, the authorized travel time is limited to that required for a journey by air the lowest logical fare by the most direct and economical routes. If the flight time including change of planes exceeds seven hours, business class can be granted. Where air travel is not available, travel shall be by first class train. If the travel is by sea, it shall be by cabin class. The total cost for such travel shall, however, not exceed the total cost of air travel (economy/business class).

The Regional Representative should note, however, that the Regional Office or the host government would not assume liability for any third-party claims arising from travel accidents.

The Regional Representative may travel by car for international flight to the duty station from the town where he/she lives to the nearest airport. The home country on an established rate shall reimburse cost for such travel.



Travel by car will therefore only be available if the Regional Representative carries a third-party insurance, valid in the countries traversed.

When returning home country after completion of duty term, the home country shall provide airfares to the Regional Representative and his/her eligible dependents as done when moving in the duty station.

## **11. Removal of Personal and Household Effects**

On entry to duty, the Regional Representative is entitled to remove the following weight and volume at the home country's expense:

27 measurement tons (4,860 kg) including the weight or volume of packing, but excluding crating and lift vans, for the Regional Representative without dependents; and

45 measurement tons (8,000 kg) including the weight or volume of packing, but excluding crating and lift vans for the Regional Representative with one or more dependents residing with him/her at the duty station.

The transport of motor vehicles (including motorbikes, trailers, boats, etc.) and domestic animals cannot be included under this title and is not reimbursable.

Transportation shall be by surface, by the most economical means, and should take place in a single shipment, and within a period of six months after the entitlement arises. The Regional Representative is advised to arrange for the transportation of his/her household goods in such a manner that the goods could, on arrival at the duty station, be moved directly into their apartment.

For immediate use, and within the above entitlement, the Regional Representative is permitted to send in advanced by air freight one shipment containing personal effects not exceeding the following gross weight:

The Regional Representative alone.....225 kg

With one eligible primary dependant.....375 kg

With two eligible primary dependants.....450 kg

With three eligible primary dependants.....525 kg

More than three eligible primary dependants will not be considered. At any cases, the cost for removal of household effects shall be borne by the home country.

If this option is exercised, twice the weight of the advance shipment will be deducted from the total weight of the main entitlement. However, if the balance is so small that it could be dispatched more economically by air than by surface transportation, one single air freight shipment may be allowed.

When returning home after completion his/her duty at the Office, the home country shall provide cost for returning shipment of household effects.

## **12. Storage of Effects in the Home Country**

Aside from the aforementioned shipments, the Regional Representative is permitted to store household effects in his/her possession at the time of appointment within his/her entitlement and for a period of up to three years. Storage charges shall only be reimbursed if the effects are stored in a warehouse for which the Regional Representative is required to pay charges. The norm and mode for the storage may follow the practice of UN organizations.

The storage of motor vehicles (including motorbikes, trailers, boats, etc.) cannot be included under this title and is not reimbursable.

## **13. Transport Insurance**

Transport insurance for the household effects move and the home country shall cover removal based on the countrys insurance policy and the fees will be borne by the home country. With respect to household effects in storage the home country insurance costs only for the transport into and from storage.

## **SOCIAL SECURITY**

### **14. Pension Scheme**

The host government will arrange a national pension scheme, for which the Regional Representative pays 7.9% and the home country pays 15.8%. The Regional Representative leaving the Office before completion of three years of contributory service will be reimbursed the amount of his/her own contributions plus compound interest.

Other details will be defined through further consultation between the related authorities of both home and host countries.

### **15. Health Insurance**

Normally the Regional Representative and his/her eligible dependants will, provided certain conditions are met, be enrolled on a cost-sharing basis in the host country's health scheme, which provides reasonable coverage for medical and hospital costs and also some coverage for dental treatment. The home country shall bear the cost sharing.

### **16. Annual Leave**

Annual leave is accrued at the rate of 1 working day per month.

### **17. Sick Leave**

Sick leave is granted upon presentation of a medical certificate.

Provision is made for reasonable compensation payments if the Regional Representative has exhausted his/her entitlement to paid sick leave.

### **18. Home Leave**

Travel expenses of the Regional Representative and his/her eligible dependants are paid to and from his/her home country to enable him/her to take leave there once in two years of qualifying service. The first home leave will fall due in the second year of the Regional Representatives service, provided that his/her total period of service is expected to be at least two years and six

months. Details for the travel expenses will be borne by the home country. Duration for the home leave shall be computed for deduction from the annual leave dates.

## **GENERAL INFORMATION**

### **19. Visa (s)**

After appointment by the RCA National Representatives Meeting, the Regional Representative and his/her eligible dependant(s) shall apply necessary visa(s) at the nearest Korean Embassy or Consulate for living in Korea more than 3 months period. The host government can assist in obtaining the visa(s).

### **20. Housing**

The host government will assist the Regional Representative in finding suitable accommodation in Korea.

### **20. Driving License**

The host government will assist in obtaining a Korean driving to the Regional Representative and his/her spouse on the basis of a valid foreign driving license recognized by Korean transportation authority.

### **21. Hours of Work**

During March–November: 09:00–18:00 and during November–February: 09:00–17:00

Monday to Friday, with one hour break for lunch. Saturdays are flexible. Normally, a half-day work on Saturdays.

### **22. Forwarding address**

For advance private mails and packages requiring custom clearance through the host government, it is advised to use the following address:

C/o Atomic International Cooperation Division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Government Gwachon Complex, Gwachon City  
Kyung-ki-do, Korea  
Tel: ++82-2-503-7651 Fax: ++82-2-504-6152  
Email: hbkee@most.go.kr

# 여 백

2002년 9월 31차 총회에서 최종 채택된 RCA 지역사무소 자문위원회 운영 기준

## Annex 1

### Guidelines on the Operation of the Advisory Committee of The RCA Regional Office

1. (Objectives) The Guidelines are defining duties and functions on the operation of the Advisory Committee of the RCA Regional Office. The Committee was organized at the 24th RCA Meeting of National Representatives in Korea in March 2002.
2. (Functions) The main functions of the Committee are:
  - (a) To adopt the Guidelines on the Operation of the Advisory Committee
  - (b) To prepare a final version of the Working Paper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RCA Regional Office in Korea
  - (c) To adopt the Guidelines on the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a Director of the RCA Regional Office
  - (d) To prepare a vacancy notice (including Job Description) for inviting the Director of the RCA Regional Office
  - (e) To prepare Guidelines on the Operation of the Selection Committee
  - (f) To review draft of Supplementary Agreement to the
  - (g) To make recommendations to the host government and to the IAEA with regard to the operation of the Regional Office, if necessary.
  - (h) To prepare a report on the Committees work for the immediate next RCA National Representatives Meeting
3. (Members) The Committee shall consist of 6 members. 3 members are the immediate past, present and immediate next Chairs of the RCA National Representatives Meeting, at the time when the Korean proposal to host an RCA Regional Office in Korea was in principle agreed i.e. the 30th RCA GC in Vienna in 2001. Therefore, the 3 Chairs are India, Bangladesh and Korea. Australia was requested to be a member as the country to take lead to

prepare the Working Paper. China shall be a member. The RCA Coordinator shall represent the IAEA. The RCA Coordinator shall have no voting rights.

3. (Term) The Committee was composed as an interim body and shall function during the interim operational period of the RCA Regional Office. The interim operational period of the Regional Office is 2 years beginning from March 2002. When the interim operational period is extended for certain duration, the Committee shall work additionally for the extended period.

4. (Chairperson) The Committee shall elect a Chairperson among the members except the RCA Coordinator. The Chairperson shall be responsible for conducting the meeting effectively and efficiently. When the Chairperson is not available to present at the Committee meeting, an alternative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shall lead the meeting. In the case of a tie, the Chairperson shall decide the issue.

5. (Meeting) The Chairperson shall call the Committee meetings in conjunction with the RCA policy level meetings when necessary. However, the first meeting shall be requested to convene by the Director of the Regional Office until the Chairperson is elected. Presence of 4 members out of 6 shall constitute the quorum. Presence of an alternative designated by Committee member shall be regarded as presence of the member. No proxies can be accepted.

6. (Cost for Meeting Attendance) The travel and living expenses for members attending Committee meetings shall be borne by the representing Member States. In special cases, the Regional Office would consider members attending the meetings upon request.

## 2002년 9월 31차 총회에서 최종 채택된 RCA 지역사무소장 선출 기준

### Annex - 2

## Guidelines on the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A Director of the RCA Regional Office

1. (Objectives) The Guidelines define details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qualifications for the position, vacancy notice, selection and appointment and other necessary matters of a Regional Representative of the RCA Regional Office.
2. (Role of the Advisory Committee) The Guidelines shall be prepared by the Advisory Committee and agreed upon by consensus of the RCA Member States at the RCA Meeting of National Representatives.
3. (Background) The Working Paper was in principle agreed upon by all RCA Member States at the 30th RCA General Conference in Vienna on 15 September 2001. It was requested that Guidelines to define details for nominating and appointing an RCA Regional Representative should be attached to the Working Paper as an Annex. A 6-member Advisory Committee was finally established at the 24th RCA Meeting of National Representatives in Korea in March 2002. The Advisory Committee was requested to prepare the Guidelines and to report at the 31st RCA General Conference in September 2002 in Vienna for endorsement by the Member States. The Advisory Committee met in July 2002 in Vienna and concluded this final version of the Guidelines.
4. (Job Description/Qualifications of the Regional Representative)
  - (a) The Advisory Committee on behalf of the RCA Member States will determine the exact qualification and experience of the candidate(s) for the Regional Representative position.



- (b) The Advisory Committee in cooperation with the IAEA/RCA Office will develop a properly designed vacancy notice together with a Job Description

(Ref : Annex 1-3).

#### 5. (Invitation)

- (a) The Chairperson of the Advisory Committee in cooperation with the RCA Regional Office and the IAEA/RCA Office in Vienna shall circulate the Job Description Form together with a post vacancy notice to all RCA National Representatives in order to invite applications.
- (b) The Chairperson of the Advisory Committee in cooperation with the RCA Regional Office and the IAEA/RCA Office in Vienna shall also advertise the vacancy notice mainly through the Internet home pages of the RCA Regional Office and the IAEA/RCA and other related regional and international information channels.
- (c) The Chairperson of the Advisory Committee in cooperation with the RCA Regional Office and the IAEA/RCA Office in Vienna shall inform the RCA Member States missions to IAEA of the vacancy notice to encourage the applications.
- (d) The RCA Regional Office on behalf of the Advisory Committee shall accept applications until the deadline set forth in the vacancy notice. Therefore, the application should address to the RCA Regional Office. If there are no applications by the deadline, it can be extended to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The Advisory Committee shall also decide this extension.
- (e) The application shall in principle be made through the RCA National Representatives of the Member States with appropriate endorsement from the government authorities.

#### 6. (Selection)

- (a) The Advisory Committee shall establish a Selection Committee to manage screening and selecting work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The

Selection Committee shall prepare a short-list based on the documents that the applicant(s) submitted, if there are a number of candidates, for example, more than 10 applicants. The Selection Committee then select one most suitable candidate or preferably two suitable candidates and recommend to the subsequent RCA Meeting of National Representatives for final selection and appointment.

- (b) The selection of one final candidate shall be made by consensus among the National Representatives of the Member States. If no consensus is reached among the National Representatives, the majority shall abide the decision.
- (c) If necessary, the Selection Committee shall convene well before the RCA Meeting of National Representatives at an agreed place for interviewing the candidate(s). The appointment of a new Regional Representative shall be endorsed at the subsequent RCA General Conference.
- (d) Guidelines on the operation of the Selection Committee shall be attached as an Annex of these Guidelines (Ref. Annex 1-4).

7. (Terms and Conditions of the Regional Representative) This shall be separately described in detail and attached as an Annex of the Guidelines.

8. (Duty Start)

- (a) The newly appointed Regional Representative shall start his/her duty at the Regional Office at the earliest possible time at the duty station in Korea.
- (b) A senior staff of the Regional Office shall work as the Acting Regional Representative until the newly appointed Regional Representative begins his/her duty at the Regional Office.
- (b) Administrative details about the post settlement and work-start shall be agreed between the host country (The Korean Government Ministry responsible for RCA matters) and the origin country of the Regional Representative.

**Annex - 3**

**Guidelines on the Operation of the Selection Committee  
For the Director of the RCA Regional Office**

1. (Functions) The main function of the Selection Committee is to recommend most suitable candidate for the post of the Director of the RCA Regional Office (RO) to the RCA National Representatives Meeting (NRM). The function of the Selection Committee is as follows:

- (a) To prepare a job description for vacancy notice
- (b) To prepare a selection criteria
- (c) To screen and prepare a short-list of qualified candidate(s) and recommend one or two most suitable candidate(s) to the Advisory Committee.

2. (Members) The Advisory Committee shall recommend and appoint the Selection Committee members.

- (a) The Committee shall be limited to 5 members
- (b) The Selection Committee members shall not be nominated from among National RCA Representatives
- (c) Among the 5 members, one shall be from the host government of the Regional Office (Korea). Another member will be from the IAEA who shall be recommended by the Agency.
- (d) Members shall participate in the meetings in their personal capacity and their participation shall not represent their originating States.

3. (Chairperson) The Selection Committee shall elect a Chairperson among the members.

4. (Meetings) The Chairperson shall call the Committee meetings, however, the first Committee meeting shall be requested to convene by the Regional Office. Majority presence of the members constitutes the quorum.

5. (Cost for Meeting Attendance) The travel and living expenses of the Selection Committee members attending Committee meetings shall be borne by the individually. In special cases, the Regional Office could support members attending the meetings upon request and in compliance with the budget availability of the Regional Office.

6. (Meeting Place and Dates) The Selection Committee shall convene well before the RCA NRM at an agreed place and dates for interviewing.

##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RR-2276/2002			
제목 / 부제	RCA 지역사무소의 효과적 운영방안 수립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 Operation of RCA Regional Office in Korea)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한봉오(홍보협력과)		
연구자 및 부서명	정준극, 최평훈, 심재선, 양광석, 이정공, 김명로, 서민원, 민도영		
출판지	대전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페이지	150p	도표	있음(○), 없음( )
발행년	2002. 12.	크기	29Cm.
참고사항			
비밀여부	공개(○), 대외비( ), _ 급비밀	보고서종류	연구보고서
연구위탁기관	과학기술부	계약번호	
초록 (15-20줄내외)	<p>2002년도는 197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주도로 RCA가 설립된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우리나라는 RCA 30주년 기념행사를 한국으로 유치, 성공리에 행사를 치르는 한편, 아·태지역회원의 오랜 숙원이었던 RCA 지역사무소를 우리나라에 설치하는 쾌거를 이루었다.</p> <p>이에 RCA 지역사무소는 아·태지역의 원자력기술을 통한 농업적, 산업적, 보건적 이용 및 각국의 에너지정책수립 지원, 연구용원자로 운영 및 응용, 개발도상국간의 기술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기관으로 자리잡게 된다.</p> <p>그러나 RCA 지역사무소가 명실공히 회원국을 대표하는 공인조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할 숙제가 있다. 전체회원국들의 합일된 견해를 담아 놓은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 이에 지역사무소장의 임무, 역할, 선출 및 임명절차, 법적 지위 등 최종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RCA 지역사무소가 전체 회원국의 대표사무소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다뤘다. 아울러 RCA 지역사무소의 우리나라 설치 및 RCA 30주년 기념행사 우리나라 개최를 계기로 원자력분야에서의 원자력기술수출 등 날로 높아가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다루었다.</p> <p>이 보고서에서는 RCA 지역사무소의 법적 지위확보, 국내외 원자력분야협력 및 관심증대를 위한 협력 증진, 지역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기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p>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국제원자력기구, RCA 지역사무소, 사업계획서, IAEA RCA 조정관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Performing Org. Report No.		Sponsoring Org. Report No.		Standard Report No. INIS Subject Code	
KAERI/RR-2276/2002					
Title / Subtitle		A Study on the Effective Operation of RCA Regional Office in Korea			
Project Manager and Department		Mr. B. H. Han (Office of Public Information ation)			
Researcher and Department					
Publication Place	Taejon	Publisher	KAERI	Publication Date	2002. 5
Page	150 p.	Ill. & Tab.	Yes( <input type="radio"/> ), No ( <input type="radio"/> )	Size	29Cm.
Note					
Classified	Open( <input type="radio"/> ), Restricted( <input type="radio"/> )		Report Type	Research Report	
Sponsoring Org.	MOST		Contract No.		
Abstract (15-20 Lines)					
<p>In order to celebrate the 30th anniversary of the RCA and to congratulate the grand opening of the IAEA Regional Office, Korea hosted a special event in Seoul and in March 2002. It was the long wish of the Member States to have the Regional Office for consolidate ownership.</p> <p>Meanwhile, the RCA regional office is recognized as a major institute as play various role to promote an agricultural, industrial, health use through the nuclear technology, supporting the energy policies of the Member States, running and application of research reactor, and making partnership among underdeveloped countries.</p> <p>On the other hand, to work as a representative institute of Member States, the RCA regional office have lots of homeworks to solve. At first, working paper is needed that is agreed all of Member States. It is needed efforts to prepare final working paper including implement, responsibility, selection, nominating process, legal position of a regional office director. This paper shows process that enable the Regional Office to function as a body representing all RCA Member States. Moreover with opening RCA regional office in Korea and hosting the 30th anniversary event, this report is cover up enhancing Korea's nuclear status in the international/regional nuclear community.</p> <p>This report suggests to finalize legal entity of RCA regional office, to make efforts to seek in the nuclear field both from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o compose a Standing Advisory Committee.</p>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IAEA, RCA Regional Office, working paper, IAEA RCA Coordinator			